

공공조형물의 체계적인 조성·관리를 위한 현안과 정책과제

Key Issues and Policy Improvements for Systematic Public Sculpture Planning and Management

이세진 Lee, Sejin
정인아 Jung, Ina

(auri

| 연구책임 이세진 연구원

| 연구진 정인아 부연구위원

| 연구심의위원 염철호 선임연구위원
 성은영 연구위원
 이여경 연구위원
 前 김영현 연구위원
 이홍재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사무관
 정수진 성남시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요 내용

— 관련 조례 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 낭비 등 문제 제기 지속

-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조형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14년 공공조형물 건립 표준조례안을 발표하고, '25년 1월 기준 전국 186개 자치단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 및 운영
- 하지만 조례 제정에도 불구하고 공공조형물의 조성·관리와 관련한 다수의 민원이 접수되고,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 문제가 지속하여 제기

— 공공조형물의 개념과 조성 목적 불분명

- 현행 공공조형물 제도는 조형물 조성 자체에만 중점을 두고 운영되며 공공조형물의 조성 목적과 지향점은 불명확
- 표준조례안에서도 공공조형물은 '조형시설물, 환경시설물, 상징조형물' 등 유형적으로만 정의하고, 설치 기준 또한 '조형성, 독창성, 내구성' 등 조형물 자체만을 중심으로 평가
- 이로 인해 공공조형물의 공익성, 대중성 등의 공공적 가치가 정의와 기준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제도 운영의 목표 설정에도 한계가 발생

— 공공조형물의 조성·관리 절차별로 여러 부서가 관여·주체 분리

- 대부분 공공조형물은 조형물 건립만을 목적으로 하는 단일사업 방식보다는 환경정비사업 등 특정사업의 일부분으로 건립
- 공공조형물을 실제로 건립·관리하는 사업 담당부서와 관련 조례를 담당하는 부서로 주체가 분리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 과정에서 관련 조례에 따른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건립하는 사각지대 발생
- 사업의 일부로 공공조형물이 조성됨에 따라 설치 입지와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계획하는 방식이 아닌 개별 시설물 및 점유물로 설치하는 경향

— 조성 이후 유지관리 및 활용체계 미흡

- 공공조형물 유지관리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고 유지관리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제재할 수 단과 권한이 부족하여 형식적인 점검과 문제 발생 시 대응하는 것에 불과
- 특히 철거에 관한 세부규정과 활용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조성 이후 제도적 공백이 발생

— 명확한 개념 정립과 장소 중심의 조성·관리체계로 전환 필요

- 공공조형물을 조성하는 가치와 개념을 명확하게 정립하고, 이를 근거로 제도적 관리대상과 기준 구체화 필요
- 도시공간의 장식적 요소가 아닌 도시경관을 향상하는 주요 수단으로서 공공조형물을 조성·활용할 수 있도록 장소(공간) 중심의 조성·관리체계로 전환하고, 공간위계별 계획 수립을 유도 필요
- 계획단계부터 생애주기를 고려해 공공조형물의 유지관리·철거·활용체계를 확립하고, 공유 재산등록·관리제도 등과 연계하여 실질적인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필요

차 례 CONTENTS

<u>I</u>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4
	3.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7
	4. 연구의 흐름	11
<u>II</u>	공공조형물의 개념 및 법제 현황	13
	1. 공공조형물의 개념 및 유형	13
	2. 공공조형물의 조성·관리 관련 법제 현황	21
	3. 공공조형물의 제도적 특성 및 한계	36
<u>III</u>	공공조형물의 조성·관리 실태 및 현안	41
	1. 분석 개요 및 주요 현상 파악	41
	2. 주요 현상별 사례 조사·분석	48
	3. 공공조형물의 조성·관리 제도상의 주요 이슈 도출	82
<u>IV</u>	공공조형물의 체계적인 조성·관리를 위한 주요 과제	93
	1. 공공조형물의 체계적인 조성·관리를 위한 향후 과제	93
	2. 연구의 의의 및 한계	99

참고문헌	101
부록. 공공조형물 관련 민원사례 조사결과	113

표 차례 LIST OF TABLES

[표 1-1] 연대별 공공조형물 건립 현황 추이	1
[표 1-2] 연구의 질문	4
[표 1-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9
[표 2-1] 언론 및 행정 분야에서 공공조형물 관련 용어 사용례	14
[표 2-2] 공공조형물과 유사개념에 대한 법제 운영 현황	16
[표 2-3] 「국토계획법」에 따른 ‘공공시설’ 대상	18
[표 2-4] 관련 법규에서 공공조형물의 명칭과 정의	21
[표 2-5] 공공조형물 관련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25년 1월 기준)	22
[표 2-6] 공공조형물 표준조례안의 내용 구성	23
[표 2-7]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구성 관련 지자체 조례 특이사항	25
[표 2-8] 공공조형물 건립절차 상의 관련부서 및 운영사례	26
[표 2-9] 공공조형물 관련 조례의 주관부서 분야	27
[표 2-10] 조례상 공공조형물의 건립 위치 및 제작 기준(표준조례안 제7조 관련)	28
[표 2-11] 건립 부지면적 기준 지자체 조례 특이사항(표준조례안 제8조 관련)	29
[표 2-12] 「울산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검토 대상	32
[표 2-13]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공공조형물 심의대상 구분	33
[표 2-14] 환경조형시설의 세부 유형별 정의	35
[표 2-15] 환경조형시설의 성능평가항목 및 기준	35
[표 2-16] 관련 법규에서 공공조형물 등의 설치 및 관리사항	37
[표 3-1] 공공조형물 조성·관리 실태 분석 개요	42
[표 3-2] 특정 공간 내 유사한 목적의 공공조형물 중복 설치사례	48
[표 3-3] 설치장소의 특성 및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공공조형물 조성사례	54
[표 3-4] 구체적인 형태를 강조한 디자인의 공공조형물 조성사례	60
[표 3-5] ○○읍 조형물 조성절차	63
[표 3-6] ○○읍 조형물 제안범위 및 내용	63
[표 3-7] 공공조형물 건립계획 수립 및 심의 진행 절차	64
[표 3-8] 접근성·시인성이 부족한 입지의 공공조형물 설치사례	66
[표 3-9] 사례별 토지이용계획 및 소유특성	68
[표 3-10] 보행 및 통행을 방해하는 공공조형물 설치사례	69

[표 3-11]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는 공공조형물 설치사례	73
[표 3-12] A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제작 기준	75
[표 3-13] 유지관리가 미흡한 공공조형물 사례	77
[표 3-14] 공공조형물의 조성·관리단계별 주체 현황	85
[표 3-15] 유관조례에 따른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운영 유형	86
[표 3-16] 현행 법규에서 공공조형물에 대한 정의 및 관련 기준	87
[표 3-17] 건립방식에 따른 공공조형물 심의 절차	88
[표 3-18] 공공조형물 조성·관리 절차에서 문제점 및 한계	92
[표 4-1] 관련 분야 교육프로그램 운영사례	97
[표 4-2] 유관조례와의 통합방안: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및 경관조례	98
[표 4-3]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운영(안)	99
[표 부록-1] 공공조형물 관련 민원사례 조사결과(2019.1.1.~2025.5.9.)	113

그림 차례

LIST OF FIGUR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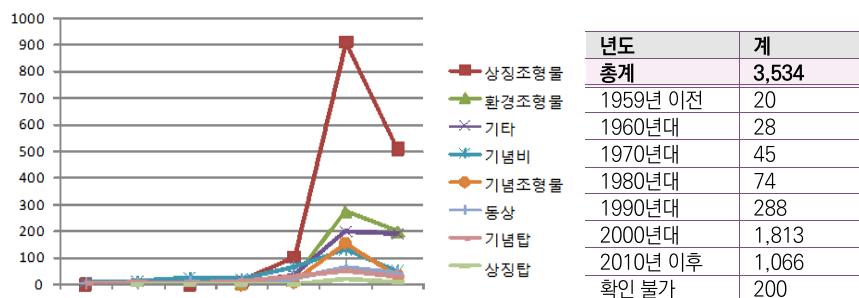
[그림 1-1] 보행자 안전을 저해하는 공공조형물 조성사례	3
[그림 1-2] 태풍으로 파손된 조형물 사례	3
[그림 1-3] 체험형 공공조형물 조성사례	3
[그림 1-4] 연구의 범위	5
[그림 1-5] 연구 흐름도	11
[그림 2-1] 공공조형물 사례	18
[그림 2-2] 건축물 미술작품 사례	19
[그림 2-3] 공공미술품 사례	20
[그림 2-4] 공공조형물의 개념 범주	20
[그림 2-5] 관련 지자체의 연도별 공공조형물 조례 제정 현황(2011.1.-2025.1.)	23
[그림 2-6] 표준조례안에 따른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절차	25
[그림 2-7] 공공조형물 관리대장 양식	30
[그림 2-8] 지자체별 공공조형물 조례 및 유관조례 제정 현황	31
[그림 2-9] 공공조형물의 개념 및 범주 비교	36
[그림 2-10] 공공조형물조례 적용 제외대상	39
[그림 2-11] 현행 법규상 공공조형물 조성·관리의 사각지대	40
[그림 3-1] 공공조형물 관련 주요 언론기사 키워드 분석결과	43
[그림 3-2] 공공조형물 조성·관리 관련 민원 주요사례	46
[그림 3-3] 공공조형물 조성·관리의 주요 현상 도출과정	47
[그림 3-4] 목포시 공공조형물 건립 신청서 및 계획서 양식	59
[그림 3-5] 지역 특산물의 형태를 강조한 공공조형물 설치사례	62
[그림 3-6] 유지관리부서 이원화 현상	80
[그림 3-7] 공공조형물 조성·관리제도의 주요 이슈 도출과정	82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무분별한 공공조형물 설치 증가와 이에 따른 공공의 지속적인 예산 투입

- 2000년 이후 지자체에서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공공조형물 난립, 관리 부재 및 방치, 잇따른 철거 등의 논란과 막대한 지방재정 투입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옴(국민권익위원회 2014; 강병길 외 2015; 라도삼 외 2016)
- 공공조형물은 제작·설치뿐만 아니라 이후 유지관리, 운영, 철거과정에서도 지속적인 예산 투입이 요구되는 점에서 제도적 관리가 시급함



[표 1-1] 연대별 공공조형물 건립 현황 추이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2014. 9).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 p.5.

※ 충북 괴산군 2005년 5억 원을 들여 만든 초대형 가마솥 공공조형물(무게 43.5t, 높이 2.2m, 둘레 17.8m), 가마솥에 녹이 스는 것을 막기 위해 주기적으로 기름칠 1,000여만 원 예산 투입... 솥뚜껑을 여는 전용 크레인 노후화로 철거로 다시 열려면 4,000만 원 예산 투입 필요(남윤정 2023. 10월 5일 기사)

■ 표준조례안 제정 권고에도 불구하고 법적 구속력 및 실질적인 개선 부족

- 문제를 해소하고자 국민권익위원회는 2014년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표준조례안’(이하 표준조례안)을 작성·지자체에 조례 제정을 권고하고,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조례를 제정·운영하였으나 법적 구속력이 부족하여 실질적인 개선방안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
 - 2025년 1월 기준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186개로 76.5% 수준¹⁾에 이르지만, 여전히 미비한 조성·관리기준 및 제도 운영으로 인해 문제가 반복되는 실정



※ 경상북도는 도청 원형 광장 내 공공조형물(2점)을 조성하면서, 「건축법」에 따른 공작물 인허가 방식으로 축조하여 논란이 발생

- 경상북도는 2016년 「경상북도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음에도,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 정의에서 ‘청사는 공공업무시설로 해당하지 않아’ 조례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최창현 2021. 2월 3일 기사.)

사진출처: 경북도청 홈페이지. https://www.gb.go.kr/Main/governor/page.do?cmd=2&iidx=41984&pageSize=9&pageNo=1&mnu_order=2&mnu_uid=7621&pageType=0002&(검색일: 2025.3.2.)

■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공공조형물이 양산되며 문제는 더욱 심화

- 공공조형물은 설치장소 및 방법에 따라 대상 범위와 유형이 다양하고 각종 도시사업에서 절차와 기준 없이 마구잡이로 건립되는 등 제도의 사각지대 발생(라도삼 외 2016, p.42)
 - 대표적으로 각종 도시사업, 환경·경관 개선사업에 공공조형물 조성이 포함되어, 물품 구매방식이나 공작물로 설치하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음
 - 이러한 제도의 사각지대는 표준조례안에 따른 ‘공공시설 이외 공간’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까지 범주를 확대할 경우, 구체적인 조성·관리 현황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

※ 영남알프스온천 진입로 상징조형물은 경관정비사업으로 ‘별도의 심의 절차 없이’ 설치

- 도시 경계지점에 설치된 ‘어서 오세요. 00시입니다’ 대체로 시·구·군에서 세운 것으로 공공조형물에 포함되지 않아… 환경 및 경관개선사업에 포함되어 설치… 유지관리,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고 철거를 앞두기도…(김민형 2024. 3월11일 기사.)

※ ‘도시갤러리’, ‘서울은 미술관’ 등의 공공예술사업, 도시재생 등의 각종 도시사업 내 설치되는 작품, 활동 등에 관해서는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관리는 제도적으로 사각지대 존재(라도삼 외 2016, p.42)

1)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검색일: 2025.2.1.)를 참고하여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연구진 작성

■ 공공조형물은 도시의 경관측면 뿐만 아니라 안전측면에서 체계적인 조성·관리 필요

- 공공공간에 설치되는 공공조형물은 보행자의 안전문제에 영향을 미치며,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재해 발생 시 공공조형물은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 현행 규정상 구체적인 철거 규정이 없어 장기간 방치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국민권익위원회 2014)



[그림 1-1] 보행자 안전을 저해하는 공공조형물 조성사례 [그림 1-2] 태풍으로 파손된 조형물 사례

출처: (좌) 네이버 지도. [https://map.naver.com/p/entry/place/37351211?c=17.00,0,0,0,adh&placePath=/home?from=map&fromPanelNum=1&additionalHeight=76×tamp=202508111416&locale=ko&svcName=map_pcv5&p=jg3kVSr78P0jYob3slSZqw,76.53,2.98,61.19,Float\(검색일: 2025.1.31.\);](https://map.naver.com/p/entry/place/37351211?c=17.00,0,0,0,adh&placePath=/home?from=map&fromPanelNum=1&additionalHeight=76×tamp=202508111416&locale=ko&svcName=map_pcv5&p=jg3kVSr78P0jYob3slSZqw,76.53,2.98,61.19,Float(검색일: 2025.1.31.);) (우) 연합뉴스. (2018). 태풍 솔릭 피해 사진 모음. 스포츠경향. 8월 23일 기사. [https://sports.khan.co.kr/article/201808231938003\(검색일: 2025.1.31.\)](https://sports.khan.co.kr/article/201808231938003(검색일: 2025.1.31.))

- 최근에 관람 기능이 부여된 체험형 공공조형물까지 등장하고 있으나, 미비한 안전기준으로 적절한 심의조차 거치지 않아 안전문제 발생 시 인명피해까지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



[그림 1-3] 체험형 공공조형물 조성사례 (좌) 설악산 진입로 관문 상징조형물 (우) 포항 환호공원 내 체험형 공공조형물 ‘스페이스워크(space walk)’

출처: (좌) 연구진 촬영(2025.7.30.); (우) 포스코그룹 뉴스룸. [https://newsroom.posco.com/kr/%ec%8a%a4%ed%8e%98%ec%9d%b4%ec%8a%a4%ec%9b%8c%ed%81%acspace-walk-%eb%84%88%ec%9d%98-%ec%a0%95%ec%b2%b4%ea%b0%80-%eb%ac%b4%ec%97%87%ec%9d%b4%eb%83%90\(검색일: 2025.6.25.\)](https://newsroom.posco.com/kr/%ec%8a%a4%ed%8e%98%ec%9d%b4%ec%8a%a4%ec%9b%8c%ed%81%acspace-walk-%eb%84%88%ec%9d%98-%ec%a0%95%ec%b2%b4%ea%b0%80-%eb%ac%b4%ec%97%87%ec%9d%b4%eb%83%90(검색일: 2025.6.25.))

■ 공공조형물의 조성·관리 개선방향 모색 필요

- 공공조형물은 모법이 부재한 여건에서 관련 조례 외에도 여러 법령과 이해관계자가 얽혀 문제가 복잡한 만큼, 구체적인 조성사례를 통한 현황과 실태를 명확하게 파악 필요
- 이를 바탕으로 공공조형물 조성·관리에 대한 제도의 사각지대를 면밀하게 진단하고, 보다 체계적·효과적으로 공공조형물을 조성·관리하기 위한 개선방향 모색 필요
- 본래 제도 취지에 맞게 공공조형물 조성을 통해 도시경관을 개선 및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나아가 일상에서 누리는 문화복지 실현을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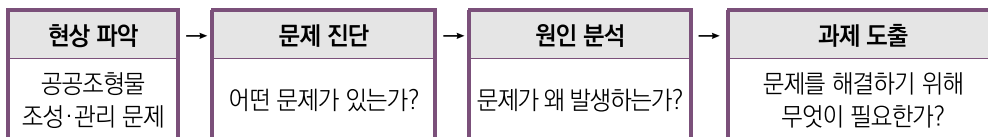
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1) 연구의 질문 및 목적

■ 연구 질문

- 공공조형물 조성·관리와 관련하여 어떤 문제가 지속하는가? 문제는 왜 발생하는가?
- 발생 문제와 관련한 현행 공공조형물 조성·관리의 제도적 한계와 개선방향은 무엇인가?

[표 1-2] 연구의 질문



출처: 연구진 작성

■ 연구 목적

❶ 공공조형물 관련 제도 현황 및 조성·관리 실태 파악

- 공공조형물 조성·관리와 관련한 법제 현황 파악 및 한계점 도출

- 구체적인 사례 조사를 통한 공공조형물의 조성·관리 전 과정의 실태 파악 및 문제점 도출

② 공공조형물을 체계적으로 조성·관리하기 위한 현안과 향후 정책과제 제시

- 공공조형물 조성·관리와 관련한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 및 한계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개선방향과 향후 정책과제를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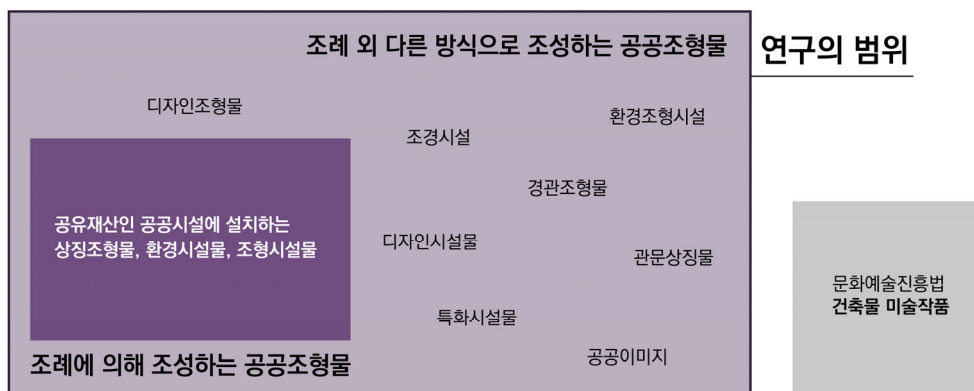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연구의 범위 : 공공조형물

- 현행 제도에 관리되는 대상과 제외 대상을 모두 포괄하여, 공공조형물 표준조례안에 근거한 공공조형물*과 이밖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²⁾이 공공의 목적에서 조성·관리하는 조형물을 연구의 범위로 설정

* 표준조례안 제2조(정의) 공공조형물: 공유재산인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상징조형물, 환경시설물, 조형시설물

* 「국토계획법」 제2조 및 시행령 제4조. 공공시설: 공원, 도로, 철도, 광장, 녹지, 공공공지, 하천, 유수지 등³⁾



[그림 1-4] 연구의 범위

출처: 연구진 작성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출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 2024. 9. 27.] [법률 제20400호, 2024. 3. 26., 일부개정])

3) 국민권익위원회(2014.9).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 [의안번호 제 2014-30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 2024. 8. 7.] [법률 제20234호, 2024. 2. 6., 일부개정]

- 다만, 조성 목적과 체계, 조성·관리의 주체가 상이한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한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⁴⁾은 연구 범위에서 제외
 - ‘공공조형물’과 ‘건축물 미술작품’은 성격과 취지가 다른 만큼 각각의 특성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설치·운영주체와 행정관리 체계상 통합 운영하는 데 한계 존재⁵⁾

■ 연구의 방법 : 문헌조사, 사례조사, 심층면담

- 공공조형물 조성·관리 관련 법제도 및 행정문서 등에 대한 문헌조사
 - 공공조형물 조성·관리 표준조례안 및 지자체 조례 등의 내용 조사
 - 공공조형물 조성 관련 계약 및 과업발주문서, 계획안 및 심의자료, 관리점검대장 등의 행정문서 내용 조사
- 공공조형물 조성·관리 현황 파악을 위한 사례수집 및 현장조사
 - 공공조형물 언론기사 및 주요 민원 사례조사, 연관어 및 키워드 분석
 - 공공조형물 조성·관리 주요 현상별 사례수집 및 현장조사, 문제점 및 원인 분석
- 공공조형물의 조성·관리 실태 파악을 위한 관계자 심층면담
 - 공공조형물 조례 소관부서 및 관련 사업 추진 담당부서 담당자 및 관계자
 - 공공조형물 조성·관리 관련 중앙부처 담당자 및 관계자
 - 공공조형물 계획 및 제작 관련 실무 전문가(제작업체, 작가, 공공조형물심의위원 등)

4)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여 회화·조각·공예 등 건축물 미술작품(이하 “미술작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출처: 문화예술진흥법[시행 2023. 12. 21.] [법률 제19480호, 2023. 6. 20., 일부개정])

5) 공공미술 관련 제도와 공공조형물 관리제도가 이원화 운영하는 것의 장점으로, 각 대상의 성격과 취지가 다른 만큼 이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각각의 특성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도 존재함(라도삼 외 2016, p.41.)

3.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1) 선행연구 동향

- 본 연구와 관련된 주요 선행연구는 ❶ ‘특정 공공조형물’의 건립에 관한 연구와 ❷ 공공조형물 조성·폐기과정에 관한 법학적 연구가 있음
- 이밖에 ❸ 공공조형물과 유사한 개념인 ‘건축물 미술품’에 관한 연구, ❹ 공공조형물과 건축물 미술품을 포괄한 ‘공공예술 혹은 공공미술’에 관한 연구가 있음

■ 특정 공공조형물의 건립에 관한 연구

- 특정 공공조형물의 건립을 위한 기본구상, 타당성 검토, 실시설계 등의 계획 수립 연구가 일부 있음. 이들 연구는 개별 조형물의 설치 기준 및 운영계획을 제시하고 있음
 - 권영현(2011; 2015), 김창수(2013), 이충훈(2017)은 충남도청 신청사, 인천 정명 600년 기념장소, 홍성군 홍예공원, 내포신도시 등과 같이 특정 장소를 기념하거나 상징하는 조형물의 기본계획 수립 및 설치 타당성을 연구함

■ 공공조형물 조성·관리에 관한 연구

- 공공조형물의 조성·관리와 관련하여서는 김성배(2020)가 유일하게 공공조형물의 설치, 관리, 폐기과정에서 주체가 달라 발생하는 공유물로서 권리에 대해 법학적 측면에서 쟁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함. 하지만 도시경관 및 공간관리 측면에서의 공공조형물의 조성·관리에 관해서는 연구한 바 없음

■ 건축물 미술품에 관한 연구

- 건축물 미술품과 관련하여서는 2010년 초부터 관련 제도 운영 및 미술품 관리 현황, 제도적 개선방안 등에 관한 다양한 학술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었음(이필재 2008, 양현미 2010, 문희숙 2012, 류선정 2015, 이준형 2015, 손영옥 2020, 임민영 2020, 정광주 2022, 변지혜 외 2023)

- 변지혜 외(2023)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 미술작품’의 제도 운영 및 관리 현황과 쟁점을 분석하고, 설치, 관리, 유지·활용 단계별 운영방안을 제시함

■ 공공예술에 관한 연구

- 공공조형물과 건축물 미술작품을 공공예술로 통칭하여 살펴본 연구가 일부 진행됨
 - 강병길 외(2015)는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이후, 서울시의 공공미술 유지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연구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에 분포하는 건축물 미술작품을 제외한 동상, 기념비 등의 공공조형물과 도시갤러리 등의 공공미술작품 조성·관리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 해당 연구는 유형별 공공조형물의 조성·관리 실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점에서 의미가 있음. 하지만, 관리의 사각지대에서 개별사업에 의해 조성한 대다수 공공조형물은 분석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주로 사후관리 및 활용 측면에서 분석하여 계획 및 조성과정에서의 실태 파악은 미흡한 한계가 있음
 - 라도삼 외(2016)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공공조형물과 건축물 미술작품으로 이원화된 공공예술을 통합관리하는 방안을 연구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공공조형물을 공공예술활동까지 영역을 확장하여, 전담기구(가칭, 공공예술위원회) 및 부서를 설치하고, 기존 조례 혁신 또는 통합조례 제정방안을 제시함. 하지만, 공공조형물과 건축물 미술작품 각각의 제도운영 목적과 방식의 특성과 차이가 고려되지 않고, 통합운영의 장단점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한계가 있음
 - 이인재 외(2021)는 인천시를 대상으로 공공조형물과 건축물 미술작품을 공공예술작품으로 통합하여 설치 관리하는 방안을 연구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공모방식, 시민 의견수렴 등을 설치방안에 포함하고, 유지관리 검수단을 운영, 관련 조례 개정방안을 제시함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그간의 선행연구는 공공조형물의 조성·관리와 관련하여 각각의 제도로 이원화된 공공조형물과 건축물 미술작품을 공공미술 관점에서 통합관리방안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음
- 공공조형물의 대상은 관련 조례에 따른 것으로, 각종 도시사업에 의한 공공조형물의 조성·관리 실태는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한계가 존재함
- 또한, 공공조형물과 건축물 미술작품은 조성 목적과 취지가 상이한 만큼 두 대상의 조성·관리·운영방식에 각각의 특성과 차이가 크게 존재하므로, 통합방안을 제시하게 앞서 각각의 면밀한 여건 분석과 구체적인 실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함
- 따라서 본 연구는 그간 선행연구에서 제외되었던 환경조형시설물, 상징조형물 등의 범주까지 포괄하여, 제도의 틀 안과 밖에서 난립하는 모든 유형의 공공조형물에 대한 조성·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제도적 사각지대를 진단하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음
- 특히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개괄적으로 조사한 이후 구체적인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여건에서, 본 연구는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공공조형물의 계획·설치·운영·관리 전(全)과정에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도시경관 개선 및 도시공간 관리 측면에서 체계적인 조성·관리를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점에서 차별성과 의의가 있음

[표 1-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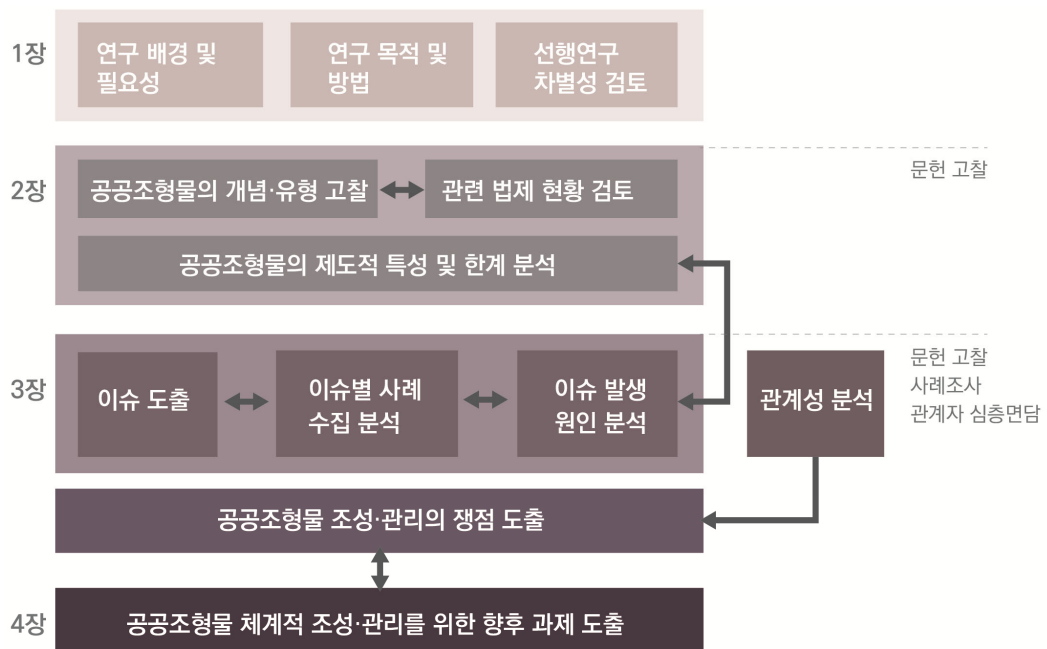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공공조형물 관련	1 - 연구명: 충남도청 신청사 상징조형물 설치계획 수립 - 연구자: 권영현(2011)	- 문헌 조사 - 사례 조사	- 미술장식품 현황 조사 - 공모사례 조사 - 현상공모 방안 및 세부 지침서 제시
	2 - 연구명: 인천 정명 600년 기념 장소 및 도입 조형물 연구 - 연구자: 김창수·전승용(2013)	- 문헌 조사 - 전문가 면담 - 현장조사	- 기념 장소의 유형과 사례 분석 - 대상지 검토 - 도입 조형물 및 배치방법 제안
	3 - 연구명: 홍예공원 상징모형물 설치계획 수립 - 연구자: 권영현(2015)	- 문헌 조사 - 현장조사	- 공모방식 타당성 및 원계획의 제작방향 검토 - 장소 여건 분석 및 디자인 방향 제안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건축물 미술 작품 관련	4 - 연구명: 내포신도시를 상징하는 조형물 설치방안 연구 - 연구자: 이충훈·신선하(2017)	- 문헌 조사 - 사례 조사	- 대상지 검토 - 상징조형물 유형별 분석 - 내포신도시 상징조형물 설치 방향 및 공모방법 검토
	5 - 연구명: 공공조형물의 설치·관 리에 있어 공법적 쟁점 - 연구자: 김성배(2020)	- 문헌 조사 - 사례 조사	- 공공조형물 설치, 관리, 폐기과정에서 발생한 갈등 및 대법원 판례 분석 - 공공조형물의 설치, 관리에 대한 공법 상의 쟁점 도출 - 공공조형물 관련 법규 제정 현황 및 문 제점 분석 - 공공조형물의 법제 개선방향 제시
	6 - 연구명: 건축물 미술 장식제도에 있어서 선택적 기금제 도입방안 연구 - 연구자: 양현미·김성규(2010)	- 문헌조사 - 사례조사	- 건축물 미술 장식제도에 대한 역대 정 부의 규제개혁 방향 검토 - 선택적 기금제 도입방안 제시(쟁점, 개 혁 효과 비교 등)
	7 - 연구명: 건축물 미술작품의 사후 관리를 위한 법령 개정 방향 - 연구자: 이준형(2015)	- 문헌조사 - 사례 조사	- 건축물 미술작품 사후관리의 쟁점 검토 - 가능한 입법의 선택지 비교분석(부담 금 방식, 민관협력계약 방식) - 개정 법안 검토 및 개정방향 제시
공공 예술 관련	8 - 연구명: 건축물 미술작품제도 운 영 관리 개선 방안 연구 - 연구자: 변지혜·김현경·이희재 (2023)	- 문헌조사 - 전문가 집단설문 (FGI)	- 건축물 미술작품제도 운영 환경 및 쟁 점 분석 - 지자체 건축물 미술작품제도 운영 현 황 조사 - 단계별(설치, 관리, 유지·활용) 운영 개선방안 제시
	9 - 연구명: 서울시 공공미술 관리 개선방안 연구 - 연구자: 강병길·신윤재·최숙경 외(2015)	- 문헌 조사 - 사례 조사 - 전문가 자문 - 관계자 인터뷰	- 서울시 공공미술 관리체계 및 유형별 관리 현황 조사 - 국내 공공미술 운영·관리 사례 조사 분석 - 국외 공공미술 운영·관리제도 조사 분석 - 서울시 공공미술 관리 개선방안 제안 (관리·활용기준, 관리체계 등)
	10 - 연구명: 서울시 공공예술 개선방안 - 연구자: 라도삼·이정현(2016)	- 문헌 조사 - 전문가 토론	- 공공예술의 개념, 설치·관리현황 조사 - 공공예술 관련 제도현황 조사 및 문제 점 분석 - 공공예술 제도개선을 위한 전문가 토 론 및 조례 개정안 제시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11	- 연구명: 인천시 공공예술 개선방안 - 연구자: 이인재·김주희(2021)	- 문헌 조사 - 사례 조사 - 현장조사 - 전문가 자문	- 인천시 공공예술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국내외 공공예술 정책 사례조사 - 공공예술 제도개선방안 제안(설치·관리 개선방안, 조례 개정방안)
본 연구	- 연구명: 공공조형물의 체계적인 조성·관리를 위한 현안과 정책 과제	- 문헌 조사 - 사례 조사 - 관계자 인터뷰	- 공공조형물의 개념 범주 및 유형 검토 - 관련 법제 운영현황 검토(지자체 조례, 관련 개별 법령 등) - 공공조형물의 조성·관리 실태 분석 및 쟁점 도출(대상, 체계, 절차 측면) - 체계적인 조성·관리를 위한 정책과제 도출

출처: 연구진 작성

4. 연구의 흐름



[그림 1-5] 연구 흐름도

출처: 연구진 작성

II 공공조형물의 개념 및 법제 현황

1. 공공조형물의 개념 및 유형

1) 일반적인 공공조형물의 개념 및 유형

■ 공공조형물의 개념

- 공공조형물(公共造形物)은 사전적으로 국가나 공공단체가 설치·관리하여 일반 사람에게 공개하는 조형물로 정의⁶⁾하고 있으며, 이때 조형물(造形物)은 인간의 예술행위에 대한 산물로서 여러 가지 재료를 이용하여 구체적인 형태나 형상으로 만든 물체를 일컫음⁷⁾
- 따라서 공공조형물은 사적 소유가 아닌 공적 소유물로, 일반 대중 누구나 쉽게 누릴 수 있도록 조성한 조형물로서 ‘공공성’의 개념이 강조된 예술로 정리할 수 있으며, 공공성은 조성 목적과 조성 장소의 두 가지 측면의 개념이 내포됨
 - 공공조형물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 공공미술 개념부터 고찰할 필요가 있음
 - 공공미술은 과거 소수 전문가에 의해 예술성이 결정, 행위의 정당성이 부여되는 것에 대한 반성으로 일반 대중들도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에서 개념이 등장(Willet, John 1967; 구본호 2013)

6) 국립국어원 우리말 샘. https://opendict.korean.go.kr/dictionary/view?sense_no=750339&viewType=confirm(검색일: 2025.2.5.)

7)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검색일: 2025.2.5.)

- 이후 공공미술은 공개된 장소에 설치하는 작품을 지칭하는 일반적 개념으로 발전하였으며, 점차 장소와 결합한 예술로서 장소 자체를 위한 디자인 방식으로 발전해 옴
- 현대에 와서는 사회적, 정치적 문제와 결부되어 하나의 소통방식으로 진화하여 지역 공동체, 일반인이 참여하는 방식, 일시적 설치방식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남
- 공공조형물은 도시공간에서 수많은 형태로 존재하며, 이로 인해 여러 분야에서 환경조형물, 환경조각, 환경미술, 공공미술, 공공예술, 상징조형물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림
- 미국과 서유럽에서 공공조형물은 ‘공공의 성격’으로 ‘일상공간에 설치되는 조형물’ 특성을 강조하여, ‘공공미술’이라는 용어로 주로 사용함(말콤 마일즈 2000)

■ 언론 및 행정 분야에서 공공조형물의 개념 및 유형

- 각종 언론 기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행정에서는 공공조형물과 관련하여 조형물 앞에 여러 수식어 및 접두어를 결합한 여러 용어로 파생하여 유형 분류 없이 사용됨⁸⁾
 - 조형물을 조성한 목적과 주요 기능을 반영하여 ‘경관조형물, 상징조형물, 디자인조형물, 기념조형물’ 등의 명칭이 혼재되어 사용

[표 2-1] 언론 및 행정 분야에서 공공조형물 관련 용어 사용례

명칭	사례
상징조형물	가평군 조종시장 상징조형물 및 시장안내도 제작 설치 (2024) 강릉역 준공 및 2018 동계올림픽 개최 기념 상징조형물 제작·설치(2017) 충남도, 격렬비열도에 상징 조형물 설치(금강일보 뉴스기사. 2025.2.13.)
관문상징물	완도군 보길대교 관문상징물 제작설치(2022)
디자인조형물	철원군 디자인 조형물 제작·설치 사업(2017)
디자인시설물	영주 오름길 라이브러리 상징조형물 및 야외전시 디자인 시설물 제작 설치(2024)
조경시설물	밀양시 시전마을 산책로 경관개선사업_조경시설물(2019)
스토리텔링 조형물	동해안 탐방로 조성사업: 경포 홍장암 스토리텔링 조형물 제작설치사업(2012)
타이포 조형물	고려인 삶 형상화 '타이포' 조형물, 방문객 사로잡아(아시아경제 신문기사. 2025.1.29.)
기념 조형물	인천시, 인천상륙작전 기념 조형물 제작·설치 나서(인천in 뉴스기사. 2025.2.6.)

출처: 빅카인즈. <https://www.bigkinds.or.kr>(검색일: 2525.2.5); 나라장터. <https://www.g2b.go.kr>(검색일: 2025.2.5) 검색결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8) 권영현. (2015). 홍예공원 상징조형물 설치계획 수립. 이슈페이퍼. 충남연구원. p.7. 참고하여 서술

- 최근에는 조형물의 형태적 특성을 반영하여 ‘타이포 조형물, 텍스트 조형물, 벤치 조형물’ 등의 특정 유형의 조형물 명칭까지 사용

■ 학계에서 공공조형물의 개념 및 유형

- 디자인, 미술, 건축, 도시 등 관련 학계에서도 공공조형물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의와 구체적인 유형 분류기준은 정립되지는 않았으며, 각 연구자에 의해 다양한 용어와 유형으로 사용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공공조형물뿐만 아니라 ‘도시 상징조형물, 환경조형물, 기념조형물, 관문조형물’ 등 다양한 용어가 혼재됨
- 공공조형물의 유형은 ‘설립목적, 형태, 장소와의 관계성, 지각적 경험’ 등의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음
 - 김제중(2011), 이충훈(2017)은 도시 상징조형물의 유형으로 조각작품형(Art Sculpture), 환경상징형(Environmental Symbol), 파빌리언형(Pavilion), 게이트·브리지형(Gate & Bridge), 공원형(Theme Park)형 등으로 분류
 - 김창수 외(2013)는 기념 장소에 도입하는 조형물에 한정하여, 그 유형을 기념비, 기념탑, 상징조형물, 기념벽, 건축물, 기타 조형물(분수, 수목과 화단, 역사적 관련물, 역사연표) 등으로 분류
 - 이건희 외(2023)는 환경조형물을 주변환경과의 상호 호환적 관계를 규정하는 관점에서 지각적 경험 방법에 따라 오브제로서의 조형물·건축으로서의 조형물·장식적 요소로서의 조형물로 분류하고, 설치장소에 따라 독립형·부속형·입구형으로 분류
 - 류영희 외(2010)는 환경조형물을 자연과 인간에 의해 꾸며진 도시공간의 3차원적 인공물로서 정의하고, 환경조형물의 개념적 범주를 가로공간을 구성하는 면과 형태로 확장하여 건축물 형태 및 입면, 가로시설물, 가로수 및 조경, 환경조각까지 확대한 특징
 - 배경주(2010)는 환경조형물을 공공성과 장식적 가치뿐만 아니라 공간의 가치를 부

여하는 중요한 요소로써 특성을 보이며, 김윤아(2009)는 공공조형물 설립 목적에 따라 기념조형물·기능조형물·자유조형물로 분류하고, 조형물의 지각적 경험에 따라 오브제로서의 조형물·건축으로서의 조형물·건축에 소장된 장식적 조형물로 분류

- 김채연 외(2014)는 환경조형물을 공적 가치에 기반을 둔 예술작품의 개념으로 접근하여, 공공의 장소, 공공의 소유, 공공적 의미표현, 공공의 흥미, 공공의 영역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공공성에 대한 정당성 확보를 중요한 특징으로 정립
- 또한, 환경조형물이 놓이는 공공공간과의 관계에 기초하여, 장소 지배적 유형, 장소 의존적 유형, 장소 연계적 유형으로 구분

2) 관련 법제에서 공공조형물의 개념 및 유형

■ 공공조형물 vs 건축물 미술작품 vs 공공미술품으로 명칭 분리

- 공공조형물의 개념은 제도권 내에서 설치가 활성화되면서 ‘건축물 미술작품, 공공조형물, 공공미술품’ 등의 명칭으로 각각 분리되어 운영됨

[표 2-2] 공공조형물과 유사개념에 대한 법제 운영 현황

구분	건축물 미술작품	공공조형물	공공미술품
근거법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1972년 제정)	×	미술진흥법 제30조(2023년 제정)
목적	• 작가 창작 활성화 및 지원	• 공공조형물 조성, 관리	• 미술 창작, 유통, 향유 촉진 • 작가 창작 활성화 및 지원
대상	•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벽화, 미디어아트 등 조형예술물 • 분수대 등 건축물미술작품으로 인정할 만한 공공조형물	• 공유재산인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시설로 상징조형물, 환경시설물, 조형시설물	• 작가가 미술활동을 통해 산출한 유무형의 창작물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소유 및 관리하는 것
설치장소	• 건축물 대지 내 • 건축물 내부공간	• 공유재산인 공공시설	-
소유주체	• 건축주(민간, 공공)	• 지자체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관리주체	• 건축주(민간, 공공) * 지자체가 점검 및 관리감독	• 지자체 * 개인, 법인, 단체 건립 가능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구분	건축물 미술품	공공조형물	공공미술품
조성 관리 기준	-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 신·증축 시 건축비의 1% 범위에서 미술품 의무 설치(기금으로 출연 가능) - 건축주가 공공(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인 경우, 미술품 공모 의무 - 가격, 예술성에 대한 감정, 평가 실시, 미술품심의위원회 운영 - 연 2회 점검 실시	- 건립 인허가 신청(건립주체→지자체장) -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 심의 - 건립 타당성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 - 관리대장 작성 및 비치, 연 1회 점검 실시 및 유지보수	- 미술 창작, 기획, 전시, 유통과 관련한 표준계약서 고시(문체부+공정거래위원회 협의) - 관리를 위한 전문기관으로 '공공미술은행' 설치 - 미술품관리시스템(사이버갤러리) 구축 운영
특징	- 문화예술진흥 측면에서 활성화 유도 - 민간(건축물 소유자) 주도로 설치, 관리 의무 - 공공에서 주기적으로 점검 관리(공공미술포털 구축 운영)	- 도시 공간, 경관 개선 측면에서 관리 - 공공에서 계획, 설치, 운영관리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제도 운영	- 미술품 거래 및 유통 관점에서 관리 - 공공에서 미술품을 구매, 전시, 관리방식으로 제도 운영

출처: 문화예술진흥법[시행 2023. 12. 21.] [법률 제19480호, 2023. 6. 20., 일부개정]; 미술진흥법[시행 2024. 7. 26.] [법률 제19568호, 2023. 7. 25., 제정]; 국민권익위원회(2014.9).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 [의안번호 제 2014-305호]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공공조형물)** 2014년 9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규정의 부재로 인한 예산 낭비, 관리부실에 따른 훼손 및 방치 사례 증가에 따라 이를 방지하고자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와 관련한 표준조례안을 발표
- 표준조례안을 토대로 전국 186개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음
- 표준조례안에서 '공공조형물'은 '공유재산인 공공시설 안에 설치하는 환경시설물, 조형시설물, 상징조형물'로 정의하며, 여기서 공공시설에는 「국토계획법」에 근거한 공원, 도로, 철도, 광장, 녹지, 공공공지, 하천, 유수지 등이 해당함⁹⁾

공공조형물 표준조례안 제2조(정의) 2. “공공조형물”이라 함은 공유재산인 공공시설 안에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 등 조형시설물과 벽화분수대폭포 등 환경시설물 그리고 상징탑기념비상징물 등 상징조형물 등을 말한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2014.9).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 [의안번호 제 2014-305호].

9) 「국토계획법」 제2조 및 시행령 제4조. 공공시설: 공원, 도로, 철도, 광장, 녹지, 공공공지, 하천, 유수지 등 (출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 2024. 8. 7.] [법률 제20234호, 2024. 2. 6., 일부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5. 1. 21.] [대통령령 제35221호, 2025. 1. 21., 타법개정])

[표 2-3] 「국토계획법」에 따른 ‘공공시설’ 대상

근거법	공공시설 대상
국토계획법 제2조	13. 도로, 공원, 철도, 수도
동법 시행령 제4조	1. 항만·공항·광장·녹지·공공공지·공동구·하천·유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하수도·구거(溝渠: 도랑) 2. 행정청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주차장, 저수지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시설
동법 시행규칙 제2조	1.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중 운동장 2. 장사시설 중 화장장·공동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 또는 장례식장에 화장장·공동묘지·봉안시설 중 한 가지 이상의 시설을 같이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 2024. 8. 7.] [법률 제20234호, 2024. 2. 6., 일부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5. 1. 21.] [대통령령 제35221호, 2025. 1. 21., 타법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4. 11. 30.] [국토교통부령 제1338호, 2024. 5. 29., 일부개정]



조형시설물



환경시설물



상징조형물

[그림 2-1] 공공조형물 사례

출처: 연구진 촬영(촬영일: (좌)2025.3.23., (중)2025.4.22., (우)2025.4.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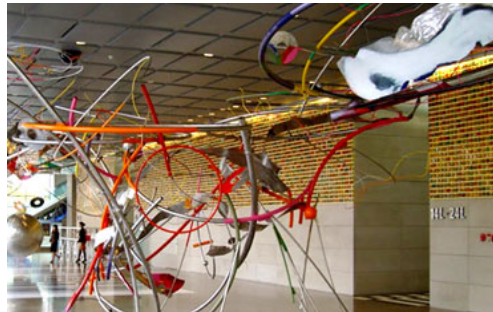
- (건축물 미술작품) 표준조례안을 고시하기에 훨씬 앞서 우리나라는 1972년 「문화예술 진흥법」 제정으로 ‘건축물 미술작품(과거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를 도입하였고, 초기에는 권장 사항이었다가 1995년 법 개정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는 의무 설치하도록 강화되었음
- 하지만 건축물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건축 대지는 표준조례안의 공공시설에는 해당하지 않아, 조성장소 측면에서 건축물 미술작품과 공공조형물은 대상이 중복되지 않음
 - 건축물 미술작품제도는 예술가 창작 촉진 및 지원을 목적으로 1934년 미국에서 실직 미술가를 위한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시작한 1퍼센트법을 벤치마킹하여 도입¹⁰⁾하였

으며, 미술작품을 설치함으로써 대중의 공공예술 향유와 장소 가치 창출 측면에서 공공성을 지니며 공공조형물의 조성 목적과 개념이 중복됨

- 반면에, 건축물 미술작품은 기본적으로 건축물을 증·개축 시 건축주가 설치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며, 이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은 건축물의 전면공지 및 공개공지, 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 건축 대지 및 내부 공간에 설치함



해머링 맨, 조나단 보로프스키(Jonathan Borofsky) Your Long Journey, 프리 일겐(Fre Ilgen)
 흥국생명빌딩 공개공지에 설치



흥국생명빌딩 로비에 설치

[그림 2-2] 건축물 미술작품 사례 출처: 씨네큐브. <https://www.cinecube.co.kr/intro/intro02.jsp>(검색일: 2025.2.7.)

- **(공공미술품)** 공공미술품은 우리나라 작가들의 미술 창작 활동을 촉진하고자 2023년 「미술진흥법」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미술작품을 소유하고 대중을 위해 전시할 수 있도록 공공미술품 제도가 도입되었음
- 공공미술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미술품으로 공공의 예술 향유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성 측면에서는 공공조형물과 개념을 같이하나, 공공미술품을 미술관, 전시관 등에 무상 대여 및 전시함으로써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등 조성방식과 조성장소 측면에서 공공조형물과는 대상이 중복되지 않음

10) 공공미술포털. https://www.publicart.or.kr/oldPublicart/HTML/data/column_view.do?menuId=28&column_seq=35(검색일: 2025.2.7.)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조달청에 전시된 국가 소유 공공미술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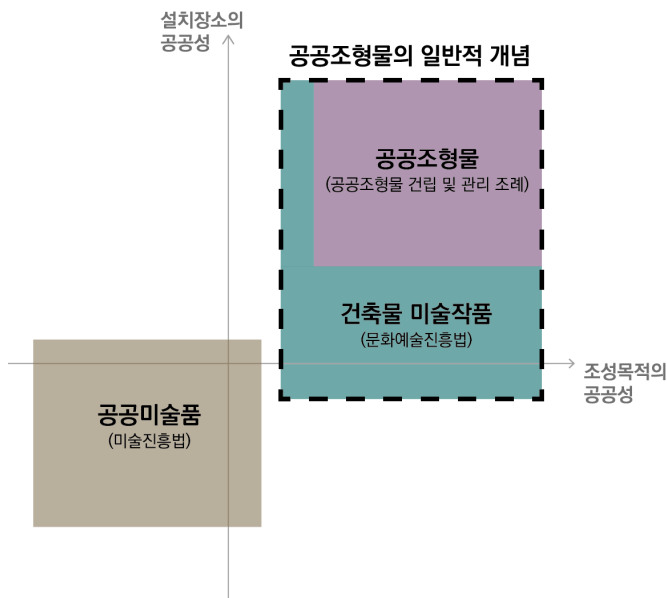


국립현대미술관에 전시된 미술관소장 공공미술품

[그림 2-3] 공공미술품 사례

출처: (좌) 조달청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ppspr/221522536628>(검색일: 2025.2.7.); (우) 국립현대미술관 인스타. https://www.instagram.com/mmca_artbank/p/DEmVL3lpxfu/?img_index=1(검색일: 2025.2.7.)

■ 공공조형물, 건축물미술작품, 공공미술품의 대상과 경계



- 일반적으로 공공조형물이 내포하는 공공성의 관점에서 공공조형물, 건축물 미술작품, 공공미술품은 조성 목적과 설치장소에서 대상이 중복되지 않으며, 개별법에 따른 제도의 대상 또한 경계가 구분됨

[그림 2-4] 공공조형물의 개념 범주

출처: 연구진 작성

2. 공공조형물의 조성·관리 관련 법제 현황

1) 관련 법제 현황

- (근거법 없이 조례로 운영) 공공조형물 조성·관리와 관련하여 근거법은 마련되지 않았으며, 표준조례안(국민권익위원회 발표, '14)을 근거로 한 각 자치단체별 조례를 제정 및 운영
- 이에 따라 현행 관련법에서 공공이 이용하는 공간에 일반 대중을 위한 조형물을 조성·관리하는 방식은 크게 ①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표준조례 근거하여 제정한 각 자치단체별 공공조형물 조례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조성·관리하거나, ②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디자인법)」에 근거한 각 자치단체별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에 따라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물 내 한 유형으로 공공조형물’을 포함하여 조성·관리
- 이밖에도 ③ 교육시설, 공원 등의 설치하는 장소에 따라 「도시공원법」, 「교육시설법」, 「건축법」 등 개별법에 의한 ‘조경시설, 환경조형시설’ 명칭으로 공공조형물을 조성·관리

[표 2-4] 관련 법규에서 공공조형물의 명칭과 정의

명칭	설치 장소	개념 정의 및 대상	근거법
① 공공조형물	공공시설	2. “공공조형물”이라 함은 공유재산인 공공시설 안에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 등 조형시설물과 벽화·분수대·폭포 등 환경시설물 그리고 상징탑·기념비·상징물 등 상징조형물 등을 말한다.	표준조례안
② 공공조형물 (공공미술)	공공공간	공공미술 및 상징조형물: 환경조형물, 상징조형물, 벽화, 슈퍼그래픽, 미디어아트 등 공공이미지: 조형물(동상, 기념비 등), 게이트, 상징물, 역사 사적물 등	공공디자인진흥법, 광주시 공공디자인조례 등 경기도 공공디자인조례 등
③ 조경시설	공원	4. “공원시설”이란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나. 화단, 분수, 조각 등 조경시설	도시공원법 제2조
환경조형 시설	교육시설	30. “환경조형시설”이란 준공기념탑, 상징조형물, 호수명비, 유래비, 시비, 환경조각, 석탑 등의 조형물을 말한다.	교육시설법,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제2조
	건축물 대지 내 조경공간	조경공간에 설치하는 조경시설 중 공공이 이용하는 공간에 설치하는 예술작품으로 미술장식품, 순수창작조형물, 기능성 환경조형물, 기념물 등의 환경조형시설	건축법 제42조, 조경설계기준

출처: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9. 16.] [법률 제18246호, 2021. 6. 15., 일부개정]; 광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시행 2021.07.07.] [조례 제1285호, 2021.07.07., 일부개정];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시행 2024.05.17.] [조례 제 7997호, 2024.5.16., 일부개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4. 5. 17.] [법률 제20309호, 2024. 2. 13., 타법개정];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5. 2. 7.] [법률 제20181호, 2024. 2. 6., 일부개정];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시행 2022. 1. 14.] [교육부고시 제2022-4호, 2022. 1. 14., 제정]; 건축법[시행 2024. 6. 27.] [법률 제20424호, 2024. 3. 26., 일부개정]; 조경설계기준(KDS 34 00 00) 및 조경공사 표준시방서(KCS 34 00 00)[시행 2024. 12. 16.]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743호, 2024. 12. 10., 일부개정]

2)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조성·관리

■ 대다수 지자체가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 및 운영

- (조례 현황) '25년 1월 기준, 전국 지자체 중 186개 (76.5%)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 및 운영
 - 공공조형물 조례는 부산시 공공미술프로젝트에 따른 조형물 설치 증가로 방치 및 이설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여 2011년 부산광역시¹¹⁾를 시작으로, 2012년 여주시¹²⁾가 제정
 - 2014년 국민권익위의 '공공조형물 표준조례안' 발표에 따라 2014년 세종시가 설치하고, 2015년부터 2021년까지 공공조형물 관련 조례 제정이 전국적으로 확산
 - 공공조형물 조례는 11개 광역자치단체(64.7%), 175개 기초자치단체(77.4%)가 제정 및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10개 기초자치단체는 시행규칙을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
 - 유일하게 '충북 옥천'은 조례 제정 없이 규칙으로 공공조형물 관련 제도를 운영

[표 2-5] 공공조형물 관련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25년 1월 기준)

구분	광역	기초	계	비고
자치단체(개)	17	226	243	(전국 광역·기초 자치단체 수)
조례	(개)	11	175 (177)	186(188)
	(%)	64.7%	77.4%	76.5%
시행 규칙	(개)	-	10	10
계	(개)	11	185 (187)	196(198)

주1. 광역자치단체 11곳 : 부산, 광주, 인천, 세종, 강원, 경기, 충남, 충북, 전북, 경남, 경북

주2. '부산 중구'는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공공조형물 스토리텔링' 관련 조례 2건이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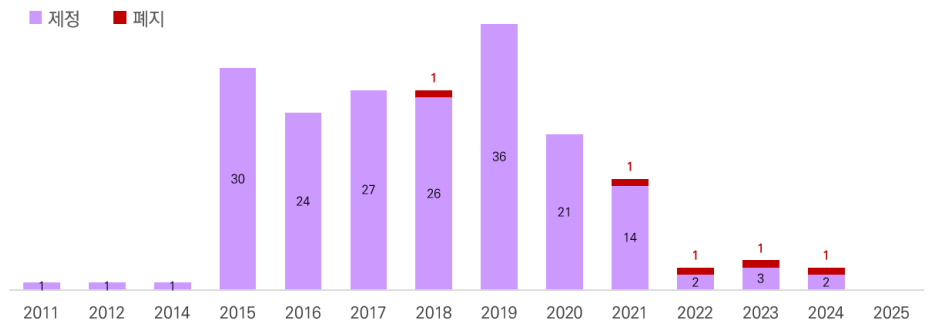
주3. '충남 보령'은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공공조형물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 관련 조례 2건이 포함

주4. '충북 옥천'은 조례 제정 없이 시행규칙으로 공공조형물 관련 제도를 마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검색일: 2025.2.1.\)](https://www.law.go.kr(검색일: 2025.2.1.))를 토대로 연구진 작성

11) 박정민.(2011). 주변환경과 부조화 '애물'전락, 민원 끓는 공공미술 조형물. 국제신문 8월 2일 기사.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10803.22003221914>(검색일: 2024.2.15.)

12) 여수세계박람회(2012)와 거북선축제, 이순신 장군 스토리텔링 발굴사업 등에 따른 조형물 설치 및 관리문제 대두



[그림 2-5] 관련 지자체의 연도별 공공조형물 조례 제정 현황(2011.1.-2025.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검색일: 2025.2.1.)를 참고하여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연구진 작성

■ 표준조례안(2014년 발표)을 토대로 조례별 내용 구성 대동소이

- (표준조례안의 내용 구성) 표준조례안은 일반사항, 건립대상 및 설치기준, 심의위원회 운영, 건립신청 및 처리 절차, 사후관리 및 활용의 크게 5가지 내용으로 구성
 - 이와 관련하여 표준조례안은 공공조형물 건립 시의 공정성투명성 확보와 건립 후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조례 제정 조치사항을 규정
 - 또한, 관련 조례를 기제정한 자치단체는 공공조형물의 건립주기(연1회→반기별 1회), 건립 요건(‘신고제’로 통일), 심의위원 구성의 구체적 규정(내·외부 인원 비율구성), 지자체별 담당부서 지정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조치사항을 규정
- (지자체 조례 내용 구성) 186개 지자체 조례는 표준조례안을 토대로 대동소이하게 구성¹³⁾
 - 경기 고양시 등 10개 지자체는 ‘건립신청 및 처리 절차’, ‘사후관리 및 활용’의 조항을 시행규칙으로 별도로 제정

[표 2-6] 공공조형물 표준조례안의 내용 구성

구분	조항	세부내용
일반사항	1 목적	• 무분별한 난립 방지 및 건립기준과 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

13)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검색일: 2025.2.1.)를 참고하여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연구진 작성

구분	조항	세부내용
건립 대상 및 설치 기준	2 정의	• 용어 정의(공공시설, 공공조형물, 주관부서, 건립주체 등)
	3 다른 법령과의 관계	• 관련 법령과의 관계, 일시 건립하는 경우 예외
	4 건립 인·허가 등 신청	• 건립인허가 신청서 작성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기부채납 규정
	5 비용부담	• 건립주체의 비용부담 명시
	6 건립대상 및 선정기준	• 건립대상 선정기준(국가 공현도, 사회 기여도, 시민 공감도)
심의위원회 운영	7 건립위치 및 제작기준	• 환경과의 조화, 작품성, 조형성, 재료의 내구성 등
	8 건립 부지면적	• 동상, 기념비에 대한 규모 제시
	9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건립 및 이전, 교체 및 해체에 대한 심의위원회 운영
	10 위원회의 구성 등	• 내·외부 위원 구성
	11 위원회의 회의	• 심의위원회 운영 절차, 개의 및 의결 기준
건립신청 및 처리 절차	12 심의위원회의 의무와 관여금지	• 심의위원의 성실 및 공정한 직무수행
	13 건립신청에 대한 처리	• 건립신청서 처리절차 / 타당성 조사 의견서의 내용
	14 통보	• 심의결과에 따른 건립 인가 및 통보
	15 이의신청 등	•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의 요구
사후관리 및 활용	16 관리	• 관리대장 작성 및 비치, 공공조형물 유지 및 보수 관리, 상태점검 및 연간 관리계획, 이설 및 철거에 대한 조치
	17 공공조형물의 활용	• 활용촉진을 위한 지원사항(홍보,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	- 부칙	• 조례 공포 및 시행

출처: 국민권익위원회(2014.9).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 [의안번호 제 2014-305호].

■ 유관위원회로 심의 권한 이전 또는 통합운영

- **(심의운영 방식)** 일부 지자체가 공공조형물조례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유관위원회가 대행하거나 통합운영
 - 대부분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일부의 경우 지자체 내 특정위원회에서 대행하거나 관련 위원회의 심의위원을 위촉하여 구성함
 - 특정위원회에서 대행하거나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따르는 경우 경관위원회, 건축물 미술작품위원회, 공공디자인위원회가 대행하여 심의를 운영
 - 관련 위원회의 위원을 공공조형물 심의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하는 경우, 광주, 고창, 밀양의 사례와 같이, 도시계획위원회, 경관위원회, 도시공원위원회, 미술작품심

의위원회의 위원을 심의위원으로 구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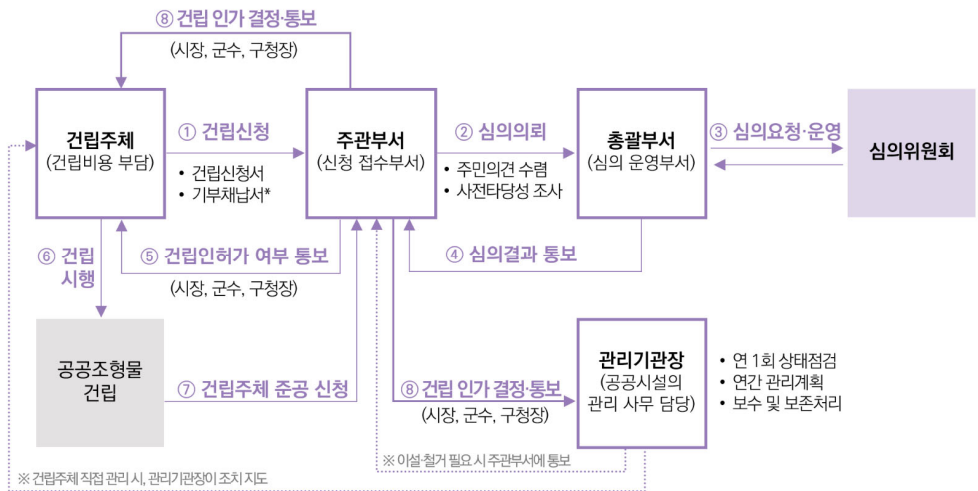
[표 2-7]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구성 관련 지자체 조례 특이사항(표준조례안 제10조 관련)

구분	관련 위원회	지역 사례
특정 위원회 심의 가능 또는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따르도록 함(15곳)	경관위원회(8)	서울 강동구, 광명, 김천, 목포, 무안, 밀양, 보령, 신안
	건축물미술작품위원회(3)	강원, 세종, 전북
	공공디자인위원회(3)	충북, 인천, 평택
2개 이상 관련 위원회의 심 의위원을 위촉(2곳)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공원위원회, 미술작품심의위원회 - 광주 도시계획위원회, 경관위원회- 밀양, 고창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검색일: 2025.2.1.)를 토대로 연구진 작성

■ 건립부서-총괄부서-주관부서-관리부서로 분절적으로 운영

- (건립절차) 건립주체가 공공조형물 건립인가 신청 후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총괄부서가 심의 운영을 통해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며, 건립 후에는 ‘관리부서’가 사후 관리
 -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의 건립비용을 부담하며, 건립주체가 개인 또는 단체(법인)인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기부채납서를 제출함¹⁴⁾



[그림 2-6] 표준조례안에 따른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절차

출처: 국민권익위원회(2014.9).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 [의안번호 제 2014-305호]. 불임 2. 조례 표준안 제2조, 제5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 내용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심의운영 결과에 따라 건립인가가 여부를 지자체장이 통보하고 그에 따라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건립 한 후 주관부서에 준공을 신청함
- 지자체 장은 준공 신청 결과를 토대로 건립인가를 결정하여 건립주체와 관리부서에 통보하고 관리부서는 공공조형물의 사후관리에 대한 조치를 수행
- **(관련 주체)** 공공조형물의 건립절차 상 건립주체, 주관부서, 총괄부서, 관리부서가 세분화되어 분절적으로 운영
- 지자체별 조례 소관부서 및 심의위원회 운영방식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며, 경우에 따라 조형물 건립사업 추진 시 적게는 2개 부서, 많게는 4개 부서¹⁵⁾가 절차별로 관여
- 예를 들어, 광명시 등은 주관부서와 총괄부서가 동일한 반면, 의왕시 등의 경우 공공조형물위원회를 공공디자인위원회가 대행함에 따라 주관부서와 총괄부서가 상이함

[표 2-8] 공공조형물 건립절차 상의 관련부서 및 운영사례

구분	건립주체	주관부서	총괄부서	관리부서(주관부서)
의미 (표준 조례안)	조형물 조성사업 발주 및 설치부서(주체)로 건립비 용을 부담하는 부서(주체)	심의신청 절차 처리 및 심의결과를 통보하는 부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 회 운영 부서	공공조형물의 사후 관리 및 상태점검, 보수조치 권고하는 부서
운영 사례 (의왕시)	도시계획과, 건축과, 건강위생과, 정원도시과, 도시재생과, 공원녹지과 ...	문화관광과 공공조형물 조례로 심의·협의 시	문화관광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건강위생과, 정원도시과, 도시재생과, 공원녹지과 ...
		도시정비과 공공디자인조례로 심의·협의시	도시정비과* *공공디자인위원회	
(광명시)	도시계획과, 건강위생과, 정원도시과, 공원녹지과, ...	도시계획과 공공조형물 조례로 심의·협의 시(경관위원회 대행) 공공디자인조례로 심의·협의시		도시계획과, 건강위생과, 정원도시과, 공원녹지과, ...

출처: 의왕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시행 2024.10.01.] [조례 제2171호, 2024.10.01., 일부개정]; 의왕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시행 2015.09.30.] [조례 제1449호, 2015.09.30., 제정]; 광명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시행 2024. 12. 23.] [경기도광명시 조례 제3193호, 2024. 12. 23., 일부개정]; 광명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9. 28.] [경기도광명시조례 제 2783호, 2021. 9. 28., 일부개정]; 광명시 경관 조례. [시행 2022. 11. 22.] [경기도광명시조례 제2905호, 2022. 11. 22., 일부개정]

1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90호, 2024. 1. 9., 타법개정]

15) 광명시청 도시계획과 심의운영 담당자 심층인터뷰(2025.2.14.) 결과, 사업추진 이후 건립부서가 없어지거나 해당 사업대상지 관리가 이관되는 경우 건립주체와 관리부서가 상이한 것으로 확인

■ 문화예술 분야 vs 경관·공공디자인 분야에서 주관

- (공공조형물조례 소관부서) 전국 지자체 186개 공공조형물 조례에 명시된 소관부서는 ‘문화예술’ 관련 부서가 55.6%(99개 지자체)로 가장 많고, 지역에 따라 ‘도시계획, 건축, 디자인, 도시경관, 지역개발’ 관련 부서에서 담당하는 지자체가 전체 41%(73개 지자체)를 차지
- (주관부서 분야에 따른 업무 수행의 한계) 주업무와 무관한 부서 전담의 한계

[표 2-9] 공공조형물 관련 조례의 주관부서 분야

분야	부서명	개	비율	비고
문화예술	문화예술과, 문화관광과, 문화체육과, 문화정책과	99	55.6%	-
도시계획	도시과, 도시계획과, 도시교통과	27	15.2%	41.0% (73개)
디자인	도시디자인과, 건축디자인과, 경관디자인과, 공공디자인과	17	9.6%	
건축	건축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14	7.9%	
도시경관	도시경관과, 도시경관재생과, 도시재생경관	8	4.5%	
지역개발	지역개발과, 균형개발과, 기반조성과, 원도심재생과	7	3.9%	-
기타	기획감사, 기획예산실, 기획감사 담당관, 주민공동체과 등	6	3.4%	
계		178	100.0%	

주. 주관부서 미기입 8개 지자체 제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검색일: 2025.2.1.)를 토대로 연구진 작성

■ 조형물 특성 위주의 건립 및 설치 기준

- (조형물 자체의 특성을 위주로 심의) 대다수 지자체가 표준조례안의 ‘사실과의 긴밀성, 주변 환경과 조화, 작품성·조형성 및 재료의 내구성’의 기준을 공통으로 규정하며, 지역에 따라 기준을 추가
 - 조형물 자체의 특성 위주로 구성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경관적 특성, 설치에 따른 규모 적정성 및 안전성에 대한 기준으로 설정
 - 지속적인 민원과 문제 제기에 대응하여 지역에 따라 ‘공공성’을 추가(청주, 아산)하여 조형물의 본래 목적을 강화하거나, ‘접근성, 조망권 확보’ 등을 추가(영월, 속초, 포

향)하여 조형물 설치로 인한 안전성 및 시각적 차폐를 관리하고자 함

[표 2-10] 조례상 공공조형물의 건립 위치 및 제작 기준(표준조례안 제7조 관련)

구분	조형물 특성			경관적 특성		규모 및 안전성		공공성
	사실과의 긴밀성	정체성	작품성, 조형성, 독창성	주변과 조화	장소, 접근성 조망권 확보	규모, 부지면적 적정성	내구성, 안전성	
표준조례안	●	-	●	●	-	-	●	-
청주시	-	●	●	-	-	-	-	●
아산시	-	-	●	●	●	●	●	●
영월군	●	●	●	●	●	-	●	-
속초시	●	-	●	●	●	-	●	-
포항시	●	-	●	●	-	-	●	-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검색일: 2025.2.1.)를 토대로 연구진 작성

- (일부 지자체가 공공조형물의 규모 제한) 대다수가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과대한 공공 조형물 조성을 규제하고자 부지면적을 제한
 - 표준조례안은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부지면적을 규정할 것으로 제시한 반면, 대다수는 주관 부서의 의견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에서 고려할 것으로 규정
 - 대부분 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적정수준에서 고려하는 반면, 일부 지자체(57개, 30.3%)는 구체적인 부지면적을 수치로 명시
 - 구체적인 규모를 제시하는 57개 지자체는 ‘동상 16㎡ 이하, 기념비 탑형 16㎡ 이하, 기념비 비문형 10㎡ 이하’를 기준으로 하는 지자체(56개)¹⁶⁾ 가장 많고, 예외적으로 경기 시흥시가 각각의 규모를 ‘50㎡ 이하’로 설정함

16) (서울) 강서구, 관악구, 금천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성동구, 은평구 / (부산) 남구 / (대전)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구, 서구, 유성구, 중구 / (대구) 남구, 달서구, 서구, 중구 / (광주) 광주광역시, 광산구 / (강원) 양양군 / (경기) 남양주시, 성남시, 평택시, 하남시, 화성군 / (충남) 논산시, 아산시, 홍성군 / (충북) 괴산군, 영동군, 증평군 / (전남) 경상북도, 고령군, 곡성군, 나주시, 담양군, 무안군, 보령시, 순천시, 신안군, 진도군, 함평군 / (전북) 고창군, 김제군, 임실군, 정읍시, 진안군, 완주군 / (경남) 거제시 / (경북) 안동시, 울릉군, 청도군

[표 2-11] 건립 부지면적 기준 지자체 조례 특이사항(표준조례안 제8조 관련)

구분		조례 내용		비고
표준조례안		제8조(건립 부지면적)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 부지면적은 다음 각 호의 범위내로 하되 제9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주관부서장의 의견을 들어 공공조형물 등의 조형성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동상 : ○○제곱미터 이하 2. 기념비 : 탑형은 ○○제곱미터 이하, 비문형은 ○○제곱미터 이하 3. 기타 공공조형물 : 안건별 심의		• 주관부서의 의견을 반영 • 조형성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 • 구체적인 규모 제시
지역 사례	적정 수준에서 고려	[사례1. 서울 강동구] 공공조형물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설치 부지면적 및 작품 규모를 정한다. 1. 주변 환경과의 조화 및 균형 2. 도시공간의 개방성 및 접근성	[사례2. 경기 안성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부지면적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주관부서장의 의견을 들어 공공조형물의 조형성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주관부서의 의견을 반영 • 조형성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
		[부지면적 기준1] 1. 동상 : 16㎡ 이하 2. 기념비 : 탑형은 16㎡ 이하, 비문형은 10㎡ 이하 3. 그 밖의 공공조형물 : 안건별 심의	[부지면적 기준2] 1. 동상 : 50㎡ 이하 2. 기념비 : 탑형은 50㎡ 이하, 비문형은 50㎡ 이하 3. 그 밖의 공공조형물 : 안건별 심의	• 주관부서의 의견을 반영 • 조형성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 • 구체적인 규모 제시
	구체적인 규모 제시	56개 지자체	1개 지자체 (경기 시흥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검색일: 2025.2.1.)를 토대로 연구진 작성

■ 불명확한 유지관리 및 철거 규정

- (구체적이지 않은 유지관리·철거 규정) 대부분 공공조형물 조성 후 유지관리 보수 및 홍보·교육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설 및 철거에 대한 명확한 기준 부재
 - 공공조형물 조성 후 청결 유지, 훼손 시 보수 조치, 상태 점검 등 관리사항 명시
 - (상태 점검) ‘연 1회’ 또는 ‘연1회 이상’, ‘연 2회 이상¹⁷⁾’ 상태 점검을 실시할 것을 155개 지자체가 규정하여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연도 관리계획 수립 시행을 명시
 - (보수 조치) 공공조형물 훼손 시 필요한 보수 조치를 하고 장기간 소요될 때 안내판 설치 사항을 명시,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가 적기에 조치할 수 있도록 함

17) ‘연2회 이상’ 상태 점검을 명시한 지자체(12곳): (경기) 수원시, 여주시, 청주시 / (경남) 고성군, 밀양시, 사천시, 창원시 / (부산) 동구, 수영구, 연제구 / (전남) 남원시, 영광군

- **(관리대상상 유지관리이력 정보 부재)** 대다수 지자체가 표준조례안의 관리대상 양식을 그대로 준수하여 활용하고 있으나, 관리대장의 정보는 유지관리에 관한 이력 정보 부재
 - 관리대장은 공공조형물의 건립취지 및 조형적 특성, 위치도 및 전면사진 등 공공조형물 건립에 관한 개략적 정보로만 구성되어, 건립 이후 유지관리 이력 및 유지보수 시 주요 고려사항 등의 유지관리와 관련한 상세정보는 알 수 없음

공공조형물 관리대장			
명 칭		건립일자	
위 치 (공공시설명)		형 상	
구 조			
규 격			
건립주체		관리부서	
건립취지			
인물 또는 사실 소개			

[그림 2-7] 공공조형물 관리대장 양식

출처: 목포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시행 2021.06.07.] [조례 제3480호, (2021.06.07., 일부개정)]

3)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공공조형물 조성·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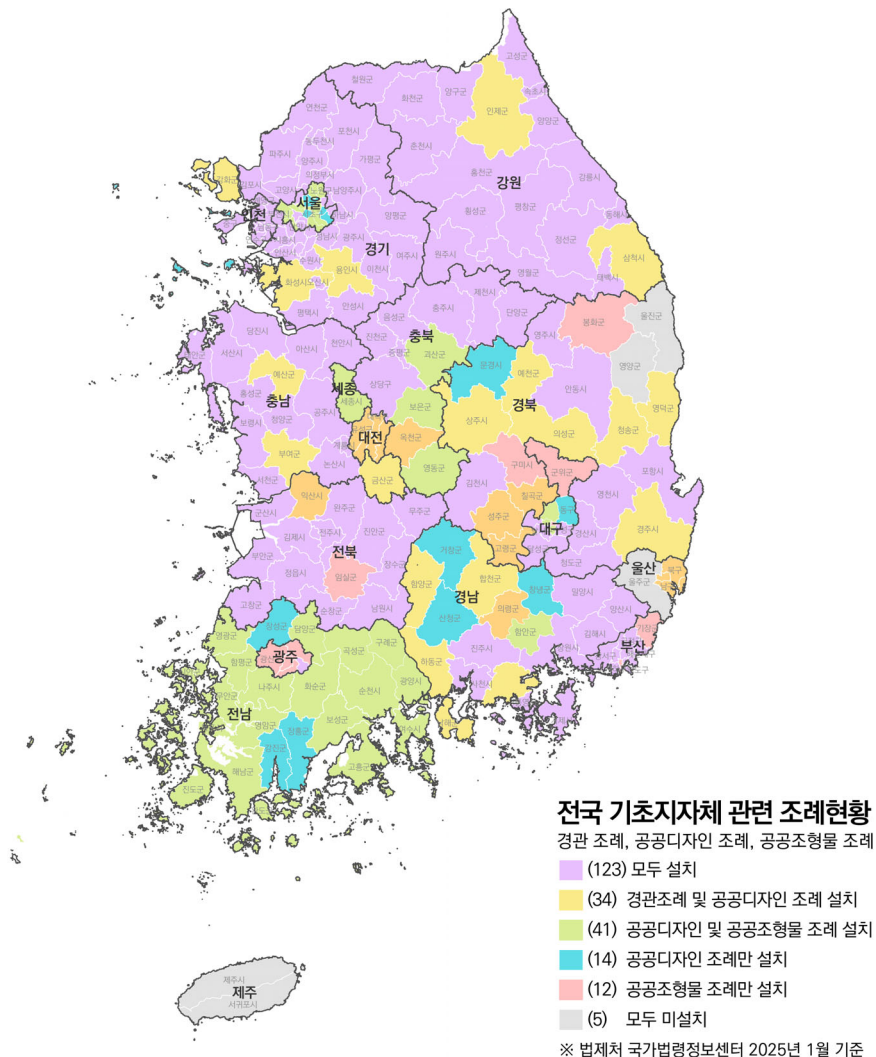
■ 대다수 지자체가 공공디자인 및 경관 등의 유관조례 운영

- **(대다수가 유관조례 운영¹⁸⁾)** 공공조형물과 관련성이 높은 공공디자인, 경관 분야 관련 조례를 모두 제정한 자치단체는 123개
- 공공조형물조례와 공공디자인조례를 동시에 운영하는 자치단체는 164개
- **(공공디자인 조례로 통합운영)** 울산(2018년), 대전(2021년), 경기 화성(2022년), 서울 용산구(2023년), 대전 유성구(2024년) 등 일부 지자체는 공공조형물 조례를 폐지하

18)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검색일: 2025.2.1.)를 참고하여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연구진 작성

고, 「공공디자인진흥법」에 따른 공공디자인진흥조례로 통합운영

- 공공디자인조례로 통합운영과 관련하여 공공디자인 검토 대상에 공공조형물을 포함하고, 조례 내 공공조형물의 설치 절차, 심의 운영 관리 및 활용에 대한 사항을 명시함



[그림 2-8] 지자체별 공공조형물 조례 및 유관조례 제정 현황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검색일: 2025.2.1.)를 참고하여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연구진 작성

■ 공공시설물 내 공공조형물(공공미술 및 공공이미지)

- (공공시설물 내 공공조형물 포함) 공공디자인 분야에서는 상위법인 「공공디자인법」에서는 공공조형물을 관리대상에 포함하지 않으나, 경기도를 비롯한 대다수 자치단체가 공공디자인조례에 공공시설물의 유형 분류에 공공조형물을 포함
 - 「공공디자인법」 제2조에서 공공시설물은 대중교통시설물, 보행안전시설물, 편의시설물, 공급시설물, 녹지시설물, 안내시설물로 정의하며, 공공조형물은 포함하지 않음
- 상위법령에서 별도로 정의하지 않아 조례별로 명칭과 세부 유형에 차이가 있음
 - ‘공공미술, 상징조형물, 공공이미지’ 등으로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

[표 2-12] 「울산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검토 대상

분 류	
공공시설	대중교통 / 보행안전 / 편의 / 공급 / 녹지 / 안내 / 도로 / 부속 / 임시시설물 등
공공조형물	공공조형물: 상징조형물(동상, 기념비 등), 환경조형물(벽화 등) 슈퍼그래픽, 미디어아트 등
공공공간	공원/ 휴양공간/ 광장/ 보행공간
공공용품	공공용품
공공이미지	시각이미지

출처: 울산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시행 2024.05.17.] [울산광역시조례 제2925호, 일부개정] 별표. 공공디자인 검토기준을 토대로 연구진 작성

■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대상과 중복

-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 및 자문 의무)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근거로 해당 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출연기관, 해당 자치단체에 소재한 공공기관 등¹⁹⁾ 이 공공조형물 조성사업을 추진 시 일정금액 이상은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일정금액 미만은 자문 및 협의를 받도록 규정

19)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해당 자치단체에 소재한 공공기관(출처: 울산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시행 2024.05.17.] [울산광역시조례 제2925호, 일부개정] 토대로 연구진 작성)

[표 2-13]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공공조형물 심의대상 구분

지자체	공공시설물의 유형 분류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대상	자문 또는 협의대상
익산시	그 밖의 공공시설물: 벽화, 슈퍼그래픽, 미디어아트 등의 공공미술 및 조형물	총 사업비 1억 원 이상	총 사업비 1억 원 미만
곡성군	공공이미지: 조형물(동상, 기념비 등), 게이트, 상징물, 역사 사적물 등의 상징물	총 사업비 1억 원 이상	총 사업비 1억 원 미만

출처 : 익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시행 2024.05.17.][조례 제2513호, 2024.05.08., 일부개정]; 곡성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시행 2018.08.13.][조례 제2205호, 2018.08.13., 일부개정]를 토대로 연구진 작성

4) 개별법에 따른 공공조형물 조성·관리

■ 공원 내 조경시설²⁰⁾

- 공원에 설치하는 분수, 조각 등의 공공조형물은 “조경시설”로 분류하여 「도시공원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조성·관리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일정규모 이하는 별도의 허가 및 심의 절차 없이 설치, 이전, 철거가 가능함
 - 공원시설 중 33㎡ 이하의 시설 설치는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규정하여, 별도의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없이 설치 및 이전, 철거가 가능함(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6조의2)
- 이밖에도 전시회, 박람회 등의 목적으로 공원에 1년 이내 임시로 설치²¹⁾하는 조형물은 공원 내 점용허가대상 중 단기 가설공작물 설치 행위로 분류되어, 점용신고 및 허가절차만을 거쳐 설치할 수 있음(법 제24조)
 - 여기서 공작물은 건축물을 제외한 인공시설물로 광고탑, 기념탑 등의 공공조형물 일부 유형이 해당하며, 공원에 임시로 기념탑 등의 공공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관련 서류를 제출(점용허가신청서, 공사시행계획서, 원상회복계획서, 사업계획서

2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5. 17.] [법률 제20309호, 2024. 2. 13., 타법개정]

2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4. 9. 15.] [대통령령 제34881호, 2024. 9. 10., 타법개정]
별표 1.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구체적 기준

등)하여 점용을 신고 및 허가받도록 하는데, 가설공작물 설치로 공원 미관을 저해하거나, 이용과 안전상의 문제가 없도록 규정하는 수준임(법 제24조 제2항)

■ 교육시설 내 환경조형시설²²⁾

- 교육시설²³⁾에 설치하는 기념탑, 상징조형물, 환경 조각 등의 공공조형물은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의 “환경조형시설”로 포함하여(제2조), 별도의 규칙에 따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고 매년 1회 이상 점검 및 관리하고 있음
 - 교육시설에 환경조형시설을 설치할 때는 ① 내구성, 유지·관리성, 인체유해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② 탄소배출량 저감 재료 사용 우선하며, ③ 위험요소 발견 시 안전 확보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함(제45조)
 - 환경조형시설을 포함하여 모든 시설물은 매년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요소 발견 시 신속하게 조치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는 등 비교적 체계적으로 유지·관리됨

■ 대지 내 조경 중 환경조형시설²⁴⁾

- 「건축법」에서는 건축주가 200㎡ 이상의 대지에 건축 시 대지 내 조경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제42조)²⁵⁾, 이때 조경시설 중 기념비, 환경조각, 석탑, 상징탑, 부조, 환경벽화 등의 예술적인 작품성이 있는 시설을 조경 공간 내에 설치하는 경우 “환경조형시설”로 정의하고 있음
- 또한, 대지 내 조경 공간에 환경조형시설을 계획할 때는 「건축법」에 따른 비교적 상세한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인 「조경설계기준 및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준수해야 함
- 조경설계기준에서는 환경조형시설을 공공이 이용하는 공간에 공공 목적으로 설치하는 예

22)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시행 2022. 1. 14.] [교육부고시 제2022-4호, 2022. 1. 14., 제정]

23)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평생교육시설 등(출처: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5. 2. 7.] [법률 제20181호, 2024. 2. 6., 일부개정])

24) 조경설계기준(KDS 34 00 00) 및 조경공사 표준시방서(KCS 34 00 00)[시행 2024. 12. 16.]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743호, 2024. 12. 10., 일부개정]

25) 건축법[시행 2024. 6. 27.] [법률 제20424호, 2024. 3. 26., 일부개정]

술작품으로 미술장식품, 순수장작조형물, 기능성 환경조형물, 기념물로 유형을 세분화함

- 타법에서는 다루지 않은 기능성 환경조형물을 유형으로 포함한 점이 특징적이며, 기능성 환경조형물의 기능 중 놀이기능을 명시함
 - 기능성 환경조형물 설계시 놀이기능(조형놀이시설), 식별 기능(공원, 단지의 문주 등), 공간의 분리(장식벽 등)와 같은 본래의 기능 발휘를 충실히 고려하도록 정함

[표 2-14] 환경조형시설의 세부 유형별 정의

유형	정의
미술장식품	문화예술진흥법 제12조에 따른 대상
순수 창작조형물	작가의 순수한 예술적 창작력을 강조한 조형물로서 독자적인 미적 가치를 형서하기 위해 공공미술로서의 의미를 갖고 작가의 개성에 비중을 둔 조형물
기능성 환경조형물	시계탑, 조명기구, 문주와 같이 본래 시설물이 지니는 기능은 충족시키면서 덧붙여 조형적 가치와 의미가 충분히 발휘되도록 설계한 환경조형물
기념물	역사적 기념물이나 상징조각과 같이 기념비적인 조형물

출처: 조경설계기준(KDS 34 00 00) 및 조경공사 표준시방서(KCS 34 00 00)[시행 2024. 12. 16.]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743호, 2024. 12. 10., 일부개정]를 토대로 연구진 작성

- 환경조형시설의 설계기준과 관련하여 사전에 조사 및 계획을 위한 배치, 형태, 규격, 재료 등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고, 세부 유형별로 설계 시 고려해야 할 배치 및 형태에 관한 기준을 상세하게 제시함
- 이밖에도 설계기준은 환경조형시설의 성능평가항목과 기준을 제공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는 조형성 평가요인으로 형태성, 창의성, 심미성, 기능성을, 환경성 평가요인으로 조화성, 안전성을 사회성 평가요인으로 시공성, 객관성을 평가항목으로 제시함

[표 2-15] 환경조형시설의 성능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요인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조형성	• 형태성: 스케일, 질감, 색채, 볼륨 • 창의성: 구성요소, 작가의 예술성, 표현방법	• 심미성: 표현미, 미적 감흥, 단순성, 시각적 균형 • 기능성: 랜드마크, 제작 수월성, 정보성, 관리문제
환경성	• 조화성: 설치장소, 도시미관, 가시성, 건물조화	• 안전성: 오픈스페이스, 계절변화, 야간조명, 시민안전
사회성	• 시공성: 시대성, 공공성, 정체성	• 객관성: 관리의식, 객관적 제도, 의뢰자 의견, 적정가격, 목표달성

출처: 조경설계기준(KDS 34 00 00) 및 조경공사 표준시방서(KCS 34 00 00)[시행 2024. 12. 16.]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743호, 2024. 12. 10., 일부개정]를 토대로 연구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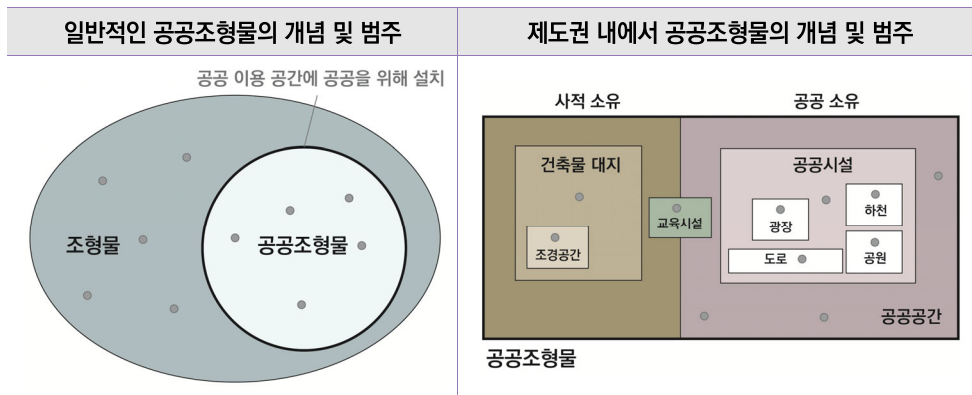
3. 공공조형물의 제도적 특성 및 한계

■ 일반적 공공조형물의 개념과 제도권에서의 개념 차이

- 일반적인 개념에서 공공조형물은 대중 누구나 쉽게 누릴 수 있도록 조성한 조형물로 조성 목적과 조성 장소에서 공공성이 중요하게 강조
- 반면에 제도권에서 공공조형물의 개념은 조형물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물의 속성인 상징성 강화, 환경 개선 등이 강조한 개념으로 공공성이 약화

■ 공공조형물이 각 법제로 분절되어 조성·관리

- 광의적 관점에서 공공이 이용하는 공간에 설치한 모든 조형물을 일컫는 공공조형물의 개념이 제도권 내에서는 ‘건립장소’와 ‘소유 주체’(개인, 공공)에 따라 각각의 관련법을 근거로 한 개념과 명칭으로 분리



[그림 2-9] 공공조형물의 개념 및 범주 비교

출처: 연구진 작성

- 이에 따라 관련 법제로 분절되어 조성·관리
 - 건축물의 대지 및 조경공간 등 개인 소유 영역에 공공조형물을 조성하는 경우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 미술품, 「건축법」에 따른 조경공간 내 조경시설에 근

거하여 조성·관리

- 공공 소유 영역 중 공공시설 용도 이외의 교육시설에 공공조형물을 조성하는 경우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에 근거하여 조성·관리되며, 공원에 조성하는 경우 「도시공원법」에 따른 ‘조경시설’에 근거하여 조성·관리
- 이밖에 공공 소유 영역 중 공공시설 용도로 정한 광장, 도로, 공공공지, 하천 등에 공공조형물을 조성하는 경우 자치단체별 공공조형물 조례를 근거하여 조성·관리

■ 공공조형물이 ‘시설물’의 개념으로 운용

- 공공조형물 조례를 포함한 현행 관련법에서 공공조형물은 ‘환경시설물, 조형시설물, 조경시설, 환경조형시설, 공공시설’ 등 단위 시설물의 개념으로 운용
- 이러한 개념적 속성은 시설물의 합리적인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관련 규정이 운영되는데 영향
 - 합리적인 설치와 관련하여 시설물의 규모 및 재료, 형태 등에 관한 기준, 설치 절차 등에 관해 규정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점검 횟수 및 관리기준, 조치 이행 사항 등에 대해 주로 규정
- 조형물을 조성하는 취지와 목적, 조형물 조성 시 주변환경과의 관계 설정에 대한 사항은 중점적으로 다루이지 않는 한계

[표 2-16] 관련 법규에서 공공조형물 등의 설치 및 관리사항

명칭	근거법	설치 및 관리 사항	
공공조형물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설치	• 모든 공공조형물 건립 시 위원회 심의 진행(심의위원 구성, 운영 절차) • 건립대상 선정기준(국가 공헌도, 사회 기여도, 시민 공감도) 및 설치 기준(환경과의 조화, 작품성, 조형성, 재료의 내구성) 준수
		유지 관리	• 관리대장 작성 및 비치, 정기적 점검(연 1회 이상), 훼손 시 보수 조치 및 안내판 설치(장기간 소요 시)
		철거	• 필요 시 심의 진행
조경시설	도시공원법 제2조	설치	• 면적 3㎡ 이하 별도의 심의 절차 없이 설치, 이전, 철거 가능 • 전시회, 박람회 등을 위해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 점용신고 및 허가절차 이행
		유지	• 별도 규정 없음

명칭	근거법	설치 및 관리 사항	
환경조형시설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 기준 제2조	관리	
		철거	• 별도 규정 없음
		설치	• 내구성, 유지관리성, 인체유해성, 환경친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 • 탄소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는 친환경 재료, 재활용 가능한 재료 사용 우선 • 위험요소 발견 시 적절한 안전조치 확보(표지판 설치, 보수·복구)
		유지관리	• 매년 1회 이상 점검 실시, 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 보고(시설장→감독기관) • 안전에 위험요소 발견 시 신속한 조치 이행, 행·재정적 지원 • 위험 내용을 공지
	조경설계기준 및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철거	• 별도 규정 없음
		설치	•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 준수하여 설치 • 사전에 조사 및 계획을 위한 배치, 형태, 규격, 재료 등에 대한 기준 준수 등
		유지관리	• 별도 규정 없음
		철거	• 별도 규정 없음
공공시설 (공공조형물, 공공이미지)	곡성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등	설치	•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설치 시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 및 자문을 거쳐 결정 • 총 사업비 1억원 미만 설치 시 담당부서 업무협의를 거쳐 진행
		유지관리	• 별도 규정 없음
		철거	• 별도 규정 없음

출처: 국민권익위원회(2014.9).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 [의안번호 제 2014-305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5. 17.] [법률 제20309호, 2024. 2. 13., 타법개정];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시행 2022. 1. 14.] [교육부고시 제2022-4호, 2022. 1. 14., 제정]; 조경설계기준(KDS 34 00 00) 및 조경공사 표준시방서(KCS 34 00 00)[시행 2024. 12. 16.]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743호, 2024. 12. 10., 일부개정]; 곡성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시행 2018.08.13.][조례 제2205호, 2018.08.13., 일부개정]를 토대로 연구진 작성

■ 관련 법규에서 관리의 사각지대 발생

- **(관리의 사각지대 발생)** 공공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조형물 중 관련 법규상 관리대상이 중복되거나 제외되어 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
- **(중복으로 인한 문제)** 먼저 법규상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는 장소가 중복되어 통합관리의 문제가 발생
 - 대표적으로 공원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은 공공조형물조례의 적용대상이면서 「공원 녹지법」에 따른 조경시설 기준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여, 상위법 우선에 따라 조경시설로 별도 관리

- 또 다른 예로 공공디자인조례와 공공조형물조례를 모두 운영하는 지자체가 공공조형물을 조성하는 경우, 심의대상이 중복되거나 사업비를 기준으로 각각의 위원회에서 별개로 관리
- (적용 예외로 인한 문제) 또한, 법규에 따른 공공시설 유형과 대상 부지의 소유주체에 따라 공공조형물조례 적용이 불가능한 문제 발생
- 관련 조례에서 정의하는 공공조형물은 ‘공유재산’인 ‘공공시설’에 설치한 것으로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대상이 해당
 -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국유재산’인 공공시설 또는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은 공공조형물조례에 따른 관리대상에서 제외

※ 「공유재산법」 제2조 제1항.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재산

(출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90호, 2024. 1. 9., 타법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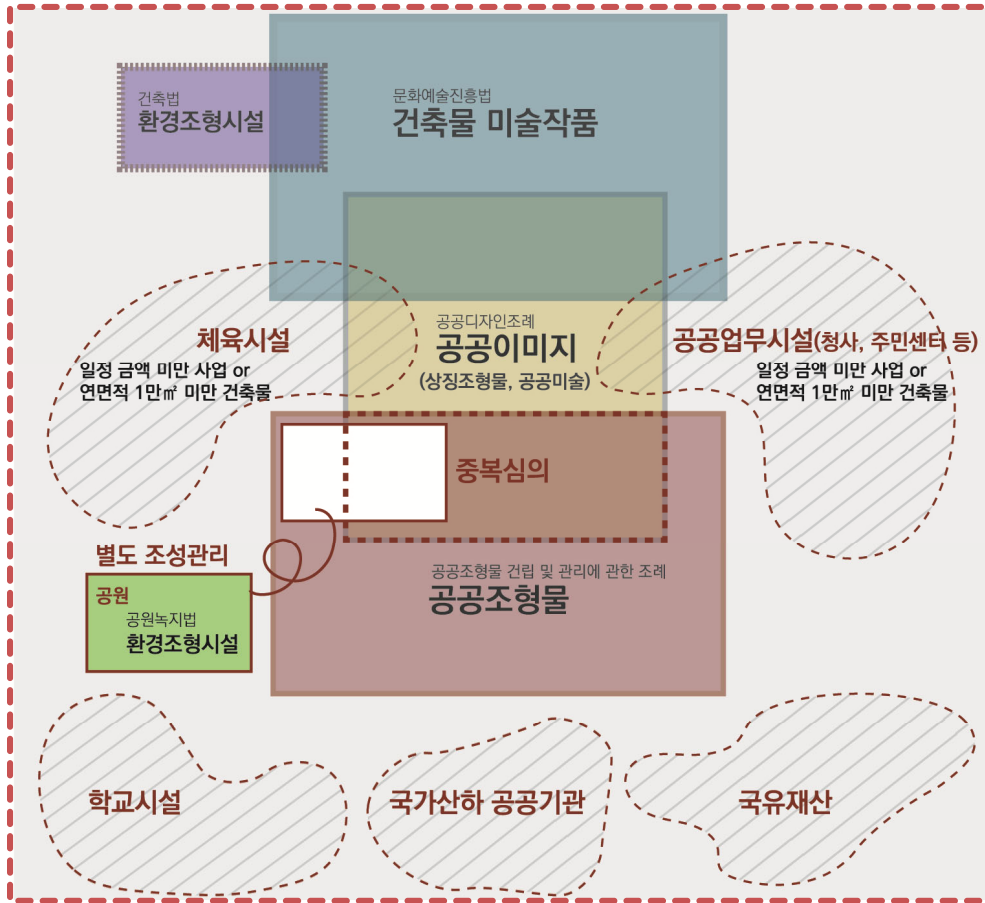


[그림 2-10] 공공조형물조례 적용 제외대상: 중앙부처 산하 공공기관 소유부지 ○○○경륜장 정문 조형물 사례

출처: 네이버 지도. <https://map.naver.com/p/search/%EA%B4%91%EB%AA%85%20%EA%B2%BD%EB%A5%9C%EC%9E%A5?c=16.00,0,0,0,adh&p=Lml1Btd5KOSJ9sl8K1X0RA,-96.12,0.25,80,Float>(검색일: 2025.2.6.)

- 또한, 「국토계획법」에 따른 공공시설에 ‘체육시설, 공공청사 및 주민센터 등의 공공업무시설’은 해당하지 않아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더라도 관련 조례를 적용할 수 없음
- 공공디자인조례를 근거로 공공조형물 관리규정을 마련한 일부 지자체의 경우에도 대다수가 일정 금액 이상을 심의대상으로 정함에 따라 다수의 공공조형물이 관계부서 자문 혹은 협의 절차만을 거쳐 설치되는 사각지대 발생

공공조형물 조성·관리의 사각지대



설치장소	사업예산	시설 규모	적용 법규	조성·관리사항
○○소공원	무관	무관	공원녹지법	임의 설치, 이전, 철거
○○청사	1억원 미만	연면적 1만㎡ 미만	공공디자인조례	관계부서 협의
○○체육관	1억원 미만	연면적 1만㎡ 미만	공공디자인조례	관계부서 협의
중앙부처 산하 ○○공사	무관	무관	없음	없음

[그림 2-11] 현행 법규상 공공조형물 조성·관리의 사각지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검색일: 2025.2.1.)를 참고하여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연구진 작성

III 공공조형물의 조성·관리 실태 및 현안

1. 분석 개요 및 주요 현상 파악

1) 분석 목적 및 방법

■ 분석 목적

- 본 장에서는 공공조형물 조성·관리 실태 분석을 바탕으로 주요 문제점을 확인하고 제도개선의 쟁점을 도출하고자 함
- 이와 관련하여 일반 국민들이 공공조형물 조성·관리의 문제로 인식하는 현상을 우선 파악하고, 앞서 2장에서 살펴본 공공조형물 조성·관리 법제 현황을 바탕으로 해당 현상이 발생하게 된 주요 원인을 분석하여 제도상의 한계 및 개선 필요사항을 도출

■ 분석 방법 및 대상

- (주요 현상 파악) 일반 국민들이 공공조형물 조성·관리의 문제로 인식하는 현상을 파악하고자 표준조례안 발표 이후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9년부터 최근까지의 주요 언론기사 및 민원 사례를 분석
- (사례수집 및 조사·분석) 각 현상별로 실제 조성한 공공조형물 사례를 수집하고 사업 추진 및 유지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과 주요 원인을 분석
- (관련 법제와의 관계성 분석) 사례 조사를 통해 확인한 문제점 및 주요 원인과 앞서 살

퍼본 공공조형물 조성·관리 법제의 관계성 분석(2장)을 바탕으로 현행 제도상의 한계 및 개선 필요사항을 검토

- (제도상의 이슈 도출)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공공조형물 조성·관리 제도상의 이슈를 도출

[표 3-1] 공공조형물 조성·관리 실태 분석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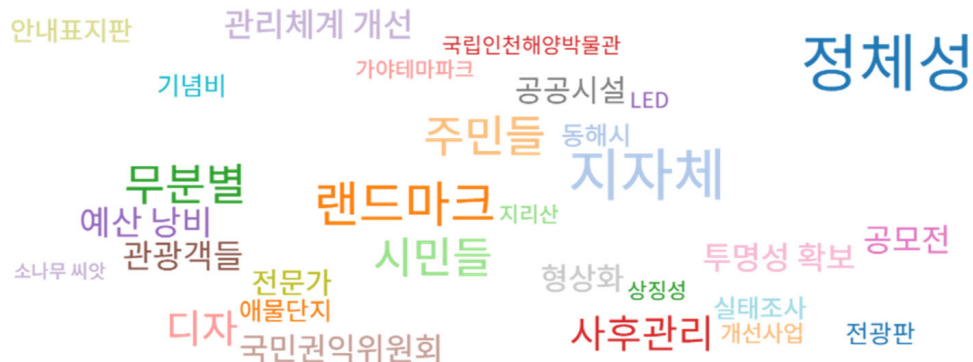
분석 단계		분석 주요 내용	분석 방법 및 대상
1	주요 현상 파악	❶ 언론기사 키워드 분석 (2019.1.~2025.5.)	- 빅카인즈
		❷ 민원 사례 분석(2019.1.~2025.5.)	- 서울전자민원창구,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 등
↓			
2	주요 현상별 사례 조사·분석	❶ 사례 수집 및 사업추진 관련 기초조사	- 관련 언론기사 수집 및 행정자료 조사 분석(시의회 회의록, 나라장터 입찰공고 관련서류, 지방재정 365 세부사업별 세출 현황, 계약정보시스템 사업발주 현황 등)
		❷ 조성·관리과정의 문제점 및 주요 원인 분석 - 사업 운영(조성주체, 조성방식 및 절차, 예 산), 관련제도 운영현황 등	- 현장조사 및 자치단체 담당자 면담조사
↕			
3	관련 법제 현황 (2장)과 관계성 분석	❶ 문제 발생 주요 원인과 공공조형물조례 등 관련 법제와의 관계성 분석	- 자치단체별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유관조례 조사 분석
		❷ 제도적 한계 및 개선 필요사항 검토 - 조성·관리대상, 관련 주체, 심의 절차 및 기준 등	- 자치단체 담당자 면담조사 및 전문가 자문
↓			
4	제도상의 이슈 도출	공공조형물 조성·관리 제도의 한계 및 개선 필요사항 도출	

출처 : 연구진 작성

2) 공공조형물 관련 주요 현상 파악

■ 관련 언론기사 분석

- 2019년 1월 1일부터 2025년 5월 9일까지 공공조형물에 관한 주요 언론기사²⁶⁾ 총 71,513건을 바탕으로 공공조형물과 자주 등장하는 연관어를 추출하고 빈도 분석을 실시하여 키워드를 도출



[그림 3-1] 공공조형물 관련 주요 언론기사 키워드 분석결과

출처: 빅카인즈. <https://www.bigkinds.or.kr/v2/news/index.do>. 검색일(2025.5.9.)

- 이와 관련하여 공공조형물 조성 목적 및 주요 주체와 관련한 키워드가 도출되었으며, 공공조형물의 계획부터 조성·유지관리 전반에 관한 다양한 키워드가 도출
- **(공공조형물의 상징성에 높은 관심)** 공공조형물 조성 목적과 관련하여 ‘정체성, 랜드마크, 기념비, 상징성’ 등의 연관어가 높은 빈도로 나타났으며, 특히 ‘정체성’은 전체 연관어 중 가장 높은 빈도수로 확인

26) 전국 일간지 및 지역 일간지, 경제일간지 총 72개 분석(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아시아투데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대한경제, 매일경제, 머니투데이, 메트로경제, 브릿지경제, 서울경제, 아시아경제, 야주경제, 이데일리, 이투데이,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제, 헤럴드경제, 강원도민일보, 강원일보, 경기신문, 경기일보, 경남도민일보, 경남신문, 경남일보, 경북도민일보, 경북매일신문, 경북일보, 경상일보, 경인일보, 광남일보, 광주매일신문, 광주일보, 국제신문, 금강일보, 기호일보, 남도일보, 대구신문, 대구일보, 대전일보, 동양일보, 매일신문, 무등일보, 부산일보, 새전북신문, 영남일보, 울산매일, 울산신문, 인천일보, 전남일보, 전라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북일보, 제민일보, 제주일보, 중도일보, 중부매일, 중부일보, 충북일보, 충청일보, 충청타임즈, 충청투데이, 한라일보, 한겨레21, 시사IN)

- 공공조형물 설치로 주변에 미치는 영향 및 개선 효과보다는 ‘공공조형물 조성 자체에 초점’을 맞춰 추진하는 경향을 확인
- (자치단체의 역할 중요하게 인식) ‘지자체’가 전체 키워드 중 두 번째로 높게 추출되어 공공조형물 조성·관리주체로서 자치단체의 역할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경향을 확인
- (지역사회 공감대 부족 문제 제기) ‘시민들, 주민들’ 등의 키워드가 높은 빈도로 추출되었으며, 공공조형물 설치 시 주민 참여, 지역사회와의 공감대 형성 등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경향을 확인
- (무분별한 공공조형물 건립 문제 제기) ‘무분별, 예산 낭비, 투명성 확보, 애물단지’ 등 공공조형물 조성과 관련하여 부정적인 키워드가 다수 도출되었으며, 이를 통해 일반국민들이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설치를 문제로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
- (디자인 문제 제기) ‘형상화, 디자인, 공모전’ 등의 키워드를 통해 공공조형물 디자인 및 형상을 주요하게 인식하는 경향을 확인
- (미흡한 유지관리 문제 제기) ‘사후관리, 관리체계 개선, 실태조사’ 등의 공공조형물을 건립한 이후 유지관리와 관련한 키워드가 높은 빈도로 확인

■ 관련 민원 분석

- 서울전자민원창구(각 자치단체)²⁷⁾ 및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 안전신문고(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통해 2019년 1월 1일부터 2025년 5월 9일까지 총 110건의 ‘조형물’ 관련 민원을 확인 부록 참조
- (부산·서울에서 가장 많은 민원 접수) 공공조형물 관련 민원은 지역별로 부산 43건, 서

27) 서울시 강남구·강동구·강북구·강서구·관악구·광진구·금천구·노원구·도봉구·동대문구·동작구·마포구·서대문구·서초구·성동구·성북구·송파구·은평구·종로구·중랑구, 전남 장흥군, 충남 공주시·보령군·서산시·아산시·서천군·예산군·천안시·태안군·홍성군, 강원도 강릉시, 경기도 고양시·광명시·안양시·군포시·시흥시·성남시·수원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인천광역시 강화군·계양구·미추홀구·동구·부평구·연수구·서구·중구 이외 나머지 기초자치단체와 경북, 경남, 충북, 전북, 울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하위 기초자치단체는 2017년~2018년 이후 민원 신청이 중단되거나 홈페이지 운영이 중단되어 분석대상에서 제외

울 26건, 경기 14건, 대구 13건, 인천 8건, 강원·대전·울산·전남 각 1건순으로 분포²⁸⁾

- **(공공조형물 조성·관리에 대한 부정적 의견 대다수)** 민원의 주요내용은 공공조형물 철거 요청(31건), 설치 반대(8건), 디자인 문제 제기(6건) 등 공공조형물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대다수
 - ‘공공조형물 철거’와 관련한 민원은 보행 및 운전자 시야 방해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 장소와 무관한 디자인으로 인한 경관 저해, 파손 및 노후화 이유가 대다수이며, 그 밖에 행사기간 완료 및 미이용 등의 이유로도 공공조형물의 철거를 요청
 - ‘공공조형물 설치 반대’와 관련한 민원은 장소와 무관한 디자인으로 경관 저해, 일회성의 무분별한 설치로 인한 예산 낭비, 공공조형물 설치로 인한 통행 방해 및 안전문제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
 - ‘공공조형물 디자인 문제’와 관련한 민원은 장소와 무관한 디자인,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 디자인, 과도하게 형상화한 디자인, 역사성 논란이 있는 디자인 등을 문제로 지적
- **(공공조형물의 유지관리 요청에 대한 민원)** 설치한 공공조형물의 유지관리를 요청하는 민원 또한 다수(40건)를 차지
 - 대다수가 파손으로 인한 요청이며, 이밖에도 안전 설비 설치, 정보 오류 정정, 시인성 개선을 위한 주변부 관리, 설명안내판 설치 등의 이유로 유지보수를 요청
- **(일부는 공공조형물 설치 요청)** 공공조형물 설치 요청(23건)에 관한 민원도 일부 확인
 - 대다수가 경관 특화, 특정 상권 및 관광지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공지 활용 및 불법 주차 방지 등의 환경 개선 등을 목적으로 공공조형물 설치를 요청
- 이밖에도 어린이놀이시설을 공공조형물로 설치 시 관계법령 적용, 국도변에 공공조형물 설치 시 점유허가 신고의무대상 등 공공조형물 설치 시 타 법규와의 관계에 대한 문의성 민원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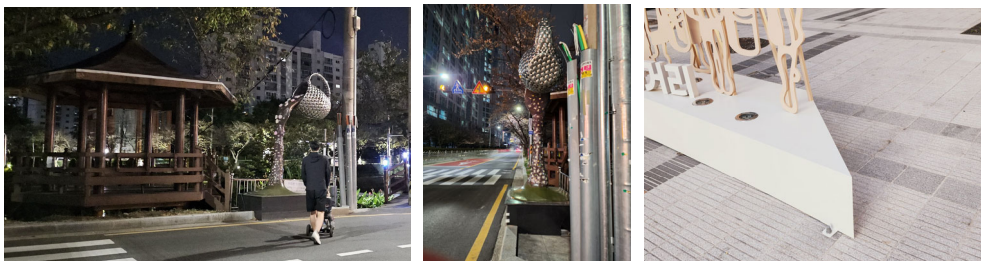
²⁸⁾ 지역 미상 2건 제외

[그림 3-2] 공공조형물 조성·관리 관련 민원 주요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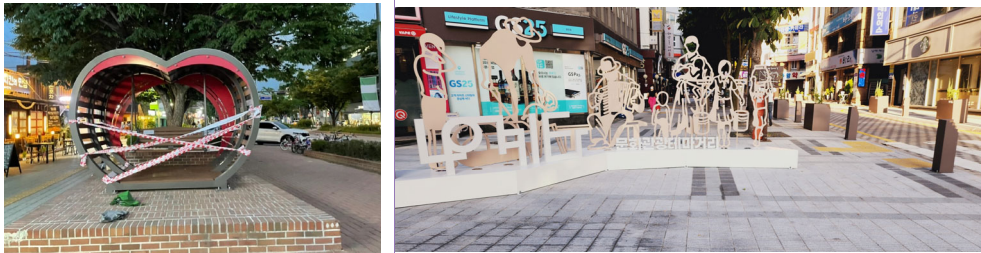


[파손된 공공조형물 유지보수 요청 민원사례]

[지역명 영문 표기 오류 정정요청 민원사례]



[조형물 설치로 인한 보행 방해 및 철거 요청 민원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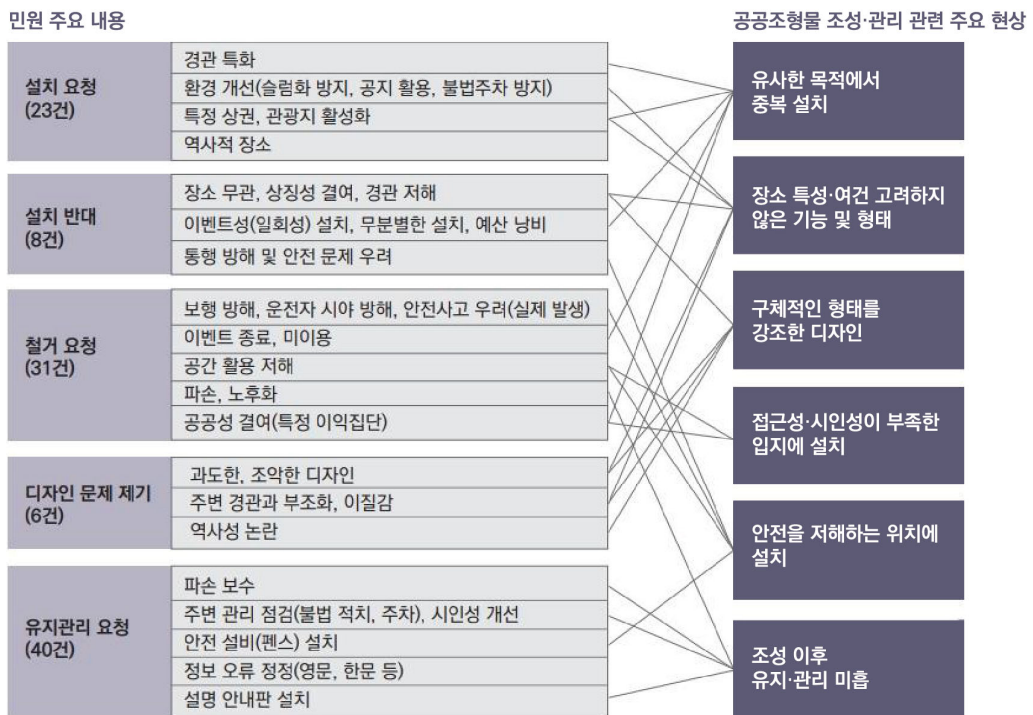
[조형물 설치로 인한 공간활용 저해 및 철거 요청 민원사례]

출처: (상단 좌측)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https://www.safetyreport.go.kr/#introduction/mainProcessCase/103640>(검색일: 2025.5.9.); (상단 우측) 부산광역시 기장군 새울전자민원창구. <https://eminwon.gijang.go.kr/emwp/gov/mogaha/ntis/web/emwp/cns/action/EmwpCnsIWebAction.do>(검색일: 2025.8.6.); (중간, 하단 우측) 부산광역시 동래구 새울전자민원창구. <https://eminwon.dongnae.go.kr/emwp/gov/mogaha/ntis/web/emwp/cns/action/EmwpCnsIWebAction.do>(검색일: 2025.8.6.); (하단 좌측) 서울특별시 성북구 새울전자민원창구. <https://eminwon.sb.go.kr/emwp/gov/mogaha/ntis/web/emwp/cns/action/EmwpCnsIWebAction.do>(검색일: 2025.8.6.)

- **(주요 현상 확인)** 민원 분석결과 일반국민들이 공공조형물 조성·관리와 관련하여 주요 하게 인식하는 현상은 크게 ① 단편적인 일회성의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설치로 인한 경관 저해 및 예산낭비, ② 장소와 무관한 조형물 설치, ③ 지나치게 구체화·형상화한 디자인, ④ 공공조형물 설치 이후 미흡한 유지관리로 확인

■ 공공조형물 조성·관리의 주요 현상 파악

- 공공조형물에 관한 언론기사에서 도출한 주요 키워드와 민원 사례를 종합 분석한 결과, 공공조형물의 기획 및 계획단계, 설치 및 조성단계, 유지관리단계에서 발생하는 6 개의 주요 현상을 확인



[그림 3-3] 공공조형물 조성·관리의 주요 현상 도출과정

출처: 연구진 작성

2. 주요 현상별 사례 조사·분석

1) 특정 공간 내 유사한 목적의 공공조형물 중복 설치

[표 3-2] 특정 공간 내 유사한 목적의 공공조형물 중복 설치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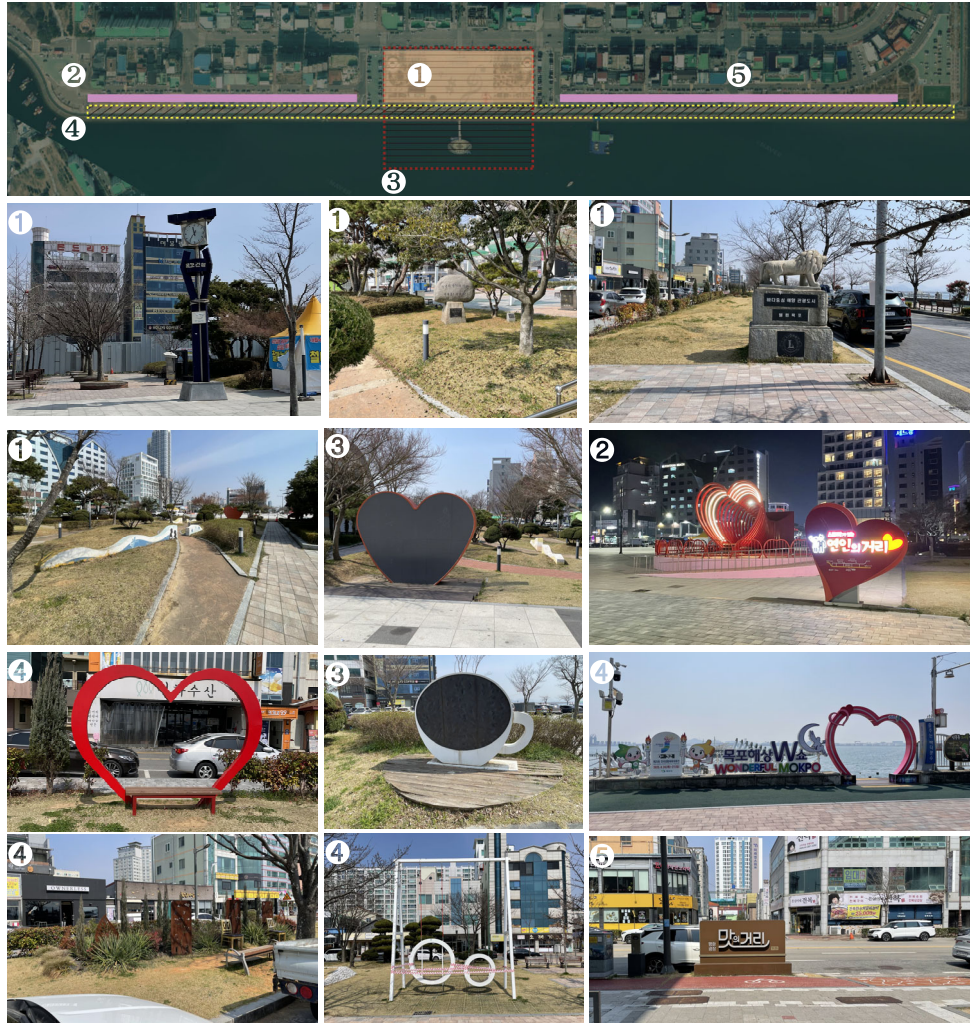
○○○삼거리 ○○군 진입부 조형물('12, '13, '21)²⁹⁾



조성방식:	①행정홍보용 고정선전탑 설치사업, ②대표농산물 홍보사업, ③경관개선사업 등	주요 내용
사업예산:	①1억 6천만원 ³⁰⁾ ('12) ②2억5천만원('13) ③6천1백만원('21)	
주 체:	(설치) ①건설방재과, ②③도시개발과 (관리) 문화예술과	
관련제도:	옥외광고물 조례('03 제정), 공공조형물 조례('19 제정)	
		- 100m 구간 내 세차레에 걸쳐 진입관문 상징조형물 조성 - ①군 경계 상징탑(홍보선전탑): 일회적으로 소비되던 광고탑을 상시사용 가능한 홍보탑으로 조성, 시 군경계 및 특산물 홍보용으로 운용(옥외광고물조례 근거 설치) - ②○○읍 무화과 조형물('13): 공공조형물 조례 제정 이전에 설치 - ③○○○삼거리 상징조형물('21): 군 진입경계 경관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설치, 가로시설물(디자인가로등)로 설치

29) 지방재정 365에서 제공하는 영암군 연도별 세부사업별 세출현황 자료. <https://www.lofin365.go.kr/portal/UF3120202.do>(검색일: 2025.5.7.); 영암군 계약정보시스템. <https://gyeyak.yeongam.go.kr/contract/>

해양문화 관광특구 ○○광장 조형물('19)³¹⁾



lists?type=0&txt=%EC%A1%B0%ED%98%95%EB%AC%BC&item=1&bt=0&wday1=&wday2=&p=2(검색일: 2025.5.13.); 영암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시행 2009.3.24.][조례 제1924호, 2009.3.24., 일부개정]; 영암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시행 2021. 7. 1.] [전라남도영암군조례 제2539호, 2021. 7. 1., 일부개정을 토대로 연구진 작성, 사진 출처: 연구진 촬영(촬영일: 2025.3.22.)

30) 도비와 군비 5:5 매칭사업으로 총 1억 6천만원 예산 투입(출처: 지방재정 365. <https://www.lofin365.go.kr/portal/LF3120202.do>.(검색일: 2025.5.7.); 영암군 계약정보시스템. <https://gyeyak.yeongam.go.kr/contract/lists?type=0&txt=%EC%A1%B0%ED%98%95%EB%AC%BC&item=1&bt=0&wday1=&wday2=&p=2>(검색일: 2025.5.13.)를 토대로 연구진 작성)

조성방식:	①미관광장 조성사업, ②연인의 거리 조성사업, ③광장 야간경관 개선 및 환경 정비사업 ④평화광장 구조개선사업, ⑤남도음식문화거리조성사업	주요 내용	- 약 1.2km 구간에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수십 개의 공공 조형물 설치 - ①휴식공간 조성 및 관광객 유치에 목적으로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미관광장 조성사업을 추진, 당시 여러 점의 공공 조형물 설치('94~'01) - ②'스토리가 있는 연인의 거리 조성사업'으로 대표 조형물 인 '러브게이트' 설치('17) - ③광장 일대 관광객 체류시간을 연장하고자 야간경관 개선 및 환경정비사업 '빛의 정원' 추진 및 조형물 설치('19) - ④관광특구 경관가치 제고를 통해 관광객 편의 증진, 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광장 구조 개선사업 추진('20~'22) - 주차장 신설 및 무장애거리 조성(인도 및 녹지공간 재조정), 휴식공간을 조성하면서 각종 미디어 경관조형물 설치 - ⑤연접하여 남도음식문화거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거리 상징조형물 설치('21)
사업예산:	④총 사업비 50억원 (바다분수 조형물 2.56억원) ⑤총 사업비 5억원 (설치) ③도시디자인과		
주 체:	④도시계획과 ⑤보건위생과 (관리) ④공원녹지과 ⑤보건위생과		
관련제도:	③경관조례('06 제정) ⑤공공디자인조례('11제정) 공공조형물 조례('15 제정) ※ 경관위원회가 심의 대행		

○○역 광장 주변 조형물('19~'21)³²⁾



- 31) 지방재정 365에서 제공하는 목포시 연도별 세부사업별 세출현황 자료. <https://www.lofin365.go.kr/portal/LF3120202.do>(검색일: 2025.6.28.); 목포시 계약정보시스템. <http://gyeyak.mokpo.go.kr/contract/lists?type=0&txt=%EC%A1%B0%ED%98%95%EB%AC%BC&item=1&bt=0&wday1=&wday2=>(검색일: 2025.5.13.); 목포시 경관관리조례[시행 2018.10.08][조례 제3191호, 2018.10.08., 일부개정]; 목포시 공공디자인진흥 조례[시행 2018.02.05.][조례 제3165호, 2018.02.05., 전부개정]; 목포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조례[시행 2021. 6. 7.][전라남도목포시조례 제3480호, 2021. 6. 7., 일부개정]을 토대로 연구진 작성, 사진 출처: 네이버지도. <https://naver.me/58N2xT08>(검색일: 2025.6.28.); 연구진 촬영(촬영일: 2025.3.22.)
- 32) 지방재정 365에서 제공하는 김천시 연도별 세부사업별 세출현황 자료. <https://www.lofin365.go.kr/portal/LF3120202.do>(검색일: 2025.6.28.); 김천시 계약정보시스템. https://contract.gc.go.kr/contract/contract_info/open_condition/all?page=2&srch_option=construction_name&srch_keyword=%EC%A1%B0%ED%98%95%EB%AC%BC(검색일: 2025.5.13.); 김천시 경관 조례[시행 2016.12.29.][조례

III | 공공조형물의 조성·관리 실태 및 현안



조성방식:	①② 도시경관개선사업(역 광장 신 조성사업) ③④ 도시재생사업(평화동) ⑤ 옥외광고물사업	주요 내용	- 역 광장을 중심으로 150m 가로 내 3개 사업에 의해 총 6점의 공공조형물 설치 - ①② 경부선 개통 100년 기념으로 역 광장 재조성 사업 추진과정에서 조형물 2점 설치('19~'21), 경관법 근거 도시경관관리사업으로 실행 - 도시재생사업(자생과 상생으로 사람이 모이는 활기찬 평화동, '16~'21, 총 사업비 182억원)의 세부사업(매력적인 상업문화공간 만들기-평화시장 청장년 친화거점조성(9억1천))으로 ③ 김천역 앞 파발마 조형물 설치('21), ④ 시장입구 광장 내 조형물 설치 - ⑤ 김천역 앞 시장 홍보 광고판 용도로 미디어 옥외광고물과 결합된 형태의 공공조형물 설치, 옥외광고물법 근거하여 사업 추진('09)
사업예산:	① 5,200만원('19) ② 1,800만원('21)		
주체:	(설치, 관리) ①②③④ 원도심재생과 ⑤ 기획예산실		
관련제도: (시행년도)	①②③④ 경관조례('16) ⑤ 옥외광고물조례('03) 공공조형물 조례('19) ※ 경관위원회가 심의 대행		

■ 유사한 목적의 공공조형물 중복 설치로 인한 경관 혼재

- (유사한 목적에서 공공조형물 건립) 여러 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홍보와 활성화를 목적으로 공공조형물을 지속적으로 조성

제1106호, 2016.12.29., 제정; 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조례 제 655호, 2008.02.28., 일부개정]; 김천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시행 2021.09.16.][조례 제1392호, 2021.09.16., 일부개정]를 토대로 연구진 작성, 사진 출처: (상좌) 네이버지도(<https://naver.me/GEIkZ44d>, 검색일: 2025.6.28.)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연구진 촬영(촬영일: 2025.4.17.)

- 이와 관련하여 시군 경계부 또는 진입부의 도로변, 주요 역 주변 및 관광특구 주변의 공공시설 용도에 해당하는 공원 및 광장 등의 특정 공간에 공공조형물을 반복하여 과다하게 조성하는 결과로 나타남
- **(과다한 조형물의 혼재로 인한 공간환경 저해)** 특정 공간에 여러 유형의 공공조형물이 혼재되어 혼란스러운 경관을 형성하고, 공공조형물 설치로 인해 정작 공공공간을 활용하는데 방해요소로 작용
- **(지속적인 예산 및 행정 낭비 우려)** 과다한 공공조형물 조성 문제는 설치뿐만 아니라 유지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예산과 행정인력의 투입 문제로도 이어짐

구분	개수	예산(백만 원) ³³⁾	장소별 합계
A사업	1	160	471
B사업	1	250	
C사업	1	610	
D사업	1	1,600	1,640
E사업	1	40	70
F사업	3	52	
G사업	1	18	

- 실제로 ○○○삼거리 진입부, ○○역 주변 광장 사례에서 100여 m 구간 내 3개~5개, 관광특구 ○○○광장 1.2km 구간 내 수십 개의 공공조형물이 설치되었으며, 특정 구역에 공공조형물을 조성하는데 적게는 7천만 원부터 많게는 수십억 원³⁴⁾이 소요된 것으로 확인

■ 다양한 부서 건립으로 통합관리의 어려움 및 사각지대 발생

- **(특정 사업에 포함하여 공공조형물 건립)** 대다수 공공조형물은 공공조형물 건립만을 대상으로 하는 개별사업 추진방식이 아닌 경관개선사업, 도시재생사업, 문화거리조성사업 등의 특정 사업에 포함하여 세부내용으로 추진
 - 실제로 3개 자치단체의 각 사업구역에서 공공조형물과 관련하여 총 13개의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3개 사업이 별도의 공공조형물 건립방식으로 추진

33) [표 3-2]에서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연구진 작성(출처: 지방재정 365에서 제공하는 각 자치단체별 연도별 세부사업별 세출현황 자료. <https://www.lofin365.go.kr/portal/LF3120202.do>(검색일: 2025.5.13.); 각 자치단체별 계약정보시스템. <https://gyeyak.자치단체명.go.kr>(검색일: 2025.5.13.))

34) 관광특구 ○○광장 사례에서 공공조형물 조성·관리 사업비만 별도로 산출 가능한 경우 공공조형물 조성비용으로 16억 원, 유지보수비용으로 4천만 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조사(출처: 목포시 계약정보공개시스템. <http://gyeyak.mokpo.go.kr/contract/lists?type=0&txt=%EC%A1%B0%ED%98%95%EB%AC%BC&item=1&bt=0&wday1=&wday2=>(검색일: 2025.5.13.))을 토대로 연구진 작성)

- 나머지는 전체 도시 차원의 경관개선사업 및 홍보탑·광고판 조성사업, 특정 사업지 대상의 도시재생사업, 음식문화거리조성사업, 광장 재정비사업 등에 포함하여 조성
- **(다양한 부서 건립으로 사각지대 발생)** 여러 부서가 공공조형물 건립사업을 추진하는 특성으로 인해 보건위생과, 기획예산실, 건설방재과 등 관련 분야에 대한 이해 및 인지가 부족한 부서의 경우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신청절차를 빠뜨리기 쉽고, 심의위원회 운영부서에서도 누락 여부를 인지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 발생
- 이러한 사업추진방식은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음에도 공공조형물의 통합 조성·관리가 어렵고 무분별하게 건립하는 결과에 영향

■ 위치정보 기반의 공공조형물 조성·관리체계 부재

- **(도시 차원의 공공조형물 조성 전략과 기본방향 부재)** 공공조형물은 경관계획 등과 같이 전체 도시 차원의 공공조형물 조성 전략 혹은 계획의 기본방향이 수립되지 않은 여건에서 개별사업 단위로 조성
- **(장소와 분리된 채 개별 공공조형물 단위로 조성·관리)** 공공조형물 조성 시 전체 사업계획 혹은 별도의 건립계획에 대해 건별로 심의 및 협의과정을 거치며, 건립 이후에는 전체 사업 단위 내 시설물로 관리되거나 개별 조형물 단위로 관리
- 이때 공공조형물은 건축물, 공작물 등과 같이 위치를 기반으로 조성·관리하는 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인접한 위치에 조형물이 중복 설치되어도 인지하거나 관리하기 어려운 여건
 - 대표적인 사례로 ○○광장의 경우 광장 일대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약 1.2km 가량의 해안로를 따라 미관광장 조성사업('94~'01)연인의 거리 조성사업('17), 야간경관 개선사업('19), 광장 구조개선사업('20~'22), 음식문화거리조성사업('21) 등 각각의 사업에 의해 수십여 개의 공공조형물이 조성

■ 조형물이 아닌 '시설물, 옥외광고물' 등으로 분류하여 조성·관리

- **(유관조례에 근거한 시설물로 조성·관리)** 공공조형물조례의 심의 대상규정은 경관조례,

공공디자인진흥조례, 옥외광고물조례 등 유관조례를 근거로 조성·관리하는 결과에 영향

- 공공조형물 조례는 모든 건립대상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한 반면, 유관 조례에서는 사전협의 또는 신고 등의 간소한 절차를 거쳐 건립이 가능
 - 3개 자치단체 사례 모두 '15년과 '19년 공공조형물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유관조례를 근거로 조성·관리
 - A지자체의 경우 시·군 경계의 상징성을 강화하고자 세 차례에 걸쳐 조형물 조성사업이 진행하였으나 3건 중 1건만이 조형물로 조성되었으며, 나머지는 옥외광고물, 가로시설물로 조성³⁵⁾한 것으로 확인
 - B지자체의 경우 경관조례에 근거한 야간경관조명시설, 공공디자인조례에 근거한 상징시설로 조성한 것으로 확인

2) 설치장소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공공조형물의 기능 및 형태

[표 3-3] 설치장소의 특성 및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공공조형물 조성사례

○○시 ○○구 ○○공원 내 조형물(2025)³⁶⁾



[미디어 콘텐츠 조형물 입지 및 전경]



[낮시간대 미디어 콘텐츠 조형물 현황]

35) 지방재정 365에서 제공하는 영암군 연도별 세부사업별 세출현황 자료.<https://www.lofin365.go.kr/portal/LF3120202.do>(검색일: 2025.5.7.); 영암군 계약정보시스템. <https://gyeyak.yeongam.go.kr/contract/lists?type=0&txt=%EC%A1%B0%ED%98%95%EB%AC%BC&item=1&bt=0&wday1=&wday2=&p=2>(검색일: 2025.5.13.); 영암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시행 2009.3.24.][조례 제1924호, 2009.3.24., 일부개정]; 영암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시행 2021. 7. 1.] [전라남도영암군조례 제2539호, 2021. 7. 1., 일부개정]를 토대로 연구진 작성

III | 공공조형물의 조성·관리 실태 및 현안

조성방식:	공원 경관조명 및 미디어콘텐츠 조성사업	주요 내용	- LED 패널을 적용한 정육면체 형태의 미디어 조형물로 계획을 변경*하고, 이에 대한 조성비용 3억 원을 추가로 증액 * (기존) 높이 13m, 알루미늄 트리 형태, 2D 프로젝션 맵핑, 5억 원 (변경) 높이 11m, LED 패널 정육면체, 3D 미디어 콘텐츠 구현, 8억 원 - 하지만, 조형물이 설치된 공원은 철새도래지 보호구역으로 19시 이후 점등이 불가능한 곳으로 미디어영상 구현의 어려움 발생 - 또한 조형물의 지지대 및 접합부가 태풍 등의 외부충격에 취약하여, 공원 이용객의 안전문제 우려와 민원 증가로 접근 통제용 안전펜스를 추가로 설치('25.2.)
사업예산:	10.77억원('24.5-'25.2)		
주 체:	(설치) 녹지공원과 (관리) 문화체육과		
관련제도:	공공조형물 조례('23 제정) 공공디자인 조례('24 제정)		

○○도 돌문화공원 내 하트 조형물(2022)³⁷⁾



[하트 조형물 조성 현황]



[하트 조형물 입지 및 전경]

조성방식:	돌문화공원 제2코스 포토존 조성사업	주요 내용	- 돌문화, 신화, 민속문화의 취지를 가진 자연공원 경관의 취지와 맞지 않은 인공조형물을 설치('21)하여 정체성 훼손 - 조형물 내부에 제주돌을 금속에 꿰어 메달고, 색상, 형태 모두 자연경관과 이질적이며, 조악하다는 논란 증대 - '99년까지 민관합동 추진기획단이 공원조성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1년 위탁계약 해지되어 행정이 단독 운영 - '21년 10월 돌문화공원의 최초 조성 취지를 고려하여 하트조형물을 철거함
사업예산:	1,949만원('21)		
주 체:	(설치) 공원관리소 (관리) 공원관리소		
관련제도:	공공디자인 조례('17 제정) ※ 공공조형물 조례 미제정		

36) 지방재정 365에서 제공하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연도별 세부사업별 세출현황 자료. <https://www.lofin365.go.kr/portal/LF3120202.do>(검색일: 2025.6.28.); 부산광역시 강서구 계약정보시스템. <https://contract.bsgangseo.go.kr/basis/situationList.do>(검색일: 2025.6.28.);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시행 2023.03.24.][조례 제1304호, 2023.03.24., 제정];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시행 2025.01.01.][조례 제1442호, 2024.12.18., 제정]; 백창훈. (2025). 명지 울림공원 조형물, 안전 민원에 펜스 설치. 국제신문. 3월 13일 기사. <https://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250314.22006003879>(검색일: 2025.04.30.)를 토대로 연구진 작성, 사진 출처: (좌) MASS. <https://maas-xrground.com/>

○○시 평화광장 연인의거리 러브게이트(2017)³⁸⁾



['17년 조성 당시 모습]



['25년 현재 모습(경관조명 및 안전난간 추가 설치)]

조성방식:	이야기가 있는 거리조성사업	주요 내용	- '17년 광장 일대 약 1.2km구간을 시민·공무원 아이디어 제안 공모를 통해 이야기가 있는 '연인의 거리' 조성사업 추진 - 거리를 상징하는 조형물 설치 및 포토존 조성을 위해 전국 단위 공모전을 개최하고, 최우수작으로 '러브게이트'를 선정 - 하지만 주로 가족단위 휴식공간으로 이용되는 광장의 특성과는 이질적이고 평화광장이 선정적으로 비춰질 우려 등 논란 발생 - '17년 상징조형물 조성 당시 약 13.4억원(①~④)의 사업비가 투입된 이후, '21년 경관조명 및 안전시설 설치 공사(⑤~⑥)로 약 4천만원의 사업비 추가 소요
사업예산:	총 17,229만원		
	만원		
	①설계용역 780('17.2)		
	②설치공사 9,621('17.5)		
	③경관조명 설치 1,215('17.5)		
	④시설물 구매 설치 1,782('17.12)		
주 체:	⑤경관조명 전기공사 1,913('21.7)		
	⑥안전 펜스 및 계단 1,918('21.9) 설치		
주 체:	(설치) 관광과 (관리) 도시디자인과		
관련제도:	공공디자인 조례 ('11.제정) 공공조형물 조례 ('15.제정) ※ 경관위원회가 심의 대행		

34 (검색일: 2025. 4.30.), (우) 네이버지도 <https://map.naver.com/p/search/%EB%B6%80%EC%82%B0%20%EC%9A%B8%EB%A6%BC%EA%B3%B5%EC%9B%90?c=16.35,0,0,0,adh&p=oZkUt3UDTzJ2Cylz1dTnQ,-69.24,-3.23,47.75,Float>(검색일: 2025.6.3.)

37) 지방재정 365에서 제공하는 제주도 연도별 세부사업별 세출현황 자료. <https://www.lofin365.go.kr/portal/LF3120202.do>(검색일: 2025.6.28.);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시행 2020.12.31.] [조례 제 2740호, 2020.12.31., 전부개정; 한형진. (2022). 제주돌문화공원 망치는 조악한 설치물들...반응도 평가도 '싸늘'. 제주소리. 7월 20일 기사. <https://www.jeje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405907>(검색일: 2025.04.30.); 한형진.

○○시 ○○광장 하트 조형물(2021)³⁹⁾



조성방식:	광장 구조 개선사업(1차년도)	주요 내용	- 천만 관광 도시 육성 및 관광활성화를 위해 '21년 광장 구조개선 사업 추진(총 사업비 50억 원) - 1차년도 사업(총 18억원 선 투입)의 세부사업으로 “춤추는 바다분수” 조망방향으로 하트 조형물 설치
사업예산:	총 사업비 18억 원('20)		
주체:	(설치) 도시계획과, 관광과 (관리) 도시디자인과		
관련제도:	공공디자인 조례('11.제정) 공공조형물 조례('15.제정) ※ 경관위원회가 심의 대행		

- (2022). [속보] 빈축 샀던 제주돌문화공원 하트설치물 결국 철거... 정상화 신호탄?. 제주의소리. 10월 4일 기사. <https://www.jejeo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408323>(검색일: 2025.4.30.)를 토대로 연구진 작성, 사진 출처: 한형진. (2022). 제주돌문화공원 망치는 조악한 설치물들... 반응도 평가도 '싸늘'. 제주의소리. 7월 20일 기사. <https://www.jejeo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405907>(검색일: 2025.4.30.)
- 38) 지방재정 365에서 제공하는 목포시 연도별 세부사업별 세출현황 자료. <https://www.lofin365.go.kr/portal/LF3120202.do>. (검색일: 2025.6.28.); 목포시 계약정보시스템. <http://gyeyak.mokpo.go.kr/bid>(검색일: 2025.5.13.); 목포시 공공디자인 조례[시행, 2011.04.18.] [조례 제2671호, 2011.04.18., 일부개정]; 목포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조례[시행, 2021. 6. 7.] [전라남도목포시조례 제3480호, 2021. 6. 7., 일부개정]; 박경우. (2017). 목포 평화광장 일대 '연인의 거리' 조성. 한국일보 5월 30일 기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70530177_2353635 (검색일: 2025.4.30.); 강신성(2017). 목포 '러브게이트' 적절성 논란. 광주타임즈 6월 7일 기사. <https://www.gjt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9526>(검색일: 2025.4.30.)를 토대로 연구진 작성, 사진 출처: (좌) 두피디아. https://www.doopedia.co.kr/photobox/comm/community.do?_method=view&GAL_IDX=170725001069602&newSearchType=all#hedaer(검색일: 2025.4.30.); (우) 연구진 촬영(촬영일: 2025.3.22.)
- 39) 지방재정 365에서 제공하는 목포시 연도별 세부사업별 세출현황 자료. <https://www.lofin365.go.kr/portal/LF3120202.do>(검색일: 2025.6.28.); 목포시 계약정보시스템. <http://gyeyak.mokpo.go.kr/bid>(검색일: 2025.6.28.); 목포시 공공디자인 조례[시행, 2011.04.18.] [조례 제2671호, 2011.04.18., 일부개정]; 목포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조례[시행, 2021. 6. 7.] [전라남도목포시조례 제3480호, 2021. 6. 7., 일부개정]; 송고 (2020). 목포 평화광장, 세계적 문화관광·해안테저 공간으로 만든다. 연합뉴스. 1월 24일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0012311_0200054(검색일: 2025.4.30.)를 토대로 연구진 작성, 사진 출처: (좌) 연구진 촬영(2025.3.22.); (우) 김윤찬. (2024). 목포 춤추는 바다분수, 물과 음악 빛의 예술. 영월인. 6월 30일 기사. <https://www.ywmedia.kr/news/articleView.html?idxno=20216> (검색일: 2025.4.30.).

■ 설치 공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공공조형물

- (장소특성과 조형물의 부조화) 조형물이 해당 장소의 역사적 맥락, 문화적 상징성, 자연환경과 조화롭지 못하고 공간의 성격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상징물이 설치되어 이질적인 경관 형성

- ○○공원: 철새도래지 보호구역이라는 입지 특성 미반영 → 점등 제한, 접근 통제
- 돌문화공원: 전통·역사성과 조형물의 상징성 불일치 → 자연·생태경관과 부조화
- 평화광장: 시민 일상공간과 이질적인 연인의거리 조형물 → 공공성·가족성 훼손 논란

- (공공조형물 조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부족) 해당 공간의 주요 이용객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다소 이질적인 성격의 공공조형물 설치로 공감대 형성이 어렵고, 철거 민원까지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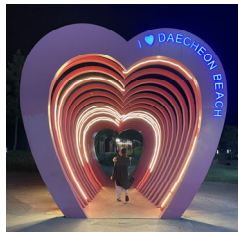
■ 유사한 형상의 공공조형물 조성으로 경관의 다양성 및 특성 저하

- (여러 지역에서 유사한 공공조형물 설치) 전국 각지에서 하트모양 벤치 등의 유사한 형태의 공공조형물이 반복하여 조성되며, 이벤트성의 장식적인 시설물로 공공조형물을 조성하는 현상 발생
- (경관 특성 및 정체성 저하) 유사한 조형물 설치로 지역별 경관의 차별성과 다양성이 저하되고, 해당 지역 특유의 공공조형물 조성을 통한 장소 가치 제고 및 지역 정체성 강화라는 조성 취지 및 목적이 상실되는 문제가 연속

[참고] 기타 하트조형물 조성 사례



경북 ○○군 ○○공원



충남 ○○시 ○○해수욕장



서울 ○○구 ○○천

출처: (좌) 익성군 블로그 기사단. https://blog.naver.com/uiseong-good/223541873475?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검색일: 2025.5.27.); (중간) 연구진 촬영(촬영일: 2022.5.6.); (우) 연구진 촬영(촬영일: 2020.12.27.)

■ 공공조형물 자체의 조형성·상징성에 집중된 계획 수립 및 건립 기준

- (설치장소에 대한 사전조사 및 고려 미흡) 공공조형물 건립을 신청 및 계획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설치 장소의 특성과 공공조형물의 관계 고려는 미흡한 실정
- 공공조형물을 해당 장소에 조성하는 목적, 해당 장소의 특성과 공공조형물의 관련성 등 장소적 맥락에서 공공조형물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심의하지 않음
 - 대다수가 공공조형물 건립 신청 시 제출하는 계획서 양식에서 조형물의 규모 및 형태, 제작자 및 사업비 조달계획 등의 조형물 자체의 물리적 특성과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위주로만 규정
 - 조형물을 설치하는 공공공간의 성격, 생태환경 및 역사 문화적 배경 등에 대한 사전 조사 과정은 부재한 상황

[별지 제1호 서식]

공공조형물 건립 신청서				
신청자	성명(단체명)		전화	
	주소		대상자와의 관계	
건립대상자 (동상인 경우)	성명(한 자)		생년월일	
	생존기간		사망자	
	주요업적개요			
목포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목포시장 귀하				
구비서류 1. 건립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2.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업적(동상인 경우) 3. 건립취지 4. 기타 증빙서류				

[별지 제2호 서식]

건립계획서

1. 사업명
2. 추진기간
3. 사업개요
 - 가. 규모 :
 - 나. 모형 또는 형태 :
 - 다. 재질 :
4. 작품설명
5. 제작자
6. 사업비
7. 사업비 조달계획

[그림 3-4] 목포시 공공조형물 건립 신청서 및 계획서 양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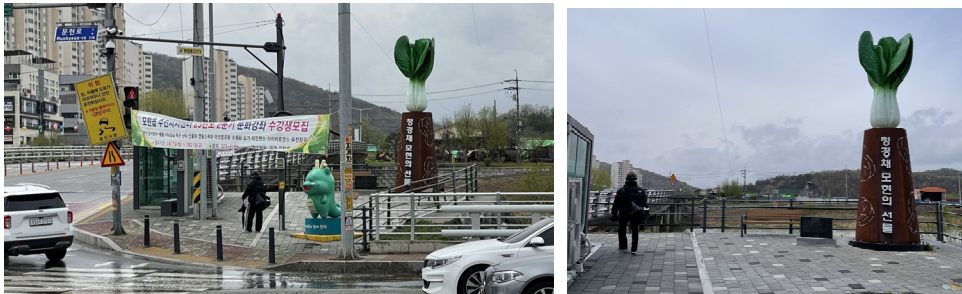
출처: 목포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시행 2021.06.07.] [조례 제3480호, (2021.06.07., 일부개정)]

- 각 자치단체별 공공조형물 위원회의 심의 기준으로 운영되는 건립 및 설치 기준 규정에서도 ‘조형물 자체의 작품성·상징성에 집중’되며, 공공조형물의 입지 및 공간 특성과 여건에 대한 평가기준은 미흡

3) 구체적인 형태를 강조한 공공조형물 디자인

[표 3-4] 구체적인 형태를 강조한 디자인의 공공조형물 조성사례

○○읍 ○○사거리 청경채 조형물(2023)⁴⁰⁾



조성방식:	조형물 설치사업	주요 내용	- 지역 대표 농산물 홍보 목적으로 공공조형물 조성
사업예산:	3,610만원		- 비교적 큰 규모의 조형물(높이 5.3m, 너비 1.82m)임에도 불구하고 관련조례에 따른 공공조형물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조성
주 체:	(설치) 모현읍 (관리) 모현읍		- 물품구매(3,530만원), 전기공사 용역(80만원) 등 2개의 용역으로 분리하여 추진
관련제도:	공공디자인 조례(‘10.제정) ※ 공공디자인 심의대상에 공공조형물 포함 ※ 공공조형물 조례 미제정		- 제조업(간판 및 광고물 제작) 등록 업체에서 조형물을 제작 - 청경채 조형물 설치 이전 인접한 위치에 시 홍보용 캐릭터 조형물 설치(‘22)

40) 용인특례시 계약정보시스템. <https://contract.yongin.go.kr/index.jsp?mpg=situPubldetail&spg=situ&num=1&idx=202300315346&ctrlCNT>(검색일: 2025.5.9.); 용인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시행 2018.05.14.] [조례 제1819호, 2018.05.14., 일부개정]를 토대로 연구진 작성, 사진 출처: 연구진 촬영(촬영일: 2025.4.13.)

○○군 땅콩 조형물(2021)⁴¹⁾



조성방식:	특산물 홍보사업	주요 내용	- 지역 특산물 홍보 목적에서 공공조형물 조성 - 상단 조형물(3,360만원)과 하단 기단부(1,130만원)로 각각의 영역으로 분리하여 추진 - 제조업(간판 및 광고물 제작) 등록 업체를 통한 물품구매방식으로 조성 -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관련부서 협의 절차를 거쳐 설치
사업예산:	4,500만원		
주 체:	(설치/관리)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		
관련제도:	공공디자인(‘17 제정) ※ 공공디자인 심의·검토대상에 공공조형물 포함 공공조형물(‘20 제정) ※ 경관위원회가 심의 대행		

■ 고명도·고채도 색채 사용 및 구체적인 특산물 형상화로 인한 경관 저해

- 여러 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산물 및 농수산물 홍보를 목적으로 공공조형물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홍보 목적에 치우친 공공조형물의 조성 취지로 지역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에 어려움 발생
- 특히 특산물의 직접적·구체적인 형태를 강조한 디자인과 고명도·고채도의 색채 사용은 주변과의 이질감을 유발하고, 공공조형물 설치로 경관을 저해하는 문제로 작용
 - 공공조형물 조성에 관한 민원사례에서도 직접적으로 구체화한 공공조형물의 디자인을 문제로 제기하고, 이에 대한 공공조형물 설치 반대 및 철거 요청, 조성 취지에 대한

41) 지방재정 365에서 제공하는 신안군 연도별 세부사업별 세출현황 자료. <https://www.lofin365.go.kr/portal/LF3120202.do>(검색일: 2025.6.28.); 신안군 계약정보시스템. <https://www.shinan.go.kr/gyeyak/contract/lists?type=0&txt=%EC%A1%B0%ED%98%95%EB%AC%BC&item=1&bt=0&wday1=&wday2=&p=7>(검색일: 2025.6.28.); 신안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시행 2017.07.04.][조례 제1985호, 2017.07.04., 제정]; 신안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시행 2021.08.09.][조례 제2407호, 2021.08.09., 일부개정]를 토대로 연구진 작성, 사진 출처: 연구진 촬영(촬영일: 2025.3.22.)

이해 및 공감의 어려움을 언급



○○군 마늘 조형물



○○군 자두 조형물



○○군 고추 조형물

[그림 3-5] 지역 특산물의 형태를 강조한 공공조형물 설치사례

출처: (좌) 연구진 촬영(촬영일: 2025.3.19.); (중) 백송디자인. <http://100song.urr.kr/bbs/content.asp?idx=20210112202202>(검색일: 2025.5.15.); (우) 네이버 지도.https://map.naver.com/p/search/%EC%B2%AD%EC%96%91%EA%B3%B5%EC%84%A4%EC%9A%B4%EB%8F%99%EC%9E%A5/place/1294749369?placePath=?entry=pll&from=nx&fromNxList=true&searchType=place&c=15.00,0,0,0,adh&p=GTJIBktInMweKI4_wLrk2A,20.37,11.08,47.75,Float(검색일: 2025.5.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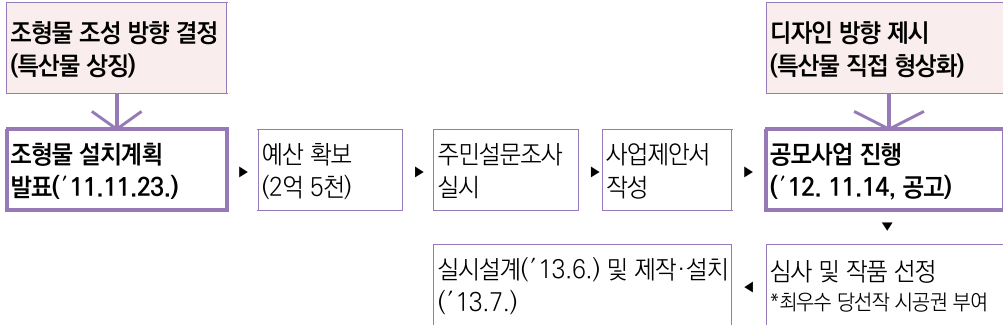
■ 관 주도로 공공조형물의 디자인 방향 결정

- (관 주도로 조성·결정하는 절차상의 한계) 대다수 사례에서 공공조형물 건립 결정 및 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조성의 목적과 방향에 대한 사전 논의과정을 거치거나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
- 특히 관련 분야 전문가 및 지역주민 참여가 아닌 관 주도로 건립이 결정되고, 디자인의 방향과 내용이 사전에 결정
 - ○○군 사례의 경우 표면적으로는 공공조형물 설치계획에 대한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제안서에 의견을 반영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모를 통해 최우수작품과 해당 작품제안자에게 시공권을 부여하는 등 합리적인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 가능
 - 하지만 당시 군의회 회의록 및 행정자료 등을 살펴보면, 공공조형물 설치계획이 발표되기 이전에 ‘지역의 특산물을 형상화한 조형물 디자인으로 기획’되고⁴²⁾, 입찰공고

42) 영암군의회. (2011.11.23.). 제202회 본회의회의록. <https://www.yacl.go.kr/CLRecords/Retrieval2/index.php?hfile=6A0110202011.html&daesu=6>(검색일: 2025.4.25.)를 토대로 연구진 작성

제안요청서에 ‘특정 특산물을 상징 및 직접 형상화’하도록 제시⁴³⁾한 것으로 확인

[표 3-5] ○○읍 조형물 조성절차



출처: 지방재정 365에서 제공하는 영암군 연도별 세부사업별 세출현황 자료. <https://www.lofin365.go.kr/portal/LF3120202.do>(검색일: 2025.5.7.); 영암군. (2012.11.). 삼호읍 무화과 조형물 제작·설치 제안서.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s://www.g2b.go.kr>(검색일: 2025.4.1.)를 토대로 연구진 작성

[표 3-6] ○○읍 조형물 제안범위 및 내용

사업목적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 및 방문객들에게 ○○지역 이미지를 쉽게 인지시킬 수 있도록 ○○읍 관문에 지역을 대표하는 ○○○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설치하여 지역특산물 홍보 및 아름다운 경관조성
제안범위	가. 디자인: 주제는 ○○군을 찾는 관광객 및 방문객들에게 ○○지역 이미지를 쉽게 인지시킬 수 있도록 ○○읍 관문에 지역을 대표하는 ○○○를 상징하는 조형물로 1) ○○지역 특산물인 ○○○를 상징하는 독창적 디자인 개발과 ○○○ 형상 직접디자인 및 ○○군 상징성과 연계된 디자인을 반영한다. 2) 지역 특산물의 홍보와 특산물의 특성을 고려하고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술성과 창의성이 있는 주제의 홍보조형물이어야 한다. 3) 지역 특색 및 도로변 경관 등에 저해가 없으며 특산물의 탐스러운 모습이 강조되어야 한다. 4) 구조물의 조형성, 기능성, 안전성, 내구성 있는 재질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설치장소의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특산물을 특화할 수 있어야 한다. 5) 관련 규정 및 제반규정에 적법하게 설계 및 시공될 수 있도록 계획되고 유지관리비용이 최소로 하여야 한다. 나. 디자인 방향 - 상징성 : ○○읍 특산물의 상징적 이미지 - 지역성 : 해당 특산물이 전국 70%이상을 생산하는 지리적 표현한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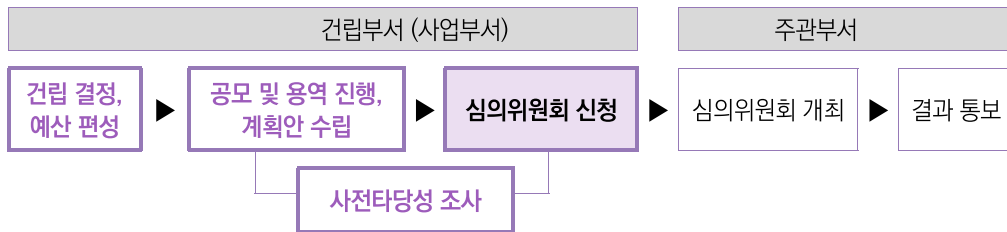
출처: 영암군. (2012.11.). 삼호읍 무화과 조형물 제작·설치 제안서. pp.1-2.(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s://www.g2b.go.kr>, 검색일: 2025.4.1.)

43) 영암군. (2012.11.). 삼호읍 무화과 조형물 제작·설치 제안서.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s://www.g2b.go.kr>(검색일: 2025.4.1.)를 토대로 연구진 작성

■ 예산 편성 및 계획안 수립 이후 심의절차 진행

- **(계획 수립 이후 심의절차의 한계)** 공공조형물은 건립사업을 추진하는 담당부서에서 예산 편성을 받아 공모 및 용역을 통한 디자인 계획이 일정 부분 진행된 이후, 공공조형물 위원회 심의를 신청하는 절차로 진행
- 건립예산 편성 및 디자인 계획과정에서 진행하는 심의위원회의 절차적 순서는 해당 장소에 공공조형물 조성 취지 및 필요성을 검토하거나 조형물의 규모 및 디자인 방향을 전폭적으로 수정하는데 한계가 존재하며, 한정된 범위에서 디자인 조정 수준에 불과한 문제로 작용
- **(공공이 설치하는 조형물에 대한 심의제도 운영의 한계)** 특히 공공조형물의 특성상 공공기관 및 해당 자치단체의 타부서가 추진하는 사업을 수평적 위상의 공공조형물 위원회 심의를 주관하는 부서가 필요성 및 적정성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하는데 현실적인 한계와 어려움 발생

[표 3-7] 공공조형물 건립계획 수립 및 심의 진행 절차



출처: 연구진 작성

■ 유관조례에 따른 협의 및 자문을 거쳐 조성

- **(유관조례에 근거한 시설물로 조성·관리)** 다수의 공공조형물 조성사업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였으나, 보다 간소하고 용이한 방식인 유관조례에 근거한 자문, 협의, 인허가 방식을 통해 조성

- (단가를 낮추는 방식으로 조성) 다수의 사례가 전문업체 또는 전문작가가 참여하지 않는 1억 원 미만의 공공조형물 사업으로 추진하여, 공공디자인진흥조례에 근거한 자문 및 협의 절차를 거치는 등 공공조형물위원회 심의를 기피하는 것으로 확인
- 특히 공공조형물 기획 및 디자인과정에 전문작가가 참여하는 방식이 아닌 제조업 등록 업체로부터 물품구매방식에 의한 공공조형물 조성사업 추진
- 이마저도 상부 조형물과 하부 기반부로 분리하여 구매하거나, 조형물 구매와 전기공사, 실시설계 및 설치공사 용역 등의 분리 발주방식으로 사업비를 조정하여, 심의위원회를 피해가는 것을 확인
 - ○○군 땅콩조형물의 경우, 공공디자인진흥조례에 근거하여 사업비 1억 원 이하로 관련부서 협의 절차를 거치고, 설치 장소와 관련하여서도 조형물은 도로 점유 신고 및 허가 의무대상에서 제외되어 관련부서 협의 절차만을 거쳐 건립⁴⁴⁾
 - ○○읍 청경채조형물의 경우, 해당 자치단체는 공공조형물조례 및 공공디자인진흥조례에서 공공조형물을 심의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두 조례 모두 적용하지 않고 임의로 건립
- (제재 수단 및 권한 부재) 공공조형물조례 및 공공디자인조례에서는 공공조형물 조성시 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의무화하였으나, 추진하지 않더라도 제재 수단 및 권한은 마련되지 않음

44) 「도로법」 제61조제1항에서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각 호에서 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간판, 현수막, 아치 등에 해당하지 않는 조형물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출처: 도로법[시행 2025. 2. 14.] [법률 제20294호, 2024. 2. 13., 일부개정])

4) 접근성·시인성이 부족한 입지에 공공조형물 설치

[표 3-8] 접근성·시인성이 부족한 입지의 공공조형물 설치사례

○○군 참외 상징조형물(2022)⁴⁵⁾



[참외 상징조형물 입지 현황]



[도로변에서 보이는 상징조형물 현황]



[도로변에서 보이는 상징조형물 차폐 및 인지 현황]



[참외 상징조형물 조성 현황]

조성방식:	참외상징물 디자인 설계 제작설치 사업	주요 내용	- 지역 특산물 홍보를 목적으로 참외 상징조형물을 도로변에 조성(물품구매방식)
사업예산:	6천만원		- 해당 도로변은 제한속도 70~80km구간의 국도변으로 보행 접근이 어렵고, 운전자 또한 차량 속도로 인해 조형물을 인지하는데 어려움 발생
주 체:	(설치) 농림정책과 (관리) 건축디자인과		- 이마저도 해당 입지는 주유소 건물 뒤 언덕에 위치하여 수목 등으로 차폐되어 조형물 시인성에 한계
관련제도:	공공디자인 조례('19. 제정) ※ 공공조형물 조례 미제정		

45) 칠곡군 계약정보시스템. <https://www.chilgok.go.kr/portal/nara/plan/view.do?mId=0307110101>(검색일: 2025.4.25.); 칠곡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시행 2019.08.09.][조례 제2496호, 2019.08.09., 제정]; 이임철. (2022), 7천만 원짜리 칠곡벌꿀참외 홍보 조형물이 안 보여. 대구일보. 5월 24일 기사. <https://www.idaegu.com/news/articleView.html?idxno=437606>(검색일: 2025.5.9.)를 토대로 연구진 작성, 사진 출처: (상좌) 네이버 지도. <https://naver.me/5LHWs6xF> (검색일: 2025.5.9.). (상우) 카카오맵. <https://map.kakao.com>(검색일: 2025.5.9.); (하좌) 이임철. (2022), 7천만 원짜리 칠곡벌꿀참외 홍보 조형물이 안 보여. 대구일보. 5월 24일 기사. <https://www.idaegu.com/news/articleView.html?idxno=>

○○군 ○○읍 진입관문 조형물(2021)⁴⁶⁾



조성방식:	갯벌 습지보호지역 안내표지석 제작·설치 사업	주요 내용	- 왕복 4차선 도로변에 해당 지역의 세계유산 등재를 기념하기 위한 안내표지석 설치 - 해당 위치는 진입경로의 관문부에 해당하나, 주변 도로변 자투리 공간에 조성되어 조형물의 시인성이 부족한 한계 발생
사업예산:	616.9만원('21.6)		
주 체:	(설치) 섬발전진흥과 (관리) 섬발전진흥과		
관련제도:	공공디자인('17 제정) ※ 공공디자인 심의·검토대상예 공공조형물 포함 공공조형물('20 제정) ※ 경관위원회가 심의 대행		

■ 인지하기 어려운 장소에 설치하여 정책 체감의 한계 발생

- (공공조형물의 접근성 및 체험 기회가 부족한 입지에 설치) 건물 뒤편, 통과 도로변, 주차장, 자투리땅 등 접근성이 떨어지는 공간에 공공조형물을 설치하여, 국민들이 공공조형물을 인지하거나 체험하기 어렵고 해당 공간에 머무르며 소통하기 어려운 한계

437606(검색일: 2025.5.9.); (하우) 홍창진. (2022). [경북소식] 철곡 벌골참의 상징 조형물 준공. 연합뉴스.5월 12일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20512109000053>(검색일: 2025.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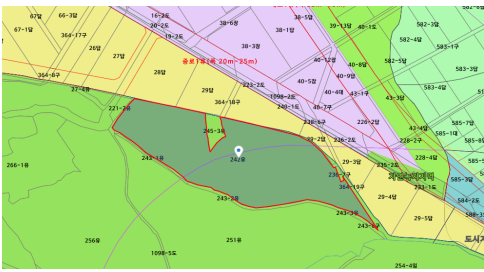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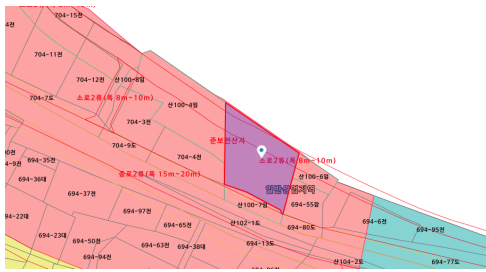
46) 지방재정 365에서 제공하는 신안군 연도별 세부사업별 세출현황 자료. <https://www.lofin365.go.kr/portal/LF3120202.do>(검색일: 2025.6.28.); 신안군 계약정보공개시스템. <https://shinan.go.kr/gyeyak/contract/post/26482>(검색일: 2025.4.30.); 신안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시행 2017.07.04.][조례 제1985호, 2017.07.04., 제정]; 신안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시행 2021.08.09.][조례 제2407호, 2021.08.09., 일부개정]를 토대로 연구진 작성, 사진 출처: (상, 하우) 연구진 촬영(촬영일: 2025.3.22.); (하좌) 네이버 지도. <https://naver.me/5owkVP6G>(검색일: 2025.4.30.)

- (국민들의 정책 체감 한계) 이로 인해 공공재원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공공조형물을 통한 경관 향상 및 장소가치 제고 등의 효과를 체감하는데 한계로 작용

■ 공공조형물 설치 시 입지 선정 관련 기준 미흡

- (가용 토지 우선 설치로 입지특성 고려 부족) 현행 조례상 공공조형물은 ‘공유재산인 공공시설’로 한정됨에 따라 조형물 설치 시 입지적 특성 분석 없이 공공이 소유한 가용토지를 우선 검토하는 현실적 여건의 한계가 발생
 - 특히 진입부, 관문, 경계지 등 조형물 설치에 중요한 입지특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며, 실제 사례에서 유지, 임야 등 활용성이 낮아 협의가 용이한 부지 위주로 설치한 것으로 확인
 - 입지선정 과정에서 공공조형물의 공공성, 시인성, 상징성 등의 시설 적합성보다 설치 가능 및 토지이용 여부나 행정 중심으로 결정되는 경향으로 인해 시민들이 조형물을 체험하거나 인지하기 어려운 공간에 공공조형물이 설치

[표 3-9] 사례별 토지이용계획 및 소유특성

○○군 공공조형물 설치 토지현황	○○군 공공조형물 설치 토지현황
	
준보전산지 내 지목 '유지' — 법인 소유	상업지역 내 '임야' — 개인 소유

출처: 토지이용. <https://www.eum.go.kr>(검색일: 2025.5.20.)을 토대로 연구진 작성

- (공공조형물 입지 선정 및 주변 공간환경 평가기준 부재) 공공조형물 설치를 결정하기 이전에 입지 타당성, 주변부 조망 특성, 시인성 등에 대한 사전조사 및 평가기준 미흡
- (조형물 위주의 심의 기준) 공공조형물 심의과정에서 조형물 자체의 조형미, 상징성을 위주로만 평가하고, 주변 공간관경과의 적합성 또는 조형물을 통한 정책적 효과에 대한 고려는 미흡

5) 안전을 저해하는 위치에 공공조형물 설치

① 보행 및 통행을 방해하는 장소에 설치

[표 3-10] 보행 및 통행을 방해하는 공공조형물 설치사례

○○시 ○○○교차로 관문 상징조형물 (2021)⁴⁷⁾



[관문 상징조형물 계획(안)]



[실제 상징조형물 설치 현황]

조성방식:	시 관문 상징조형물 제작 설치사업	주요 내용	- 시 진출입 관문에 방문객에 긍정적 이미지 부여 및 도시 홍보를 목적으로 상징조형물을 설치 - 하지만 협소한 보행교통섬의 중앙에 위치하여 보행자 시야와 통행을 방해하는 등의 안전문제가 우려 - 해당 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관련 조례 제5조(설치위치 및 제작기준) 제2항제2호에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규정하였음에도 심의위원회를 통과하여 문제로 제기
사업예산:	1,996만원('21.2.)		
주 체:	(설치) 관광과 (관리) 건축과		
관련제도:	공공조형물 조례('17. 제정) 공공디자인 조례('17. 제정)		

○○시 ○구 ○○가구거리 조형물(2023)⁴⁸⁾



47) 속초시 계약정보시스템. <https://confin.sokcho.go.kr/contract/continfo/status/conconst?ctrAcct>



조성방식:	가구거리 리디자인사업	주요 내용	- 가구거리 리디자인사업에서 거리 홍보를 목적으로 미디어 조형물 2점을 설치 - 비교적 규모가 큰 미디어 조형물 1점이 협소한 보행교통섬에 위치하여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하여 안전문제가 우려되는 상황 - 이밖에도 낮에는 미디어 조형물 효과가 떨어지고, 야간에는 조명 사용으로 전기세 등 매달 과다한 관리비용이 소요되는 문제가 지적(월 평균 36만원)
사업예산:	전체 14.5억원('23.2) (조형물 6.14억원)		
주 체:	(설치) 도시과 (관리) 건축과		
관련제도:	공공디자인조례('17. 제정) ※ 공공디자인 검토 심의대 상에 공공조형물 포함 ※ 공공조형물 조례 미제정		

○○시 상가거리 조형물(2019)⁴⁹⁾



조성방식:	빛의 도시(야간경관조성사업)	주요 내용	- 주변 일대 야간경관 조성을 목적으로 약 800m 가로에 각종 경관조명 및 조형물 설치(루미나리 등) - '06년 설치(6억 5천 만원) 이후 시설 낙후화로 '19년 철거하고 재설치로 막대한 예산 소요(13억 5천 만원) - 좁은 보행로에 대규모의 조형물을 연속하여 설치하여 보행환경 저해요인으로 작용
사업예산:	13억 5천만원('19)		
주 체:	(설치) 도시디자인과 도시경관팀 (관리) 도시디자인과 도시경관팀		
관련제도:	공공디자인 조례 ('11.제정) 공공조형물 조례 ('15.제정) ※ 경관위원회가 심의 대행		

BookMngNo=202100110372(검색일: 2025.5.10.); 속초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시행 2020.01.01.][조례 제2696호, 2019.11.01., 일부개정]; 속초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시행 2017.12.29][조례

○○시 ○○상가 문주 조형물(2020)⁵⁰⁾



조성방식:	아치형 안내판 설치사업	주요 내용	- 전통시장 활성화의 일환으로 조형물을 설치하였으나 과다한 예산 책정과 부적절한 위치 선정에 대한 문제 제기 - 조형물은 상가 입구가 아닌 중간에 설치하여 통행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조형물이 소방도로 위에 설치되어 소화전 접근 및 화재 대응 등의 시민안전에 위협(소방서 협의 없이 설치) - 이에 따른 옥외광고물법·도로점용 허가기준, 소방법 등의 관계법령 위반사항과 조형물 설치로 인해 소화전 이전 협의 및 도비 투입을 검토하는 등의 세금 낭비문제가 지적
사업예산:	1억 6백만 원		
주 체:	(설치) 지역경제과 (관리) 도시계획과		
관련제도:	공공조형물조례('12. 제정) 공공디자인조례('17. 제정)		

○○시 쌍화차거리 조형물(2020)⁵¹⁾



[①교통섬 내 조형물 설치 현황(지역경제과)]

[②보행가로 내 조형물 설치 현황(도시재생과)]

조성방식:	도시재생사업(경관개선 및 입구조형물 설치사업)	주요 내용	- 원도심 상권 회복을 위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쌍화차 특화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세부사업으로 약탕기 형태의 공공조형물 2점을 조성 - 동일사업에서 유사한 디자인의 공공조형물을 각기 다른 부서에서 각각 설치(지역경제과, 도시재생과) - 교통섬과 협소한 보행가로에 공공조형물이 설치되어 보행자 및 운전자 시야 방해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
사업예산:	①1,350만원('19.8.) ②1억 906만원('19.11.)		
주 체:	(설치) ① 지역경제과 ② 도시재생과 (관리) 도시과		
관련제도:	공공조형물 조례('19.제정)		

- 제2616호, 2017.12.29., 제정]를 토대로 연구진 작성, 사진 출처: (좌) 이순철. (2021). 속초시 7억원짜리 조형물 방치한 채 추억들여 또 조형물 설치 논란. 뉴스핌. 2월 2일 기사. <https://news.nate.com/view/20210202n02309>(검색일: 2025.5.10.); (우) 연구진 촬영(촬영일: 2025.6.28.)
- 48)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시행 2018.09.17.][조례 제939호, 2018.9.17., 일부개정] ; 이상길. (2023). 학성가구거리 대형조형물 예산낭비 논란. 울산제일일보. 11월 27일 기사. <http://www.ujel.com/news/articleView.html?idxno=337605>(검색일: 2025.5.10.)를 토대로 연구진 작성, 사진 출처: 카카오톡 및 로드뷰. <https://kko.kakao.com/TAgeW7Dxpt>(검색일: 2025.5.9.).
- 49) 지방재정 365에서 제공하는 목포시 연도별 세부사업별 세출현황 자료. <https://www.lofin365.go.kr/portal/LF3120202.do>(검색일: 2025.6.28.); 목포시 계약정보시스템. <http://gyeyak.mokpo.go.kr/bid>(검색일: 2025.5.13.); 목포시 공공디자인 조례[시행, 2011.04.18.] [조례 제2671호, 2011.04.18., 일부개정]; 목포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조례[시행, 2021. 6. 7.] [전라남도목포시조례 제3480호, 2021. 6. 7., 일부개정을 토대로 연구진 작성, 사진 출처: 연구진 촬영(촬영일: 2025.3.22.)
- 50) 지방재정 365에서 제공하는 여수시 연도별 세부사업별 세출현황 자료. <https://www.lofin365.go.kr/portal/LF3120202.do>(검색일: 2025.6.28.); 여수시 계약정보시스템. https://gyeyak.yeosu.go.kr/gyeyak/contract_info/open_condition/all?idx=202000114578&construction_name=%EC%95%88%EB%82%B4%ED%8C%90&page=9&mode=view(검색일: 2025.6.28.); 여수시 동상 등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시행, 2018.12.10.][조례 제1361호, 2018.12.10., 일부개정]; 여수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시행 2017.09.29.][조례 제1292호, 2017.09.29., 제정]; 손봉선. (2020). 여수시, 학동선소상가시장 조형물사업 사후관리 부실. 매일일보 11월 15일 기사. <https://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765096>(검색일: 2025.5.9.)를 토대로 연구진 작성, 사진 출처: (좌) 네이버지도. <https://map.naver.com/p/search/%EB%8F%99%EB%84%A4%EB%B0%A9%EB%84%A4%EB%B3%B8%EC%A0%90?c=17.72,0,0,1,adh&p=yNXaoZdq9vF7-Ugb8o0S1A,-114.84,0.51,80,Float>(검색일: 2025.5.9.); (우) 카카오톡. <https://kko.kakao.com/3BoV712MiY>(검색일: 2025.5.9.)
- 51) 지방재정 365에서 제공하는 정읍시 연도별 세부사업별 세출현황 자료. <https://www.lofin365.go.kr/portal/LF3120202.do> (검색일: 2025.6.28.); 정읍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시행 2019.09.27.][조례 제1669호, 2019.09.27., 제정]; 정읍신문 (2020). 탐방객들 고개기둥거리를 생화학거리조형물, 왜? 정읍신문 3월4일 기사. <https://www.j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2267>(검색일: 2025.5.9.)를 토대로 연구진 작성, 사진 출처: 네이버지도. (좌) <https://map.naver.com/p/search/%EC%8C%8D%ED%99%94%EC%B0%A8%EA%B1%B0%EB%A6%AC?c=18.43,0,0,0,adh&p=KiHmLssMprVqB1whFpQ,19.94,-12.9,80,Float>(검색일: 2025.5.9.); (우) <https://map.naver.com/p/search/%EC%8C%8D%ED%99%94%EC%B0%A8%EA%B1%B0%EB%A6%AC?c=18.43,0,0,0,adh&p=abuuas3qkUem8G4uB83Jcg,-28.65,2.77,80,Float> (검색일: 2025.5.9.)

②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는 장소에 설치

[표 3-11]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는 공공조형물 설치사례

○○시 ○구 회전교차로 미디어아트(2023)⁵²⁾



['23년 7월 조성 모습] (촬영일: 23년 8월)



['23년 10월 철거 후 모습] (촬영일: 24년 5월)

조성방식: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벨트 조성사업(3,4권역)	주요 내용	-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벨트 조성사업(총180억원)’의 일환으로 주요 관광거점 5개 권역에 조형물을 설치 - 조형물은 4권역의 주요 관광거점으로 정방형 4면이 LED 디스플레이로 구성되어 설치 직후부터 운전자 및 보행자 시야 방해, 교통 흐름에 지장을 준다는 안전성 논란 - 잇따른 민원 발생으로 시는 경찰·도로교통공단·전문가 자문을 거쳐 철거 결정하고 설치 3개월 만에 철거 이전
사업예산:	총 사업비 41억 3,300만원 (※3·4권역)		
주체:	(설치) 문화관광과 (관리) 문화관광과		
관련제도:	공공조형물 조례(‘17. 제정)		

52) 지방재정 365에서 제공하는 광주광역시 연도별 세부사업별 세출현황 자료. <https://www.lofin365.go.kr/portal/LF3120202.do>(검색일: 2025.6.28.); 광주광역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조례[시행 2021.12.15.] [조례 제 5846호, 2021.12.15., 일부개정]: 강승희. (2023). "미디어아트를 여기에?" 남구 양림동 회전교차로...안전상 괜찮나. 무등일보. 7월24일. <https://www.mdilbo.com/detail/c3QycN/699612> (검색일: 2025.5.15.); 강승희. (2023). '안전성 논란' 남구 양림동 회전교차로 미디어아트, 이전 결정, <https://www.mdilbo.com/detail/c3QycN/704838>(검색일: 2025.5.15.)를 토대로 연구진 작성, 사진 출처: (좌) 네이버지도. <https://map.naver.com/p?c=18.94,0,0,1,adh&p=8LQpltbk1uwMMlurw2c4TA,-16.05,1.14,80,Float>(검색일: 2025.5.15.); (우) <https://map.naver.com/p?c=18.94,0,0,1,adh&p=Mxk7s2QBmnRTBFbCuTIhg,-16.05,1.14,80,Float>(검색일: 2025.5.15.)

○○시 도로 중앙분리대 기차조형물 (2020)⁵³⁾



조성방식:	문화이리로(빛들로) 도시재생사업	주요 내용	- 도시재생사업에서 지역 활력 제고, 관광 자원화, 야간 경관 개선 등을 목적으로 과거 철도역사를 상징하는 기차조형물을 역 앞에 설치 - 조형물은 역 앞 왕복 4차선 도로 중앙분리대에 길이 35.5m, 최고 높이 3.4m 규모로, 주변 상업시설을 차폐하여 상행위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운전자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제기 - 하지만, 국가보조사업으로 설치한 시설에 해당하여 내구연한(10년)을 초과하더라도 철거 시 정부승인이 필요하며, 이로 인해 안전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에도 철거가 어려운 실정
사업예산:	17억 2,900만원		
주 체:	(설치) 도시재생과 (관리) 도시개발과		
관련제도:	공공디자인 조례('17.제정) ※ 공공조형물 조례 미제정		

53) 지방재정 365에서 제공하는 익산시 연도별 세부사업별 세출현황 자료. <https://www.lofin365.go.kr/portal/LF3120202.do>(검색일: 2025.6.28.); 송승욱. (2020). 익산역 앞 '볼품'없는 기차 조형물 '빈축'. 전북일보. 12월 17일 기사. <https://www.jjan.kr/article/20201217722680>(검색일: 2025.5.15.); 이정술. (2024). 익산역 앞 '기차조형물' 설치 시민들 '분노 폭발'. 세계타임즈. 4월 3일 기사. <https://m.thesegeye.com/news/view/1065556101243274>(검색일: 2025.5.15.)를 토대로 연구진 작성, 사진출처: 네이버지도. (상좌) <https://map.naver.com/p/search/%EC%9D%B5%EC%82%B0%EC%97%AD?c=18.62,0,0,1,adh&p=MMUDfTIOyDtqeatewVW-Kg,130.45,-3.98,80,Float>; (상우) <https://map.naver.com/p/search/%EC%9D%B5%EC%82%B0%EC%97%AD?c=18.62,0,0,1,adh&p=O4tYhtEtYJpz-f9IOBWNyA,-49.75,-10.34,50,Float>; (하) <https://map.naver.com/p/search/%EC%9D%B5%EC%82%B0%EC%97%AD?c=18.62,0,0,1,adh&p=kUfYLU-n4H8HGyWCnHV9FQ,-162.89,-0.2,80,Float>(검색일: 2025.5.15.)

■ 조형물 설치로 공공공간의 이용과 안전을 저해

- 다수의 공공조형물이 지역 홍보 및 관광이미지 개선을 위해 교통섬, 회전교차로, 보행 공간 등 교통시설 내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여 조형물을 설치하고 있으며, 일부는 소방 도로에 설치하여 심각한 안전문제 우려
 - 실제 사례에서 교통섬 및 좁은 보행로에 과도한 크기의 공공조형물 설치는 보행자 시각 차폐 및 보행환경 저해 문제를 유발
 - 회전교차로에 과도한 크기, 빛이 반사되는 재질 사용, LED 미디어아트 등의 공공조형물 설치의 운전자 시야 방해로 인한 안전문제 발생이 우려되며, 이러한 이유로 설치한지 3개월 만에 철거한 사례도 확인

■ 교통안전에 대한 미흡한 설치 및 심의기준

- (설치위치 및 안전 관련 기준 미흡) 대다수 자치단체가 관련조례에서 공공조형물 설치 위치와 안전 측면에서의 제작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성이 부족하며, 자치단체별로 상이한 기준 적용으로 일관된 안전관리가 어려움

A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설치위치 및 제작 기준)

① 공공조형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절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공시설 및 그 주변 환경과의 조화 여부

2. 장소의 적합성·접근성 및 조망권 확보 여부

3. 주변 장애물 현황

② 공공조형물의 제작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조형물의 작품성, 조형성 및 독창성

2. 재료의 내구성·안전성

3. 동상의 경우 설치대상의 출생지·묘소·활동지역 등과의 긴밀성

[표 3-12] A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제작 기준

출처: 속초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시행 2023.01.01.] [조례 제2977호, 2022.12.23., 일부개정]

- A시 ○○○교차로 관문 상징조형물 사례의 경우, 조성 계획상 보행교통섬 중앙에 조형물이 위치하여 보행자의 안전문제가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통과하여 당초계획대로 설치한 것으로 확인

- 해당 조례에서 관련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장소의 적합성 및 접근성, 조망권 확보’ 등 내용이 다소 불명확하고, 조형물 설치에 따른 안전문제 발생이 아닌 설치장소의 적합성을 검토하는 것에 불과한 문제가 내포
- (설치 불가능 입지 등 구체적 기준 미흡) 특히 교통섬, 중앙분리대 등의 교통안전시설 내 공공조형물 설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기준 및 가이드라인, 전문가 및 관련부서 심의 절차 등이 불명확하여 유사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
 - ○○시 ○○구 가구거리 조형물 사례는 보행교통섬에 직육면체의 미디어조형물이 설치됨에도 불구하고 조성과정에서 교통 안전성 협의 과정이 누락되었으며, ○○시 ○○구 회전교차로 미디어아트 사례는 설치 이후 운전자 시야 방해에 따른 안전문제 제기로 설치 3개월여 만에 철거가 결정된 것으로 확인
- 국토교통부가 2022년 배포한 ‘회전교차로 설계지침’에서 회전교차로, 중앙교통섬 내 조경시설을 가급적 지양하도록 규정⁵⁴⁾하였으나 구체성이 미흡
- 공공조형물 설치로 인해안전이 우려되는 교통섬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의 규정 신설 검토 필요
 - 교통섬·회전교차로 등 교통시설 내 조형물 설치 시, 크기, 재질, 조명 사용 등에 대한 설치 기준과 함께, 보행로 점유 최소화 및 시각적 차폐율에 대한 제한 기준 마련 필요
 - 이밖에도 누구나 이용하는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만큼 공공조형물 설치 시 교통안전, 보행안전, 소방안전 관련 부서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 검토 필요
- (기존 설치 공공조형물 안전성 검토 필요) 또한, 기존 문제 조형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소방도로 및 보행 장애 조형물 우선 정비하고 교통안전 저해 조형물 재배치 또는 규모 축소를 시행하는 등 단계적 개선 필요

54) 소형·초소형 회전교차로 등은 중앙교통섬 내 시설물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 설치하더라도 중앙교통섬 내 조경시설은 ‘운전자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거나 안전을 위해 교차로 시거를 방해하는 조경 시설은 지양하며, 조명시설을 설치할 경우 방향은 바깥쪽에서 안쪽을 향하도록 하는 것을 권고한다’고 명시(출처: 국토교통부, (2022.8). 회전교차로 설계지침, pp.60-64.)

6) 공공조형물 조성 이후 유지·관리 미흡

[표 3-13] 유지관리가 미흡한 공공조형물 사례

○○시 ○○구 2002 아시안게임 기념 조형물⁵⁵⁾



조성방식:	부산아시안게임 기념조형물 설치사업(※추정)	주요 내용	- '02년 아시안게임 개최와 관련하여 해당 자치단체 전역에 약 60여 개의 기념 조형물을 설치
사업예산:	개당 1억원 내외		- 개별 조형물당 수천만 원에서 1억 원 내외의 예산이 투입
주 체:	(설치) (市) 광역지자체 (관리) (區) 문화예술과		- 조성 당시 설치는 광역지자체가 하였으나 조성 이후 관리가 기초지자체로 이관되었고, 관리 부실로 인해 오염, 녹 발생, 조명 고장 등 도시 경관을 저해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
관련제도:	(市) 공공조형물 조례('11.제정) (區) 공공조형물 조례('18.제정)		- 철거 기준 및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방치되어오다 25년 4월 '공공조형물 정비사업'을 통해 철거 진행 중

○○시 ○구 시계탑 모형기차 조형물(2015)⁵⁶⁾



조성방식:	시계탑 조형물 조성사업	주요 내용	- 과거 구도심 상권과 역사성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시계탑과 원형 레일을 따라 움직이는 기차모형의 상징조형물을 설치
사업예산:	9억원		- 하지만 설치 1년 만에 고장이 발생하여 3년간 약 6,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여섯 차례 수리를 진행했음에도 지속적
주 체:	(설치) 경제일자리과 (관리) 건축과		

공공조형물의 체계적인 조성·관리를 위한 현안과 정책과제

관련제도:	공공디자인조례('17. 제정) ※ 공공디자인 검토 심의대 상에 공공조형물 포함 ※ 공공조형물 조례 미제정	인 고장으로 '20년부터는 사실상 방치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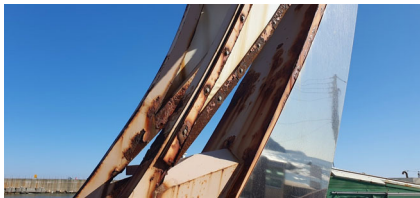
○○시 ○○항 범선조형물(2013)⁵⁷⁾



['14년 설치 당시의 모습(촬영일: 2019.5.)]



['24년 파손된 현재의 모습(촬영일: 2024.9.)]



[조형물 부식 및 파손 현황]

조성방식: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정)	주요 내용	- '10년대 초반 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13년 항구를 상징하는 조형물 설치 - 하지만 설치장소의 특성상 해양 염분 및 습기로 인해 조형물의 내구성 문제가 발생하고, 특히 미비한 유지보수로 문제가 더욱 심화 - 파손된 채 방치된 조형물로 인한 경관 저해 문제로 철거 요청, 선박 정박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민원이 지속제기
사업예산:	※확인 불가		
주 체:	(설치) ※확인 불가 (관리) 도시과		
관련제도:	공공조형물 조례('20.제정) ※ 공공디자인위원회가 심의 대행		

- 55) 부산광역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시행 2011.7.13.][조례 제 4640호, 2011.7.13., 제정];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시행 2018.12.31.][조례 제1215호, 2018.12.31., 제정]; 류제민. (2025). 글로벌 디자인 도시... 공공 조형물 관리 부실. 부산MBC 뉴스데스크. 4월 10일 뉴스. https://busanmbc.co.kr/01_new/new01_view.asp?idx=273702#none(검색일: 2025.5.15.)를 토대로 연구진 작성, 사진 출처: 류제민. (2025). 글로벌 디자인 도시... 공공 조형물 관리 부실. 부산MBC 뉴스데스크. 4월 10일 뉴스. https://busanmbc.co.kr/01_new/new01_view.asp?idx=273702#none(검색일: 2025.5.15.)
- 56)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시행 2017.6.29.][조례 제882호, 2017.6.29., 제정]; 김윤호. (2023).고장 반복되자 방치...울산 9역 시계탑 모형기차 결국 고물 신세 [세금낭비 STOP]. (주)중앙일보. 8월 16일 기사.

■ 파손, 노후화된 공공조형물로 인한 안전 문제 및 경관 저해 우려

- **(형식적인 유지관리)** 대다수 자치단체가 설치 이후 형식적인 공공조형물 유지관리에 그치며, 이로 인해 파손·훼손된 조형물이 흉물로 남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역 슬럼화까지 우려되는 상황
- **(미흡한 유지관리로 기능 상실)** 공공조형물의 조명·안내 기능 또는 가동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채 방치되거나, 비엔날레, 올림픽 등의 기념비적 공공조형물이 행사기간 이후 미이용되거나 방치되는 문제가 종종 발생
 - ○○시 ○구는 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계탑 모형기차 조형물을 설치하였으나 1여년 만에 고장이 반복되어 20년부터는 파손된 채 방치되는 것으로 확인
 - ○○시 아시아게임 기념조형물은 안내·조명 기능 상실, ○○시 ○○항 범선조형물은 해양 염분과 습기로 인한 내구성 저하 및 항구 공간 활용 저해로 철거 민원이 지속하여 제기되는 것으로 확인

■ 유지관리 점검부서와 실질적인 관리부서 이원화

- **(관리 주체 불명확)** 공공조형물은 현행 조례에 따라 유지관리 점검부서와 실질적 관리부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85008>(검색일: 2025.5.15.)를 토대로 연구진 작성, 사진출처: 울산광역시 중구 보도자료. (2015.11.2.) 원도심 시계탑의 모형기차 재가동.https://www.junggu.ulsan.kr/board/view.ulsan?boardId=BBS_0000090&menuCd=DOM_000000102003002000&startPage=1&ataSid=590525(검색일: 2025.5.15.)

- 57) 강릉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시행 2020.06.10.][조례 제1394호, 2020.06.10., 제정]; 진재중. (2024). 녹슬고 부서진 조형물... 안인항에 이게 필요한가요?. 오마이뉴스. 11월 1일 기사.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74572(검색일: 2025.5.15.)를 토대로 연구진 작성, 사진 출처: 네이버 지도. (상좌) https://map.naver.com/p/search/%EC%95%88%EC%9D%B8%ED%95%AD/place/15701885?c=15.00,0,0,1,adh&placePath=/home?entry=bmp&from=map&fromPanelNum=2×tamp=202508111159&locale=ko&svcName=map_pcv5&searchText=%EC%95%88%EC%9D%B8%ED%95%AD&p=IAWDu9rnbhLXagGxu_84qg,95.71,6.84,80,Float(검색일: 2025.5.15.), (상우) https://map.naver.com/p/search/%EC%95%88%EC%9D%B8%ED%95%AD/place/15701885?c=15.00,0,0,1,adh&placePath=/home?entry=bmp&from=map&fromPanelNum=2×tamp=202508111159&locale=ko&svcName=map_pcv5&searchText=%EC%95%88%EC%9D%B8%ED%95%AD&p=7bVn7rwuUg4Dr-lhNtkH8A,95.71,6.84,80,Float(검색일: 2025.5.15.), (하) 진재중. (2024). 녹슬고 부서진 조형물... 안인항에 이게 필요한가요?. 오마이뉴스. 11월 1일 기사.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74572(검색일: 2025.5.15.)

서가 이원화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유지관리 및 예산 전담주체가 불명확하여 문제 발생

- 실제 사례에서도 공공조형물의 조성은 광역 또는 특정 부서에서 담당하였으나 관리 책임은 기초자치단체나 타 부서로 이관되면서 유지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부실관리와 민원 초래 현상을 확인



[그림 3-6] 유지관리부서 이원화 현상

출처 : 연구진 작성

■ 문제 발생 시 대응하는 방식의 공공조형물 유지관리체계

- (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사전 대비 미흡) 공공조형물의 유지관리·철거는 사전에 계획되는 것이 아닌 문제 발생 시 대응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이로 인해 유지보수 예산에 대한 대비 없이 조성 후 방치하거나 계속된 방치로 철거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

[참고] ○○시청 잔디마당 조형물 '기원(PRAYER)'

- 제1회 디자인비엔날레를 기념하기 위해 시가 삼성전자로부터 8억원을 후원받아 '05년 10월 시청 앞 광장에 설치
- 이탈리아 건축가인 고 알레산드로 멘디니가 설계한 조형물로, 7개의 모빌식 조형물로 높이 16.5m, 직경 18m 규모로 구성되어, 사계절마다 외부 디자인을 변경
- 외부디자인 변경 비용만 1년에 약 3천만원 소요되어 철거 이전 검토 중



출처: 주현정.(2022). '1년 옷 값만 3천만원' 광주시청 앞 조형물 18년째 애물. 무등일보. 12월 12일 기사. <https://www.mdilbo.com/detail/0klA7d/684514>(검색일 : 2025.5.16.)를 토대로 연구진 작성, 사진출처: 광주 광역시청 홈페이지. <https://www.gwangju.go.kr/contentsView.do?pagelId=www1050>(검색일: 2025.5.16.)

■ 철거 규정 미비로 인한 파손·노후 공공조형물의 장기 방치

- (철거 규정 미비) 공공 공공조형물은 현행 조례상 ‘철거할 수 있다’라고만 명시되었을 뿐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마련되지 않아 사실상 제도적 공백 상태
- (이벤트성 공공조형물 철거 규정 부재) 특히 각종 올림픽 등 단기 국가적 행사 기념 조형물에 대한 철거 시한이 정해지지 않아 행사 종료 이후 유지관리 철거 문제가 반복하여 발생

[참고] 올림픽 등 행사 기념물 방치 사례 58)



2018 평창올림픽 상징조형물



2018 평창올림픽 오륜마크



88서울올림픽 충주 호돌이 조형물

58) 사진 출처: (좌) 연구진 촬영(촬영일: 2024.1.6.); (중) 구분호. (2024). '노후 방치' 평창올림픽 조형물, 2024강원 관객들 "안타깝다". 노컷뉴스. 1월 22일 기사. <https://www.nocutnews.co.kr/news/6082960>(검색일: 2025.5.16.); (우) 윤원진. (2019). 충주 호돌이 조형물 흉물 방치. 충청타임즈. 4월 2일 기사. https://www.cctimes.kr/news/article_View.html?idxno=565589(검색일: 2025.5.16.); 김익상. (2019). 충주시 88서울올림픽 기념 조형물 방치...보존·활용방안 '시급', 중부광역신문. 4월 3일 기사. <https://www.jbk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0457>(검색일: 2025.5.16.)

3. 공공조형물 조성·관리 제도상의 주요 이슈 도출



[그림 3-7] 공공조형물 조성·관리제도의 주요 이슈 도출과정

출처: 연구진 작성

1) 공공조형물 조성의 목적과 방향 불분명

■ 공공조형물 조성 자체를 목적으로 제도 운영

- 현행 제도에서 공공조형물을 건립하는 근본적인 목적과 방향이 분명하게 제시되지 않은채 홍보, 기념, 안내, 표식 등의 조형물 조성 자체를 목적으로 제도 운영
- 공공조형물 표준조례안에서도 ‘공공조형물이 무분별하게 건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기술하며, 공공조형물 조성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 않음
- 공공조형물 조성의 목적과 방향 부재는 기획·계획단계에서 공공조형물을 왜 조성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과정을 거치지 않는 결과로 나타나며, 계획안을 심의하는 단계에서도 조형물 자체에만 초점을 둔 설치·제작기준을 토대로 검토하는 결과로 연결
 - 각 자치단체별 공공조형물조례의 ‘건립 및 설치 기준’에서도 대다수가 조형성, 독창성, 내구성 등 조형물 자체의 물성 중심의 평가기준으로 구성
 - 조형물 설치로 다중이 공간을 이용하는데 미치는 안전상의 영향 또는 공간환경과 경관의 품격에 미치는 영향, 일반 대중들이 조형물을 경험하고 향유하기 위한 입지적 여건 등 조형물과 주변 환경과의 관계성을 바탕으로 검토되지 않는 한계

■ 제도 전반에서 공공조형물의 주요 지향점인 ‘공공적 가치’ 고려 미흡

- 공공조형물의 법적 정의에서도 주요 지향점인 공공적 가치가 고려되고 있지 않음
 - 현행 표준조례에서 공공조형물의 정의는 ‘공유재산인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장소와 세부 유형만을 나열

공공조형물 표준조례안 제2조. “공공조형물”이라 함은 공유재산인 공공시설 안에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 등 조형시설물과 벽화분수대·폭포 등 환경시설물 그리고 상징탑·기념비·상징물 등 상징조형물 등을 말한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2014.9).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 [의안번호 제2014-305호]

- 대중의 예술 참여와 향유라는 공익성으로부터 출발한 공공미술(public art) 개념의 등장과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공간에 설치하는 장소가 지닌 공공의 가치가 조형물을 계획하고 설치하는데 전반적으로 고려되지 않는 문제로 나타남
- 실제 사례에서도 공공조형물의 공공 영역성 및 공중 접근성, 공익성, 대중성 등의 공공적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현상을 확인
 - 1) 자치단체의 인지도 향상 및 특산물 홍보 등 조형물 설치 목적에서 공익성과 대중성이 결여된 사례, 2) 주차장 또는 접근이 어려운 통과도로변의 가장자리 등 공중 접근성이 결여된 위치에 설치한 사례, 3) 협소한 보행로, 보행교통섬, 광장 한복판, 회전로타리 등에 공공조형물을 설치하여 보행자 및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공간 활용을 저해하는 등 공간의 이용성과 공공성을 저하하는 사례를 확인

2) 공공조형물 조성·관리 절차별로 주체 분리

■ 특정 사업의 일부분으로 공공조형물을 건립함에 따라 여러 부서가 관여

- (특정 사업에 포함하여 진행) 공공조형물은 단독으로 조성하는 사업도 있으나 대다수가 공원 및 광장조성사업, 특화 가로정비사업 등에 포함되어 진행
- 이로 인해 공공이 발주하는 공공조형물사업은 1) 해당 사업을 실제 추진하고 건립 이후 사후 사업대상지를 관리하는 역할의 건립부서, 2) 공공조형물 조례를 맡아 심의신청 및 결과 통보, 유지관리 점검을 실시하는 주관부서, 3)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총괄부서로 주체가 각각 분리
- (절차별로 주체 분리) 실제 사례에서 자치단체별 여건에 따라 한 개 공공조형물을 조성 및 관리하는데 있어 적게는 2개(유형②), 많게는 4개(유형③) 부서로 분리되는 것을 확인

[표 3-14] 공공조형물의 조성·관리단계별 주체 현황

주체		건립부서	주관부서	총괄부서	주관부서	건립부서
역할		실제 건립	심의 신청, 결과 통보	심의위원회 개최	유지관리 점검	유지관리 이행
유형①	주로 ⇨ 단독건립사업	A부서	A부서	A부서	A부서	A부서
유형②	심의위원회 ⇨ 조례에서 운영	A부서	B부서	B부서	B부서	A부서
유형③	심의위원회 ⇨ 타조례로 대행	A부서	B부서	C부서	B부서	D부서

⇨ 설치 이후 타부서로 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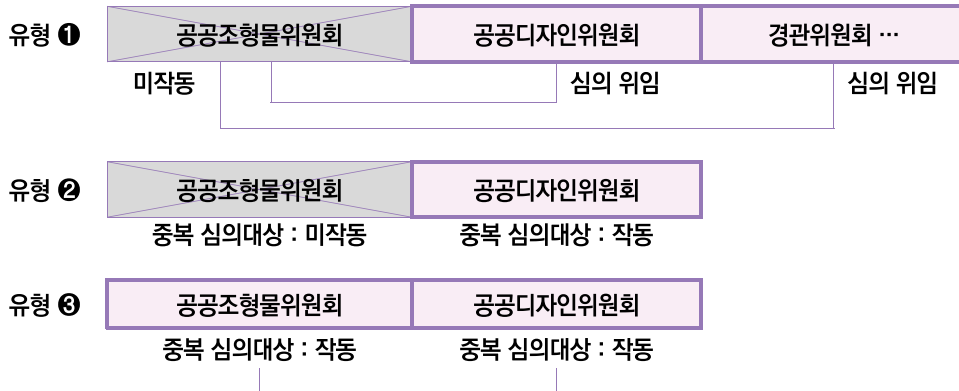
출처: 각 자치단체별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검색일: 2025.6.28.))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3) 유관조례에 따른 중복 관리로 공공조형물 통합관리의 한계

■ 유관조례에서 공공조형물 조성·관리에 관한 심의 중복 운영

- (유명무실한 공공조형물 조례) 대다수 기초자치단체가 공공조형물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공공디자인, 경관 등의 유관조례에서 공공조형물의 조성·관리를 심의하는 것으로 확인
- 이와 관련하여 일부 자치단체는 공공조형물조례에서 위원회 심의를 ‘공공디자인위원회 또는 경관위원회’ 등의 유관위원회가 대행하도록 규정하여 실질적으로는 공공조형물조례가 작동하지 않는 문제 발생(유형①)
- 또한, 일부 자치단체는 공공조형물조례뿐만 아니라 공공디자인진흥조례에서 심의 및 자문(협의) 대상인 공공시설물에 ‘공공조형물’을 포함하여 뒤늦게 제정한 공공조형물조례는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유형②)
- 이 중 몇몇 자치단체는 공공조형물조례와 공공디자인진흥조례에 따른 각각의 위원회가 공공조형물 조성·관리를 심의함에 따라 통합관리에 한계가 발생(유형③)
- 이러한 문제로 인해 울산, 대전 등은 공공조형물조례를 폐지하고, 공공조형물 조성·관리규정을 공공디자인진흥조례로 통합하여 운영하기도 함

[표 3-15] 유관조례에 따른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운영 유형



출처: 연구진 작성

제도 이원화

■ 심의위원회 및 관리부서의 이원화로 통합관리의 한계

- (주체 이원화로 인한 통합관리의 한계) 각 조례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중복 또는 분리 운영하는 문제는 공공조형물 조성·관리의 주요 주체인 총괄부서와 주관부서의 이원화를 유발하고, 공공조형물을 통합 조성·관리하는데 한계와 걸림돌로 작용
- 공공조형물의 통합관리 및 효율적 제도 운용을 위해서는 경관조례, 공공디자인진흥조례 등의 유관조례와의 관계 정립 필요

4) 조례를 적용하지 않고 임의로 건립

■ 공공조형물의 모호한 정의로 인한 관리대상에서 누락

- 현행 관련 법규에서 공공조형물의 개념은 ‘설치하는 공간’과 ‘세부 유형’을 기준으로 정의
- (모호한 유형 분류) 설치하는 공간은 공공시설, 공원, 교육시설, 건축물 대지 내 조경공간 등 명확한 기준을 명시하는 반면에 유형은 상징성·환경성·조형성 등 다소 모호하고 추상적인 기준을 중심으로 세부 유형의 예시를 나열하는 방식으로 기술

[표 3-16] 현행 법규에서 공공조형물에 대한 정의 및 관련 기준

구분	유형	세부 내용	관련법
공간	공공시설	공원, 도로, 철도, 광장, 녹지, 공공공지, 하천, 유수지	공공조형물조례
	도시공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등	공원녹지법
주체	공공기관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공공디자인조례
	지자체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조례
내용	상징성	상징적·기념적 의미를 지닌 조형물(상징조형물, 상징물, 기념물, 준공기념탑, 석탑 등)	공공조형물조례, 공공디자인조례
	환경성	주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형물(환경시설물, 조경시설, 환경조형물)	공공조형물조례, 공원녹지법
	조형성	작가의 작품 등 조형적·예술적 아름다움이 있는 조형물(벽화, 환경조각, 순수창작조형물 등)	공공조형물조례, 공공디자인조례
형태 기능	기능성 환경조형물	본래의 시설물 기능(놀이기능, 식별기능, 공간분리 기능)을 충족하면서, 조형적 가치와 의미가 발휘되도록 설계한 조형물(조형놀이시설, 장식벽, 공원 문주, 게이트, 관문 등)	건축법
설치 기간	가설조형물	1년 이내 임시로 설치하는 조형물	공원녹지법

출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5. 17.] [법률 제20309호, 2024. 2. 13., 타법개정]; 곡성군 공공디자인진흥 조례[시행 2018.08.13.] [조례 제2205호, 2018.08.13., 일부개정] ; 목포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시행 2021.06.07.] [조례 제3480호, (2021.06.07., 일부개정); 건축법[시행 2024. 6. 27.] [법률 제20424호, 2024. 3. 26., 일부개정]를 토대로 연구진 작성

- (관리대상에서 누락 또는 제외) 공공조형물의 유형에 대한 모호한 정의는 ❶ 개인의 가치 판단과 해석에 따라 공공조형물의 범주가 결정되어 관리대상에서 누락될 여지가 있으며, ❷ 특히 도시, 경관, 디자인 분야와는 무관한 건립부서 담당자가 공공조형물의 여부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발생
- ❸ 절차 및 기준이 비교적 간소한 ‘시설물’, ‘점유물’로 분류하여 담당부서 협의 또는 자문을 거쳐 공공조형물을 조성·관리하는 방식으로 악용할 소지가 존재
- 또한, ❹ 최근 등장하는 새로운 유형의 체험형 공공조형물 등은 현행 법규상 공공조형물의 세부 유형에 해당하지 않아 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
- 이와 관련하여 실제 사례에서도 공공조형물이 아닌 ‘옥외광고물, 가로등·경관조명·벤치 등의 가로시설물, 도로점유물’ 등으로 분류하여 조성한 것으로 확인

■ 조례에 따른 심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더라도 제재할 권한 부재

- **(임의로 건립)** 표준조례안 및 대다수 자치단체 공공조형물 조례에서는 ‘공공조형물을 건립 및 철거 시 위원회 심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조형물을 건립하는 부서에서 심의를 신청하지 않고 임의로 건립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 이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부서가 타부서에서 추진하는 공공조형물 조성사업을 사전에 인지하기 어려우며,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건립하더라도 제재할 권한과 수단 부재
- **(공공조형물위원회 심의 기피)** 더욱이 현행 공공조형물조례에서는 조형물의 규모, 유형, 사업비와 무관하게 모든 대상에 대한 심의를 의무화하여, 타 법규에 따른 시설물·점유물로 분류하여 사전 협의, 자문, 신고 등의 간소한 방식으로 조성하는 경향 증가
 - 사업비 규모를 기준으로 심의대상과 사전 협의(자문) 대상을 구분하는 공공디자인진흥조례를 적용해 공공조형물을 건립한 사례를 쉽게 볼 수 있으며, 특히 사업비를 낮추기 위해 한 개의 공공조형물 조성사업을 2~3개의 사업으로 분리 발주하여 조형물을 건립한 사례도 일부 확인

[표 3-17] 건립방식에 따른 공공조형물 심의 절차

적용 법규	건립방식	이행 절차	
공공조형물조례	공공조형물	건립 시	심의
		철거 시	
공공디자인진흥조례	공공조형물	건립 시 (일정규모 사업비 이상)	심의
		(일정규모 사업비 미만)	사전 협의(자문)
도로법	도로점유물	건립 시	사전 신고·허가

가급적
심의 기피

간소한
절차로 설치

출처: 각 자치단체별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및 공공디자인진흥조례(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검색일: 2025.5.28.)); 도로법[시행 2025. 2. 14.][법률 제20294호, 2024. 2. 13., 일부개정]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5) 장소(面) 단위로 공공조형물 계획·조성·관리 체계 미비

■ 개별 공공조형물 위주의 계획 수립 및 심의 기준 운영

- (개별 공공조형물 조성사업 단위로 운영) 공공조형물은 도시 공간 및 주변 경관과의 연속선에서 계획하고 면(面) 단위로 관리하는 방식이 아닌, 점(點) 단위의 개별 공공조형물 조성사업별로 조성·관리
- 표준조례안의 공공조형물 건립 계획서는 ‘공공조형물의 규모, 형태, 재료’ 등 조형물에 대한 정보 항목 중심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심의 시 활용하는 건립 및 설치 기준에서도 ‘조형성, 상징성, 작품성, 내구성’ 등 조형물 자체의 물성과 완결성 위주로만 평가
- 이로 인해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는 입지적 여건과 특성은 고려하지 않은 채 조형물만을 강조한 디자인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장소적 맥락 가운데 공공조형물을 계획·평가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보완할 필요

■ 공간 단위 공공조형물의 조성전략 및 계획 부재

- (공공조형물의 조성전략 부재) 공공조형물은 도시 차원의 조성전략 또는 공간 단위 마스터플랜을 바탕으로 하나의 통일된 방향과 원칙을 갖고 계획·관리되지 않음
- 이러한 여건에서 공공조형물은 장소와의 유기적인 연계성을 갖고 계획하기 어렵고 조형물 조성을 통한 공간환경의 질을 높이고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한계가 발생
- 특히 여러 부서가 각각의 사업을 개별적으로 추진하면서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화

■ 공간 정보기반의 공공조형물 조성·관리체계 부재

- (사업별 행정서류로 관리) 공공조형물은 건립계획 단계부터 조성 이후 관리단계까지 조형물을 설치하는 위치 정보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관리체계가 아닌 행정 문서상의 개별 추진사업 단위별로 조성·관리
- 공간 정보데이터와 연계하지 않은 조성·관리방식은 인접한 장소에 각각의 개별사업으

로 공공조형물이 조성되어도 사전에 인지하거나 통합 관리하기 어렵고,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설치와 예산 낭비를 막는 데 한계로 작용

-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간정보 기반으로 공공조형물을 계획·관리할 수 있는 체계 구축 필요

6) 형식적인 디자인 검토에 불과한 심의위원회 운영

■ 공공조형물 건립 결정 및 계획안 수립 이후 심의위원회 진행

- (적극적인 의견 제시 및 실질적 반영 어려움) 공공조형물위원회 심의는 관련 사업 예산 편성이 완료되고 공모사업 또는 용역을 통해 계획안이 수립된 이후 진행되며, 필요시 건립부서에서 사전타당성 조사까지 완료된 이후 진행
- 이미 사업이 진행된 여건에서 개최하는 심의위원회는 계획안에 대한 디자인 검토의견을 제시하는 등 형식적인 수준에 머무르며, 공공조형물 건립의 필요성과 적절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거나 실질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존재

■ 관 주도로 공공조형물 건립 및 디자인 방향 결정

- (사전에 디자인 방향 결정) 다수의 사례에서 자치단체가 공공조형물 건립계획 수립을 위한 공모 또는 관련 용역을 진행하는 경우, 과업지시서에서 건립 위치 및 장소 외에도 공공조형물의 주제, 디자인 기본방향 등이 사전에 결정하여 과업의 내용을 제시
- (결정 과정에 전문가 미참여) 특히 공공조형물의 디자인 방향과 주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거나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고 관 주도로 결정
 - 여러 사례에서 의사결정권자 및 행정담당자 의견에 의해 공공조형물의 디자인 방향과 주제, 건립 위치가 계획 수립 이전에 결정되는 것을 확인

7) 유지관리 및 철거 체계 미비

■ 형식적인 정기점검에 불과

- **(관리대장 확인에 불과한 정기점검)** 공공조형물의 유지관리 점검은 조례 소관부서이지만 실질적인 역할은 공공조형물을 건립한 부서에서 담당
- 대다수 자치단체는 조례 소관부서가 협조 공문을 통해 건립 부서로부터 공공조형물 관리대장을 공유받는 방식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이마저도 별도의 관리시스템이 아닌 수기 문서로 대장을 관리하여 효율성과 지속성의 한계가 존재
- **(실질적인 관리부서의 전문성 부족)** 공공조형물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부서 중 많은 수가 보건위생과, 관광과, 친환경농업과 등으로 도시공간과 조형물에 대한 이해도가 다소 부족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할 전문인력이 없어 실제 유지관리에 한계 발생
- **(유지보수 이력관리 정보 미흡)** 표준조례안에 따른 공공조형물 관리대장은 건립 당시 조형물에 대한 간략한 정보로만 구성되어 있고, 유지보수 이력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정보의 구체성이 부족한 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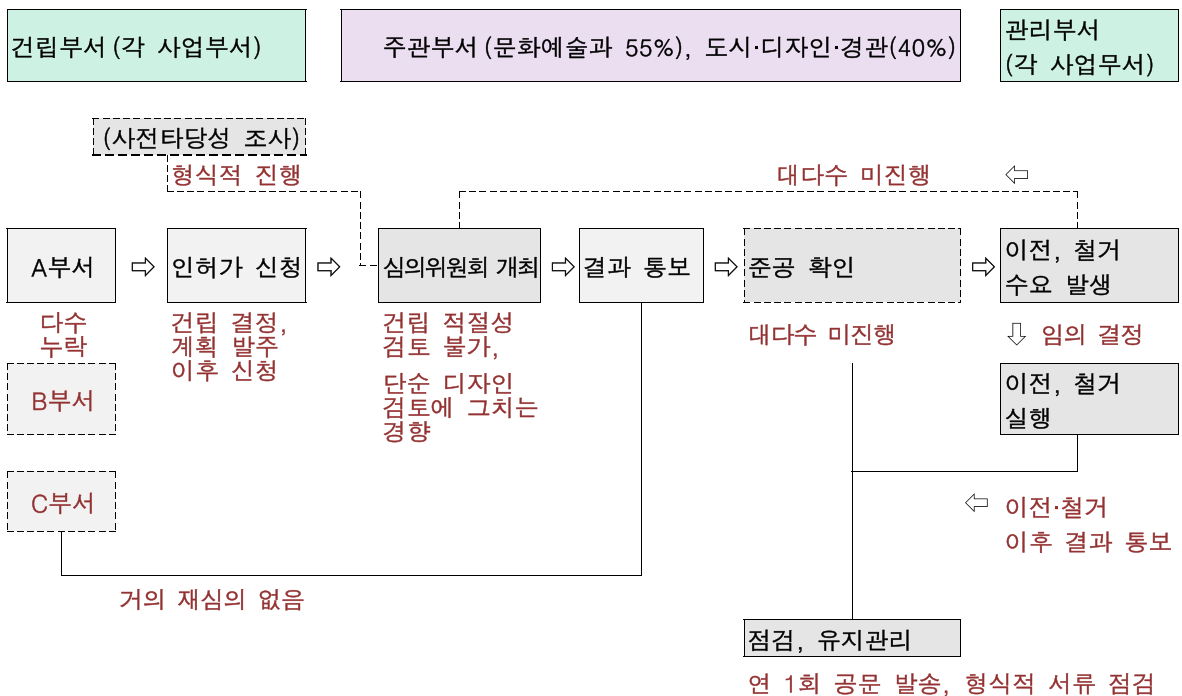
■ 공공조형물의 유지관리 주체 및 계획 불명확

- **(문제 시 대응방식으로 유지관리 및 철거)** 공공조형물 유지관리 및 철거는 파손, 노후화 등의 문제 발생 시 대응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가 부재하여 효과적으로 진행하는데 어려움 발생
 - 실제 사례에서 ① 설치 이후 유지관리 부서가 불분명하거나 ② 설치 이후 기초자치단체 또는 타 부서로 이관되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③ 유지관리 예산 부족 및 ④ 올림픽 등 특정 행사를 위해 설치한 기념조형물이 행사 종료 이후에는 사실상 방치되거나 ⑤ 재료 특성 등의 세부적인 관리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유지보수로 작품성이 훼손되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
- 특히 조례 제정 이전에 설치한 조형물의 경우 이전과 철거에 관한 기준이 전혀 없어 ①

과거 90년대 건립한 공공조형물이 자치단체 소유 광장 또는 공원의 자투리 공간에 이전되어 각종 시설물과 혼재되어 있고, ② 도시재생사업 등에 의해 조형물이 건립된 이후 사업종료로 인해 관리 주체 불분명 및 예산 부족으로 방치되다 주차장 신설사업 등에 의해 일괄 철거하는 등의 문제를 실제 사례를 통해 확인

- (사전에 관리계획 수립 필요) 공공조형물의 작품성을 유지하고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공공조형물을 계획하는 단계부터 생애주기를 고려한 관리계획 수립 필요
 - 사전에 유지관리·철거 책임부서 지정 및 예산 계획 의무화, 개별 조형물마다 특성을 고려한 유지관리 참고지침 작성, 철거 연한 등의 유지관리·철거 주기 및 방식 등을 계획
 - 이와 관련하여 공공조형물의 유지관리체계 구축 및 법제 정비 필요

[표 3-18] 공공조형물 조성·관리 절차에서 문제점 및 한계



출처: 각 자치단체별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검색일: 2025.5.28.))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Ⅳ 공공조형물의 체계적인 조성·관리를 위한 주요 과제

1. 공공조형물의 체계적인 조성·관리를 위한 향후 과제

1) 공공조형물의 명확한 개념 및 제도적 범주 정립

■ 공공조형물 조성의 지향점 확립 및 개념 재정의

- 물리적 형상에 치우쳐 있는 현행 공공조형물의 정의를 보완하여 공공조형물을 조성하는 목적과 가치를 정립하고 개념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공공조형물에 대한 용어 재검토 요구
- 현행 공공조형물의 정의가 물리적 형상에 치우쳐 있는 한계를 보완하고 조성 목적과 공공적 가치를 명확히 정립하여 개념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 시 공공조형물 용어에 대한 재검토 요구
- 이와 관련하여 ‘공공미술(public art)’에서 출발한 공공조형물의 개념에서 설치 장소가 지닌 ‘공공의 영역성’ 및 ‘공중의 접근성’, 대중의 예술 향유라는 공공조형물의 조성 목적이 지닌 ‘공익성’ 및 ‘대중성’ 등 공공조형물이 추구하는 핵심 가치인 ‘공공적 가치’를 명확화 필요
- 공공조형물이 단순한 장식적·조형적 기능을 넘어 사회적 가치 창출과 지역사회 기여 등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확립하고, 이를 반영하여 관련 용어와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

■ 공공조형물의 제도적 관리 범주 및 기준 확립

- 현행 법규상 공공조형물의 모호한 정의로 인해 해석에 따라 시설물·점유물로 분류하여 관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간소한 절차로 설치·폐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 (명확한 범주 확립 및 유사개념과의 관계 정립) ‘공공성’과 ‘작품성’ 관점에서 공공조형물, 공공미술, 공공미술품, 공공디자인 등 유사개념 간의 차이와 관계를 검토하고, 각 제도에 따른 관리대상과 범주를 구체화하고 명확화할 필요

■ 공공조형물 심의·사전신고·협의 대상 기준의 구체화 및 명확화

- (심의 외 사전신고 대상 세분화) 효율적·효과적인 제도 운용을 위해 심의대상 외에도 일정규모 이하의 공공조형물은 사전신고 및 협의 대상으로 세분화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 필요
- 설치 장소, 설치 주체, 공공조형물의 규모 및 기능 등의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조성·관리
- (재무회계시스템과 연동시스템 구축) 공공조형물 관리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자치단체 재무회계시스템과 연동하여 관련 예산 배정 시 공공조형물 총괄부서와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 필요

2) 공간 기반 공공조형물 조성으로의 제도 전환

■ 장소(공간) 기반 공공조형물 기획·계획으로의 제도 전환

- 공공조형물을 도시 공간의 장식적 요소가 아닌 도시경관 향상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전환 필요
- 개별요소로 공공조형물을 조성·관리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공공공간과 연계하여 장소 기반으로 공공조형물을 계획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전환

- 국가-도시(기초자치단체)-사업구역 단위 등 공간 위계별 계획 수립을 통해 공공조형물 조성의 방향 제시 및 통일성 유도
- **(국가 차원에서 공공조형물의 조성 방향 제시)** 국가 차원에서 공공조형물의 개념 및 관련 용어 정리하고, 공공조형물의 가치와 우수사례 등을 소개하는 설명서 및 가이드라인을 배포 및 공유
- **(도시 차원의 공공조형물 조성전략 수립)** 기초자치단체는 도시 차원에서 공공조형물 조성의 목표와 방향 제시하고 이를 위한 종합적 전략을 수립하도록 적극 권장
- **(구역 단위 공공조형물 마스터플랜 마련)** 다양한 부서에서 공공조형물 건립사업을 추진하더라도 공통의 전략과 방향성을 갖고 효과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특정 가로 및 구역 단위의 구체적인 공공조형물 조성전략 및 마스터플랜 수립을 유도
- 또한, 공공조형물, 공공디자인, 경관 등의 관련 분야의 계획 간 연계성 및 정합성을 강화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
 -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주요 가로의 공공조형물 조성전략 계획을 포함하도록 권장하고, 「경관법」의 중점경관관리구역에서 ‘공공조형물 조성구역(가칭)’을 지정하여 연계·관리하는 방안 마련 검토
 - 필요에 따라 특정 가로 및 구역 단위의 공공조형물 특화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가 총괄기획가(Director) 또는 총괄 코디네이터로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등의 시범사업 추진을 구상
- **(공공조형물 조성에서 제안으로 방식 전환)** 자치단체의 가용토지를 위주로 입지가 결정된 이후 설치 공간에 맞춰 공공조형물을 건립하는 현재의 조성방식에서 벗어나, 기획 초기단계부터 관련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여 장소 선정 및 표현 방식 등을 제안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전환 시도

■ 공간정보 기반의 공공조형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공간정보 기반의 공공조형물 조성·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도시계획 및 공간 설계과정에서부터 공간과 연계하여 공공조형물을 효과적으로 기획·계획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
- 공공조형물 조성 이후에도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체계적으로 유지관리·철폐할 수 있는 기반 마련 필요

3) 우수한 품질의 공공조형물 기획을 위한 기반 강화

■ 공공조형물의 구상 및 기획 단계부터 컨설팅 제도 도입

-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는 목적과 필요성,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절차 강화 필요
- 초기의 사업구상단계부터(사업 확정 또는 예산 편성 이전) 주무부서 및 관련 전문가를 활용한 사전 컨설팅 제도를 도입하여 불필요한 공공조형물 조성을 지양하고 효과적으로 조성하도록 적극 유도
 - 사전컨설팅을 통해 공공조형물과 장소의 연계성, 관련성, 공공성 및 인지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본방향 검토하고, 지속적인 컨설팅을 통해 계획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 공공조형물의 개념과 가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 특정 주민들의 요구와 관 주도에 의해 불필요하게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공조형물의 개념 및 가치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높이는 교육 기회 마련 필요
- 특히 공공조형물이 여러 부서에 걸쳐 다양한 사업으로 건립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담당자들의 이해와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부서 간 유기적인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기반 형성 필요
 - 일반시민을 비롯하여 자치단체의 의사결정권자, 행정담당자, 공공조형물 관련 이해관계자 등을 교육 대상에 포함하고, 경관 및 공공디자인 등 관련 분야 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기획·운영하는 방안 검토

[표 4-1] 관련 분야 교육프로그램 운영사례

국토교통부 경관정책 교육과정	공공디자인 교육프로그램
주최: 국토교통인재개발원 대상: 공무원 목적: 경관정책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역량 강화 내용: - 경관법, 도시경관, 공공디자인 등 관련 정책, 실무 - 경관 행정의 이해와 역량 강화	주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KCDF) 대상: 지자체 담당 공무원 목적: 공공디자인 인식 함양 및 가치 확산 내용: - 공공디자인 직무·행정교육 - 지자체 공공디자인 정책·주요 현안 공유(현장탐방 등)
출처: 국토교통인재개발원. https://tilit.molit.go.kr/USR/education/m_22731/lst.jsp#none(검색일: 2025.5.21.)를 토대로 연구진 작성	출처: 공공디자인 종합정보시스템. https://publicdesign.kr/cms/content/view/872?utm_source=chatgpt.com(검색일: 2025.5.21.)를 토대로 연구진 작성

4) 계획 단계부터 생애주기를 고려한 공공조형물 유지관리·활용체계 확립

■ 생애주기를 반영한 공공조형물의 유지관리·철거 규정 강화 및 현실화

- 파손·훼손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공공조형물의 상태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체계 및 제도적 기반 강화 필요
- 표준조례안 등 관련 제도가 마련되기 이전에 설치한 공공조형물부터 신규 조성하는 공공조형물까지 유지관리 철거 절차 및 기준 구체화 필요
- (사전에 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 주체 지정 의무화) 특히 신규로 조성하는 공공조형물의 경우 생애주기를 반영하여 계획 단계에서부터 유지관리 및 철거 계획과 방법, 관련 예산 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사전에 관리 주체를 명확하게 지정하도록 의무화
- (국가 차원의 유지관리지침 배포) 국가 차원에서 ‘공공조형물 유지관리 및 철거 기준 가이드인’을 마련 및 배포하고, 이를 참고하여 자치단체별 여건에 따라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
- 특히 여러 부서에 의해 공공조형물이 유지관리·철거되는 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공유재산 등록·관리제도’ 등과 연계·활용하여 실질적인 통합적 관리체계 확립

5) 법적 관리체계 정비

■ 현행 조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유관조례와의 통합방안 검토

- 공공조형물 조성·관리 실태 및 제도 운영현황 분석을 통해 공공조형물 조례 제정 이전부터 운영 중인 유관조례에서 심의위원회 중복 문제, 근거법 없이 조례로만 운영되어 타 법령에 따른 관리대상은 제외되는 등 공공조형물 조례의 한계를 확인
- 또한 각각 분리 운영되는 공공조형물 조성·관리의 총괄 주체와 심의위원회 운영 주체를 단일 부서로 일원화하여 효율적·체계적인 조성·관리 기반 확보 필요
- 이와 관련하여 공공조형물이 지닌 고유 특성을 고려하여 ❶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의 공공시설물 유형으로 포함하여 조성, 관리하는 방안, ❷ 경관조례의 경관사업의 유형으로 포함하여 조성,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가능

[표 4-2] 유관조례와의 통합방안: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및 경관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경관법
제15조(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 ⑤ 위원회의 심의·자문대상 공공시설물은 별표 2와 같다. 1. 공공시설물(기타 시설물) 가. 방음벽 나. <u>공공미술품(환경 조형물, 도시 상징물)</u> 다. 미디어시설 등 2. 공공공간 3. 공공시각매체 4. 공공건축물 5. 공공색채	제16조(경관사업의 대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등은 지역의 경관을 향상시키고 경관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경관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1. 가로환경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2. 지역의 녹화(綠化)와 관련된 사업 3. 야간경관의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 4. 지역의 역사적·문화적 특성을 지닌 경관을 살리는 사업 5. 농산어촌의 자연경관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6. <u>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u>

출처: 세종특별자치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시행 2024.09.30)(일부개정) 2024.09.30. 조례 제2551호

출처: 경관법(시행 2019. 3. 14.) [법률 제15460호, 2018. 3. 13., 타법개정]

- 공공조형물은 특성상 조성 단계에서 장소와 입지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공공성 증진이 필요하며, 조성 이후에는 물리적 대상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유지관리가 중요하게 요구

- **(공공디자인조례 통합방안 마련 검토)** 공공적 가치 증진과 디자인 품질 향상을 위해 공공시설물의 계획단계부터 조성·관리를 담당하는 측면에서 공공조형물조례가 더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공조형물조례를 공공디자인 진흥조례로 통합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이를 통해 근거법이 없어 실질적인 조성·관리의 권한이 부족한 공공조형물조례의 한계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
- **(심의위원회에 경관분야 의무 포함 검토)** 사업 실행과정에서 개별 시설물 단위로 조성되는 것을 방지하고, 주변경관을 고려하며 도시공간과의 맥락 안에서 공공조형물 조성 계획을 심의할 수 있도록 ① 조형물에 대한 심의 시 경관위원회와 통합위원회를 운영하거나 ② 경관분야를 소위원회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표 4-3]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운영(안)



출처: 연구진 작성

- **(다양한 분야 전문가 참여기반 확대)** 도시의 주요 상징과 비전을 담은 공공조형물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도시설계 및 건축, 도시사회 및 인문, 역사, 지역,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협력하는 참여기반 마련 필요

2. 연구의 의의 및 한계

- 본 연구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공공조형물 조성·관리와 관련한 구체적인 현상과 문제점을 전 과정에 걸쳐 검토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향과 과제를 제안한 점에서 의의

- 연구 과정에서 국내 공공조형물 조성·관리의 문제 사례를 중심으로 계획 단계부터 조성 결정, 유지관리와 관련한 행정자료 등을 면밀하게 조사 분석하였으나, 우수사례를 통해 나아가야 할 정책방향을 보완적으로 살펴보지 못한 점에서 한계가 존재
- 따라서 향후 과제에서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공공조형물의 기획, 조성, 유지관리, 활용, 철거 등의 우수사례를 검토하여 제도적 지향점을 더욱 명확히 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과제를 구체적·단계적으로 제시 필요

참고문헌

■ 연구 자료 및 단행본

- 강병길·신윤재·최숙경 외. (2015). 서울시 공공미술 관리 개선방안 연구. 서울디자인재단.
- 구본호. (2013). 공공미술, 도시의 지속성을 논하다. 산지니.
- 국민권익위원회(2014.9).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 [의안번호 제 2014-305호].
- 국민권익위원회.(2019.7).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 제도개선 권고 이행현황.
- 국토교통부. (2022.8). 회전교차로 설계지침.
- 권영현. (2011). 충남도청 신청사 상징조형물 설치계획 수립. 충남연구원.
- 권영현. (2015). 홍예공원 상징조형물 설치계획 수립. 이슈페이퍼. 충남연구원.
- 김성배. (2020). 공공조형물의 설치·관리에 있어 공법적 쟁점. 1(54). pp.3-46.
- 김윤아. (2009). 시지각적 특성을 고려한 환경 조형물의 연출방법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제중. (2011). 도시 상징조형물의 유형별 분석 연구. 조형미디어학. 14(4). pp.43 - 54.
- 김창수·전승용. (2013). 인천 정명 600년 기념 장소 및 도입 조형물 연구. 인천발전연구원
- 김채연·황용섭·박성룡. (2014). 지속가능한 공공공간과 환경조형물의 관계성에 관한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15(5). pp.175-187.
- 말콤 마일즈. (2000). 미술, 공간, 도시-공공미술과 도시의 미래. 박삼철 역. 학고재.
- 문희숙. (2012). 건축물 미술 작품 제도에 따른 환경조형물 연구: 서울시 조례 중심으로. 조형미디어학. 15(3). pp.65-72.
- 배경주. (2010). 도시마케팅을 위한 대구시 환경조형물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기초조형학회.

- 변지혜·김현경·이희재(2023). 건축물 미술작품제도 운영 관리 개선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라도삼·이정현. (2016). 서울시 공공예술 개선방안. 서울연구원.
- 류선정. (2015). 도시경관 개선을 위한 건축물미술작품 제도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류영희·김근식. (2010). 도시 환경조형물의 조형적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강남대로 및 테
헤란로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12(4), 49-58.
- 손영옥. (2020).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개선을 위한 서울시와 경기도 사례 연구.
예술경영연구. 0(56). pp.349-380.
- 양현미·김성규. (2010). 건축물 미술 장식제도에 있어서 선택적 기금제 도입 방안 연구.
문화정책논총. 24.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이건희·장영호·이재규. (2023). 환경조형물의 조형적 특성요인이 가로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18(8). pp.575-588.
- 이인재·김주희. 2021, 인천시 공공예술 개선방안. 인천연구원.
- 이준형.(2015). 건축물 미술작품의 사후관리를 위한 법령 개정 방향. 아주법학. 8(4). pp.
425-456.
- 이충훈. (2017). 내포신도시를 상징하는 조형물 설치방안 연구. 충남연구원.
- 이철재. (2008).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에 따른 환경조형물의 실태조사 연구. 경기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민영. (2020). 공공성 증진을 위한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개선 방안.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광주. (2022).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제도의 도입과 변천과정에 대한 연구.
한국예술종합학교 석사학위논문.
- Willet, John. (1967). *Art in a city*. London: Bluecoat Society of Arts by Methuen.

■ 보도자료, 신문기사 등

- 강승희. (2023). '안전성 논란' 남구 양림동 회전교차로 미디어아트, 이전 결정. 무등일보. 10월 18일 기사. <https://www.mdilbo.com/detail/c3QycN/704838> (검색일: 2025.5.15.)
- 강승희.(2023). "미디어아트를 여기에?" 남구 양림동 회전교차로...안전상 괜찮나. 무등일보. 7월 24일 기사. <https://www.mdilbo.com/detail/c3QycN/699612>(검색일: 2025.5.15.)
- 강신성(2017). 목포 '러브게이트' 적절성 논란. 광주타임즈. 6월 7일 기사. <https://www.gjt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9526> (검색일: 2025.4.30.)
- 구분호. (2024). '노후 방치' 평창올림픽 조형물, 2024강원 관객들 "안타깝다". 노컷뉴스. 1월 22일 기사. <https://www.nocutnews.co.kr/news/6082960>(검색일: 2025.5.16.)
- 김민형. (2024). '돈 먹는 하마' 전략한 공공조형물]무분별하게 조성 조형물 공해. 경상일보. 3월 11일 기사. <https://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93836>(검색일: 2025.1.31.)
- 김윤찬(2024). 목포 춤추는 바다 분수, 물과 음악 빛의 예술. 영월인. 6월 30일 기사. <https://www.ywmedia.kr/news/articleView.html?idxno=20216>(검색일: 2025.4.30.)
- 김윤희. (2023).고장 반복되자 방치...울산 9역 시계탑 모형기차 결국 고물 신세 [세금낭비 STOP]. (주)중앙일보. 8월 16일 기사.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85008>(검색일: 2025.5.15.)
- 김의상. (2019). 충주시 88서울올림픽 기념 조형물 방치...보존·활용방안 '시급'. 중부광역신문. 4월 3일 기사. <https://www.jbk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0457>(검색일: 2025.5.16.)
- 남윤정. (2023). 솔뚜껑 여는 데만 4000만원...돈 먹는 '괴산 가마솥' 어찌죠?. 서울경제. 10월 5일 기사. <https://www.sedaily.com/NewsView/29VUBSUHTN> (검색일: 2025.2.20.)

- 류제민. (2025). 글로벌 디자인 도시... 공공 조형물 관리 부실. 부산MBC 뉴스데스크 . 4월 10일 뉴스. https://busanmbc.co.kr/01_new/new01_view.asp?idx=273702#none (검색일: 2025.5.15.)
- 박경우. (2017). 목포 평화광장 일대 '연인의 거리' 조성. 한국일보. 5월 30일 기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705301772353635> (검색일: 2025.4.30.)
- 박정민. (2011). 주변환경과 부조화 '애물' 전략, 민원 끊는 공공미술 조형물. 국제신문. 8월 2일 기사.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10803.22003221914>(검색일: 2024.2.15.)
- 백창훈. (2025). 명지 올림공원 조형물, 안전 민원에 펜스 설치. 국제신문. 3월 13일 기사. <https://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250314.22006003879>(검색일:2025.4.30.)
- 백창훈. (2025).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계때와 달라진 명지 조형물 “참신한 발상” vs “위험해보여”. 국제신문. 2월 17일 기사. <https://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250218.22008005025> (검색일: 2025.4.30.)
- 속초시 보도자료. (2023.10.12.). 설악산 관문 상징조형물 디자인 도색 완료. <https://www.sokcho.go.kr/sc/portal/sokchonews/pressrelease>(검색일: 2025.1.31.)
- 손봉선. (2020). 여수시, 학동선소상가시장 조형물사업 사후관리 부실. 매일일보. 11월 15일 기사. <https://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765096> (검색일 : 2025.5.9.)
- 송고. (2020). 목포 평화광장, 세계적 문화관광·해양레저 공간으로 만든다. 연합뉴스. 1월 24일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00123110200054> (검색일: 2025.4.30.)
- 송승욱. (2020). 익산역 앞 '볼품'없는 기차 조형물 '빈축'. 전북일보. 12월 17일 기사, <https://www.jjan.kr/article/20201217722680> (검색일: 2025.5.15.)
- 연합뉴스. (2018). 태풍 솔릭 피해 사진 모음. 스포츠경향. 8월 23일 기사. <https://sports.khan.co.kr/article/201808231938003>(검색일: 2025.1.31.)

- 영암군. (2012.11.). 삼호읍 무화과 조형물 제작·설치 제안서.
- 영암군의회. (2011.11.23.). 제202회 본회의회의록. <https://www.yacl.go.kr/CLRecords/Retrieval2/index.php?hfile=6A0110202011.html&daesu=6> (검색일: 2025.4.25.)
- 울산광역시 중구 보도자료. (2015.11.2.) 원도심 시계탑의 모형기차 재가동. https://www.junggu.ulsan.kr/board/view.ulsan?boardId=BBS_0000090&menuCd=DOM_000000102003002000&startPage=1&dataSid=590525 (검색일: 2025.5.15.)
- 윤광석.(2022). 칠곡군, 칠곡벌꿀참외 상징조형물 설치. 대경일보. 5월 15일 기사. <https://www.dk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5046>(검색일: 2025.5.9.)
- 윤원진.(2019). 충주 호돌이 조형물 흉물 방치. 충청타임즈. 4월 2일 기사. <https://www.cc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565589>(검색일: 2025.5.16.)
- 이상길 (2023). 학생가구거리 대형조형물 예산낭비 논란. 울산제일일보. 11월 27일 기사. <http://www.uj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337605>(검색일: 2025.5.10.)
- 이순철,(2021). 속초시 7억원짜리 조형물 방치한 채 수익들여 또 조형물 설치 논란. 뉴스핌. 2월 2일 기사. <https://news.nate.com/view/20210202n02309>(검색일: 2025.5.10.)
- 이임철. (2022). 안 보이는 칠곡벌꿀참외 조형물...칠곡군의 일방통행 부작용. 대구일보. 5월 26일 기사. <https://www.idaegu.com/news/articleView.html?idxno=437791>(검색일: 2025.5.9.)
- 이임철. (2022), “7천만 원짜리 칠곡벌꿀참외 홍보 조형물이 안 보여” 대구일보 5월 24일 기사 <https://www.idaegu.com/news/articleView.html?idxno=437606>(검색일: 2025.5.9.)
- 이정술. (2024). 익산역 앞 ‘기차조형물’ 설치 시민들 ‘분노 폭발’. 세계타임즈. 4월 3일 기사. <https://m.thesegeye.com/news/view/1065556101243274>(검색일: 2025.5.15.)

- 정읍신문.(2020). 탐방객들 고개 가웃거리를 쌍화차거리 조형물, 왜?. 정읍신문. 3월 4일 기사. <https://www.jnewsk.com/news/articleView.html?idxno=72267> (검색일: 2025.5.9.)
- 주현정.(2022). '1년 옷 값만 3천만원' 광주시청 앞 조형물 18년째 애물. 무등일보. 12월 12일 기사. <https://www.mdilbo.com/detail/0kIA7d/684514>(검색일: 2025.5.16.)
- 진재중. (2024). 녹슬고 부서진 조형물... 안인항에 이게 필요한가요?. 오마이뉴스. 11월 1일 기사.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74572(검색일: 2025.5.15.)
- 최창현. (2021). 경북도, '심의도 안 거치고 공공조형물 멋대로 설치' 보도 반박. 일요신문. 2월 3일 기사.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391894(검색일: 2025.2.3.)
- 한형진. (2022). [속보] 빈축 샀던 제주돌문화공원 하트설치물 결국 철거...정상화 신호탄? 제주의소리. 10월 4일 기사. <https://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408323>(검색일: 2025.4.30.)
- 한형진. (2022). 제주돌문화공원 망치는 조악한 설치물들...반응도 평가도 '싸늘'. 제주의소리. 7월 20일 기사. <https://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405907>(검색일: 2025.4.30.)
- 홍창진. (2022). [경북소식] 칠곡 별꽃참외 상징 조형물 준공. 연합뉴스. 5월 12일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20512109000053>(검색일: 2025.5.9.)

■ 법규 등

- 강릉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시행 2020.6.10.][조례 제1394호, 2020.6.10., 제정]
- 건축법[시행 2024. 6. 27.] [법률 제20424호, 2024. 3. 26., 일부개정]
- 경관법[시행 2019. 3. 14.] [법률 제15460호, 2018. 3. 13., 타법개정]

-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시행 2024.5.17.] [조례 제 7997호, 2024.5.16., 일부개정]
- 곡성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시행 201808.13.][조례 제2205호, 2018.8.13., 일부개정]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 2024. 9. 27.] [법률 제20400호, 2024. 3. 26., 일부개정]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 2021. 9. 16.] [법률 제18246호, 2021. 6. 15., 일부 개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90호, 2024. 1. 9., 타법개정]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5. 2. 7.] [법률 제20181호, 2024. 2. 6., 일부개정]
-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시행 2022. 1. 14.] [교육부고시 제2022-4호, 2022. 1. 14., 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 2024. 8. 7.] [법률 제20234호, 2024. 2. 6., 일부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5. 1. 21.] [대통령령 제35221호, 2025. 1. 21., 타법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4. 11. 30.] [국토교통부령 제1338호, 2024. 5. 29., 일부개정]
- 광명시 경관 조례[시행 2022. 11. 22.] [경기도광명시조례 제2905호, 2022. 11. 22., 일부개정]
- 광명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시행 2024. 12. 23.] [경기도광명시조례 제3193호, 2024. 12. 23., 일부개정]
- 광명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시행 2021. 9. 28.] [경기도광명시조례 제2783호, 2021. 9. 28., 일부개정].
- 광주광역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조례[시행 2021.12.15][조례 제 5846호, 2021.12.15., 일부개정]
- 광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시행 2021.7.7.] [조례 제1285호, 2021.7.7., 일부개정]
- 김천시 경관 조례[시행 2016.12.29.][조례 제1106호, 2016.12.29., 제정]
- 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시행 2008.2.28.][조례 제 655호, 2008.2.28., 일부개정]
- 김천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시행 2021.9.16.][조례 제1392호, 2021.9.16., 일부개정]
- 도로법[시행 2025. 2. 14.] [법률 제20294호, 2024. 2. 13., 일부개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4. 5. 17.] [법률 제20309호, 2024. 2. 13., 타법개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4. 9. 15.] [대통령령 제34881호, 2024. 9. 10., 타법개정]

목포시 경관관리조례[시행 2018.10.8][조례 제3191호, 2018.10.8., 일부개정]

목포시 공공디자인 조례[시행 2011.4.18.] [조례 제2671호, 2011.4.18., 일부개정]

목포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시행 2018.2.5.][조례 제3165호, 2018.2.5., 전부개정]

목포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조례[시행 2021. 6. 7.] [전라남도목포시조례 제3480호, 2021. 6. 7., 일부개정]

문화예술진흥법[시행 2023. 12. 21.] [법률 제19480호, 2023. 6. 20., 일부개정]

미술진흥법[시행 2024. 7. 26.] [법률 제19568호, 2023. 7. 25., 제정]

부산광역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시행 2011.7.13.][조례 제 4640호, 2011.7.13., 제정]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시행 2018.12.31.][조례 제 1215호, 2018.12.31., 제정]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시행 2025.1.1.][조례 제1442호, 2024.12.18., 제정]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시행 2023.3.24.][조례 제 1304호, 2023.3.24., 제정]

속초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시행 2017.12.29][조례 제2616호, 2017.12.29., 제정]

속초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시행 2020.1.1.][조례 제2696호, 2019.11.1., 일부개정]

속초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시행 2023.1.1.] [조례 제2977호, 2022.12.23., 일부개정]

세종특별자치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시행 2024.9.30.] [조례 제2551호, 2024.9.30., 일부개정]

신안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시행 2017.7.4.][조례 제1985호, 2017.7.4., 제정]

신안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시행 2021.8.9.][조례 제2407호, 2021.8.9., 일부개정]

여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시행 2017.9.29.][조례 제1292호, 2017.9.29., 제정]

여주시 동상 등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시행 2018.12.10.][조례 제1361호, 2018.12.10., 일부개정]

영암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시행 2009.3.24.][조례 제1924호, 2009.3.24., 일부개정]

영암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시행 2021. 7. 1.] [전라남도영암군조례 제2539호, 2021. 7. 1., 일부개정]

용인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시행 2018.5.14.][조례 제1819호, 2018.5.14.,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시행 2022.12.1.][조례 제 2646호, 2022.12.1.,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시행 2017.6.29.][조례 제882호, 2017.6.29., 제정]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시행 2018.09.17.][조례 제939호, 2018.9.17., 일부개정]

의왕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시행 2024.10.1.][조례 제2171호, 2024.10.1., 일부개정]

의왕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시행 2015.9.30.][조례 제1449호, 2015.9.30., 제정]

익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시행 2024.5.17.][조례 제2513호, 2024.5.8., 일부개정]

정읍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시행 2019.9.27.][조례 제1669호, 2019.9.27., 제정]

조경설계기준(KDS 34 00 00) 및 조경공사 표준시방서(KCS 34 00 00)[시행 2024. 12. 16.][국토교통부고시 제2024-743호, 2024. 12. 10.,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시행 2020.12.31.][조례 제 2740호, 2020.12.31., 전부개정]

지방공기업법[시행 2025. 1. 7.][법률 제20655호, 2025. 1. 7., 일부개정]

칠곡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시행 2019.8.9.][조례 제2496호, 2019.8.9., 제정]

■ 웹사이트

경북도청 홈페이지. https://www.gb.go.kr/Main/governor/page.do?cmd=2&iidx=41984&pageSize=9&pageNo=1&mnu_order=2&mnu_uid=7621&pageType=0002&(검색일: 2025.3.2.)

공공디자인 종합정보시스템. https://publicdesign.kr/cms/content/view/872?utm_source=chatgpt.comhttps://publicdesign.kr/cms/content/view/872?utm_source=chatgpt.com(검색일: 2025.5.21.)

공공미술포털. https://www.publicart.or.kr/oldPublicart/HTML/data/column_view.do?menuId=28&column_seq=35(검색일: 2025.2.7.)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검색일: 2025.2.1.)

국립국어원 우리말 샘. <https://opendict.korean.go.kr/main>(검색일: 2025.2.5.)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검색일: 2025.2.5.)

국립현대미술관 인스타. https://www.instagram.com/mmca_artbank/p/DEmVL3Ipxfu/?img_index=1(검색일: 2025.2.7.)

국토교통인재개발원. https://tilit.molit.go.kr/USR/education/m_22731/lst.jsp#none(검색일: 2025.5.21.)

김천시 계약정보시스템. https://contract.gc.go.kr/contract/contract_info/open_condition/all?page=2&srch_option=construction_name&srch_keyword=%EC%A1%B0%ED%98%95%EB%AC%BC(검색일: 2025.5.13.)

나라장터. <https://www.g2b.go.kr>(검색일: 2025.2.12.)

네이버 지도. <https://map.naver.com>

두피디아. https://www.doopedia.co.kr/photobox/comm/community.do?_method=view&GAL_IDX=170725001069602&newSearchType=all#hedaer(검색일: 2025.4.30.)

목포시 계약정보시스템. <http://gyeyak.mokpo.go.kr/bid>(검색일: 2025.5.13.)

목포시 계약정보시스템. <http://gyeyak.mokpo.go.kr/contract/lists?type=0&txt=%EC%A1%B0%ED%98%95%EB%AC%BC&item=1&bt=0&wday1=&wday2=>(검색일: 2025.5.13.)

부산광역시 강서구 계약정보시스템. <https://contract.bsgangseo.go.kr/basis/situationList.do>(검색일: 2025.6.28.)

백송디자인. <http://100song.urr.kr/bbs/content.asp?idx=20210112202202>(검색일: 2025.5.15.)

- 빅카인즈. <https://www.bigkinds.or.kr>(검색일: 2025.2.12.; 2025.5.9.)
- 속초시 계약정보시스템. <https://confin.sokcho.go.kr/contract/continfo/status/conconst?ctrAcctBookMngNo=202100110372>(검색일: 2025.5.10.)
- 서울전자민원창구. [https://en-minwon.ydp\(지역 영문영\).or.kr](https://en-minwon.ydp(지역 영문영).or.kr)(검색일: 2025.5.9.)
- 부산광역시 기장군 서울전자민원창구. <https://eminwon.gijang.go.kr/emwp/gov/mogaha/ntis/web/emwp/cns/action/EmwpCnsl WebAction.do>(검색일: 2025.8.6.)
- 부산광역시 동래구 서울전자민원창구.
<https://eminwon.dongnae.go.kr/emwp/gov/mogaha/ntis/web/emwp/cns/action/EmwpCnslWebAction.do>(검색일: 2025.8.6.)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서울전자민원창구.
<https://eminwon.sb.go.kr/emwp/gov/mogaha/ntis/web/emwp/cns/action/EmwpCnslWebAction.do>(검색일: 2025.8.6.)
- 신안군 계약정보공개시스템. <https://shinan.go.kr/gyeyak/contract/post/26482>
(검색일 : 2025.4.30.)
- 신안군 계약정보시스템. <https://www.shinan.go.kr/gyeyak/contract/lists?type=0&txt=%EC%A1%B0%ED%98%95%EB%AC%BC&item=1&bt=0&wday1=&wday2=&p=7>(검색일: 2025.6.28.)
- 씨네큐브. <https://www.cinecube.co.kr/intro/intro02.jsp>(검색일: 2025.2.7.)
-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https://www.safetyreport.go.kr/#introduction/mainProcessCase/103640>(검색일: 2025.5.9.)
- 여수시 계약정보시스템. https://gyeyak.yeosu.go.kr/gyeyak/contract_info/open_condition/all?idx=202000114578&construction_name=%EC%95%88%EB%82%B4%ED%8C%90&page=9&mode=view(검색일: 2025.6.28.)
- 영암군 계약정보시스템. <https://gyeyak.yeongam.go.kr/contract/lists?type=0&txt=%EC%A1%B0%ED%98%95%EB%AC%BC&item=1&bt=0&wday1=&wday2=&p=2>(검색일: 2025.5.13.)
- 용인특례시 계약정보시스템. <https://contract.yongin.go.kr/index.jspmpg=situPublde tail&spg=situ&num=1&idx=202300315346&ctrCNT>(검색일:

2025.5.9.)

울산광역시 계약정보시스템. https://contract.ulsan.go.kr/contract/contract_info/open_condition/all?cate1=&start_day=&end_day=&srch_option=construction_name&srch_keyword=%EC%A1%B0%ED%98%95%EB%AC%BC
(검색일: 2025.5.10.)

의성군 블로그 기자단. https://blog.naver.com/uiseong-good/223541873475?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검색일: 2025.5.27.)

조달청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ppspr/221522536628>(검색일: 2025.2.7.)

지방재정. 365. <https://www.lofin365.go.kr/portal/LF3120202.do>

칠곡군 계약정보시스템. <https://www.chilgok.go.kr/portal/nara/plan/view.do?mId=0307110101>(검색일: 2025.4.25.)

카카오맵. <https://map.kakao.com>

포스코그룹 뉴스룸. <https://newsroom.posco.com/kr>(검색일: 2025.6.25.)

토지이음. <https://www.eum.go.kr>(검색일: 2025.5.20.)

MASS. <https://maas-xrground.com/34>(검색일: 2025. 4.30.)

부록	공공조형물 관련 민원사례 조사결과(2019.1.1.~2025.5.9.)
-----------	--

[표 부록-1] 공공조형물 관련 민원사례 조사결과(2019.1.1.~2025.5.9.)

지자체명	년도	안전	출처
서울 (26)	2019	조형물 디자인 문제 제기(주변 환경과 부조화)	서울
	2019	조형물 철거 요청(보행자 안전사고 발생)	서울
	2019	조형물 설치 요청(회차로 내 주차 방지 목적)	서울
	2019	이벤트성 조형물 설치 반대(예산 낭비)	서울
	2019	파손된 조형물 유지보수 요청	서울
	2020	조형물 철거 요청	서울
	2020	조형물 설치 중단 요구(경관 저해, 보행자 통행 방해 및 안전 위협, 태풍 등 재해 시 안전문제 우려)	서울
	2020	조형물 디자인 문제 제기(장소 무관) 및 철거 요청	서울
	2021	조형물 유지보수 요청(관리 미흡, 방치)	서울
	2021	조형물 철거 요청(장소와 무관한 디자인, 공간 활용 저해 및 보행자 통행 방해)	서울
	2021	조형물 유지보수 요청	서울
	2021	조형물 디자인 문제 제기(주변환경과의 부조화, 조성 취지 공감 불가)	서울
	2021	파손된 조형물 유지보수 요청(보행자 통행 방해)	서울
	2021	조형물 철거 요청(주변환경과 부조화 및 이질감)	서울
	2021	지역 내 조형물 설치 요구	서울
	2021	조형물 유지보수 요청(흔들거림 발생, 태풍 등 재해 시 안전문제 우려)	서울
	2022	도로변 조형물 설치 반대(도로 통행 방해 및 안전 위협)	서울
	2022	조형물 철거 요청(주변환경과 부조화 및 이질감)	서울
	2023	파손된 조형물 유지보수 요청(보행자 안전문제 우려)	서울
	2023	도로변 조형물 이전 또는 철거 요청(운전자 시야 방해 및 보행자 안전 문제)	서울
	2023	조형물 설치 반대(상가 앞 인도 내 설치로 인한 권리 침해, 사전 설명회 부재, 조성 취지 공감 불가)	서울
	2024	조형물 설치 중단 요청(주변환경과 부조화, 조악한 디자인, 예산 낭비)	서울
	2024	이벤트성 조형물 철거 요청(통행 방해 및 보행자 안전 문제)	서울
	2025	조형물 디자인 문제 제기(주변환경과의 부조화, 조악한 디자인)	서울
	2025	이벤트성 조형물 철거 요청(이벤트 완료)	서울
	2025	조형물 디자인 문제 제기 및 철거 요청(주변 환경과의 부조화, 조악한 디자인)	서울

지자체명	년도	안건	출처
경기 (14)	2019	파손된 조형물 유지보수 요청	서울
	2019	조형물 유지보수 요청(누수로 인한 안전문제 우려)	서울
	2020	조형물 설치로 인한 안전문제 제기 및 유지보수 요청(주변부 마감처리 등)	서울
	2020	공원 내 조형물 설치 요청(경관특화 조성)	서울
	2020	포토존 등 조형물 설치 요청(관광 활성화)	서울
	2021	도로변 조형물 철거 요청(운전자 시각 방해 및 보행자 안전 위협)	서울
	2021	공원 내 조형물 설치 요청(경관특화 조성)	서울
	2022	조형물 유지보수 요청(마감처리로 인한 안전문제 우려)	서울
	2023	포토존 조형물 철거 요청(미이용)	서울
	2023	조형물 유지보수 요청(오염 제거)	서울
	2024	방조제 타일 벽화 설치 요청(경관 향상 측면)	국민
	2024	조형물 철거 요청(노후화 및 안전문제 우려)	국민
	2024	조형물 시인성 개선을 위해 주변환경 정비 요청(수목 제거 등)	국민
	2024	이벤트 조형물 설치 요청	서울
강원(1)	2023	방파제 구역 내 조형물 설치 요청(환경 개선 목적)	국민
대전(1)	2022	파손된 조형물 유지보수 요청	안전
울산(1)	2025	파손된 조형물 유지보수 요청	안전
인천(8)	2019	조형물 유지보수 요청(정보 오류)	서울
	2019	조형물 설치 반대(예산 낭비, 공간 활용 방해 및 어린이 보행 안전문제 우려)	서울
	2019	조형물 및 벽화 설치 요청(경관 특화 및 개선)	서울
	2020	파손된 조형물 철거 요청	서울
	2020	조형물 유지보수 요청	서울
	2020	조형물 주변 안전설비(펜스) 설치 요청(안전문제 우려)	서울
	2023	파손된 조형물 유지보수 요청	서울
	2023	조형물 및 벽화 철거 요청(조성 취지 부적절(특정 이익집단 홍보 목적))	서울
부산 (43)	2019	조형물 지역명(영문) 표기 오류 정정 요청	서울
	2019	조형물 설치 요청(환경 개선)	서울
	2019	조형물 주변 불법 적치물 단속 요청	서울
	2020	조형물 안전관리 요청(탑승으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 우려)	서울
	2020	조형물 설치 시 지역주민 의견 반영 요청	서울
	2020	벽화 및 조형물 설치 요청(환경 개선)	서울
	2020	조형물 디자인 문제 제기(주변환경과 부조화 및 이질감, 장소 무관, 기획 의도 이해 불가) 및 설치 중단 요청(보행자 통행 방해 및 안전 위협)	서울

지자체명	년도	안전	출처
	2020	파손된 조형물 유지보수 요청	서울
	2020	조형물 지역명(한문) 표기 오류 정정 요청	서울
	2021	조형물 설치 요청(주차장 공터 활용)	서울
	2021	조형물 설치 요청(경관특화 조성)	서울
	2021	조형물 가로등 설치 요청(경관특화 조성)	서울
	2021	조형물 철거 요청(주변환경과 부조화 및 이질감, 장소 무관)	30건
	2021	조형물 유지보수 요청(도색)	서울
	2021	파손된 조형물 유지보수 요청	서울
	2021	조형물 설치 요청(경관특화 조성, 지역 활성화)	서울
	2021	조형물 철거 요청(주변환경과 부조화, 경관 저해, 과도한 디자인)	서울
	2021	조형물 철거 요청(보행 안전 방해 및 안전 문제 우려)	서울
	2022	조형물 설명 안내판 설치 요청	서울
	2022	조형물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	서울
	2022	조형물 설치 요청(환경 개선, 지역 슬럼화 방지)	서울
	2022	조형물 유지보수 요청(조명)	서울
	2022	조형물 시인성 개선을 위해 주변 불법 주차 단속 요청	서울
	2023	공지 내 조형물 설치 요청(환경 개선)	서울
	2023	파손된 조형물 유지보수 요청	서울
	2023	조형물 디자인 문제(설치장소 이해 부족, 역사성 논란 등)	서울
	2023	조형물 철거 요청(보행자 통행 및 운전자 시각 방해, 안전 문제 우려 등)	서울
	2023	이벤트성 조형물 설치 요청(상권 및 지역 활성화)	서울
	2023	조형물 철거 요청(관리 미흡)	서울
	2023	조형물 설치공사 심의 및 관리 요청(예산 낭비)	서울
	2023	해변 내 무분별하게 설치한 조형물 철거 요청(보행 방해 및 안전 문제 우려)	서울
	2023	파손된 조형물 유지보수 요청	서울
	2024	파손된 조형물 유지보수 요청	안전
	2024	조형물 유지보수 요청(야간조명으로 인한 빛 공해)	서울
	2024	조형물 설명 안내판 설치 요청	서울
	2024	파손된 조형물 유지보수 요청	서울
	2024	조형물 철거 요청(주변환경과 부조화 및 이질감, 장소 무관, 조성 취지 공감 불가)	서울
	2024	벽화 및 조형물 설치 요청(환경 개선)	서울
	2024	조형물 설치 요청(기존 조형물 규모 확대 및 교체)	서울

지자체명	년도	안건	출처
대구 (13)	2024	조형물 디자인 문제 제기(장소 무관) 및 조형물 철거 요청	서울
	2024	조형물 설명 안내판 개선 요청	서울
	2024	조형물 철거 요청(보행 안전 방해 및 안전 문제 우려)	서울
	2019	조형물 설치 요청(경관특화 조성, 지역 활성화)	서울
	2020	조형물 디자인 문제(역사성 논란 등)	서울
	2020	조형물 철거 요청(역사성 논란)	서울
	2021	조형물 유지보수 요청(조명)	서울
	2021	이벤트성 조형물 철거 요청(장소와 무관한 디자인, 조성 취지 공감 불가)	서울
	2022	조형물 철거 요청(어린이 안전사고 우려)	서울
	2023	조형물 철거 요청(운전자 시야 방해)	서울
	2023	조형물 설치 요청(공지 활용)	서울
	2023	조형물 설치 요청(환경 개선)	서울
	2023	조형물 철거 요청(장소와 무관한 디자인, 기획 의도 공감 불가)	서울
전남(1)	2023	조형물 이전 요청(운전자 시각 방해)	서울
	2023	조형물 설치 요청(역사적 장소)	서울
미상(2)	2024	조형물 철거 요청(어린이 안전사고 우려)	서울
	2024	장소와 무관한 기설치된 조형물 철거 요청, 장소 의미가 담긴 조형물 및 설명안 내판 재설치 요청	서울
	2024	어린이 놀이시설을 조형물로 변경 설치, 인증 제외 문의(「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어린이놀이기구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의무 규정)	국민
	2025	국도변 홍보 목적의 조형물 설치 허가 문의	국민

출처 : 각 지자체별 서울전자민원창구 홈페이지. [https://en-minwon.ydp\(지역 영문영\).or.kr](https://en-minwon.ydp(지역 영문영).or.kr)(검색일: 2025.5.9.);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https://www.epeople.go.kr>(검색일: 2025.5.9.);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https://www.safetyreport.go.kr>(검색일: 2025.5.9.) 검색결과를 토대로 연구진 작성

현안연구보고서 2025-1

공공조형물의 체계적인 조성·관리를 위한 현안과 정책과제

Key Issues and Policy Improvements for Systematic Public Sculpture Planning and Management

지은이 이세진, 정인아
펴낸곳 건축공간연구원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가림로 143, 8층
전화 044-417-9600
팩스 044-417-9608

<http://www.auri.re.kr>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건축공간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